

타이베이시 정부



외국인안내수첩



타이베이시 정부

2020년 12 월

목 차

제 1 장 타이베이시 경찰국	1
I 외국인 주의사항	1
II ‘타이베이시경(北市警政)’ 앱	2
III 타이베이시정부 시민 서비스 플랫폼 (경찰국 안 건 신청) :	4
IV 경찰형사기록증명	5
V 교통 관련 주의사항	9
(i)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	9
(ii)주행 및 교통 안전.....	12
VI 타이베이시 경찰국 교통경찰 서비스항목	13
VII 타이베이시 경찰국 교통경찰 페이스북(Facebook)..	13
VIII 음주운전 처벌 규정	13
IX 보이스 피싱 대처 및 예방	14
X 여성· 아동 안전보호	15
XI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15
XII 각종 형사사건 대처방법	16
XIII 치안풍수사 (방범지도사)	17
XIV 문자 신고 서비스.....	18
XV 안전 주의사항.....	18
XVI 기타 민원 서비스.....	20
(i)분실물 서비스	20
(ii)타이베이시 콜센터 1999 번	20
(iii)외국인 생활지원 콜센터 0800-024-111.....	20
(vi)타이베이시 경찰기관 연락망	21
(v)타이베이시 경찰국 각 분국 소속 파출소.....	21
제 2 장 노동국	24
I 대만 노동기준법 中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 가에 대한 규정	24
II 이주 노동자 입국 후 대만에서의 처리사항	26
III 이주 노동자 안전 및 위생 상식	28

IV	노사분쟁 대처법.....	28
V	직장 성희롱 대처법.....	29
VI	이주 노동자 구직 시 주의사항.....	30
VII	이주 노동자 상담 지원	30
제 3 장 사회국.....		32
I	유관기관 연락망.....	32
II	복지서비스	32
III	보호 서비스	35
IV	성희롱 예방 및 대처.....	37
V	각 행정구별 사회복지지원센터.....	37
VI	여성복지자원 일람표.....	38
VII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39
VIII	청소년 미혼모 지원센터.....	39
IX	여성보호센터.....	40
X	신이민자(다문화가정)지원업무	40
XI	각 행정구별 노인지원센터.....	40
제 4 장 위생국.....		42
I	민원서비스 정보.....	42
II	타이베이 시립 관두(關渡)병원	42
III	타이베이 시립 완팡(萬芳)병원	42
IV	타이베이 시립 렌허(聯合)병원	43
V	12 개 행정구 건강지원센터 리스트.....	43
VI	타이베이시 응급책임병원.....	45
VII	지역 심리상담 외래거점병원.....	46
VIII	신이민자(다문화가정)건강돌봄서비스.....	47
제 5 장 교육국.....		49
I	〈외국인학생 대만 취학 판법〉.....	49
II	〈타이베이시 국제교류촉진보조금 외국인 중국어 연수 요점〉.....	61
III	〈교육 관련 질의 해석〉.....	65
IV	외국인학교 리스트.....	66
V	산하기관 리스트.....	67

제 6 장	민정국	68
I	자주하는 질문	68
II	외국인 배우자 중화민국 귀화 신청 및 호적 등록 절차	83
III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 연락망	84
IV	타이베이시 신이민자회관(新移民會館)	84
제 7 장	산업발전국	85
I	자주하는 질문	85
II	유관기관 리스트	87
III	타이베이시 야시장 관광정보	87
제 8 장	지정국(地政局)	88
I	토지법 일부 조문<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관련 조문>	88
II	<외국인 국내 중대건설사업, 거시경제 또는 농 축업경영 투자에 관한 토지 취득 관법>	90
III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에 관한 작업요점>	93
IV	타이베이시 지정국 연락처	96
제 9 장	세무기관	97
I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97
(i)	소득세	97
(ii)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	115
II	타이베이시 세금징수처	123
(i)	토지가격세(地價稅)	123
(ii)	토지부가가치세	124
(iii)	주택세	125
(iv)	취득세	127
(v)	자동차면허세	127
(vi)	인지세	128
(vii)	타이베이시 세금징수처 및 각 지부(分 處)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	129
제 10 장	환경보호국	131
I	자원 재활용	131
(i)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131

(ii)타이베이시 재활용품 분류항목 일람표	131
II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133
III 쓰레기 수거	134
IV 타이베이시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135
V 공해 및 환경보호 신고전화.....	136
VI 폐기물 처리법 준수.....	136
VII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팁.....	136
* 타이베이시 환경보호국 공공시설 이용안내	137
I 베이더우(北投) 쓰레기소각장 공공시설.....	137
II 내이후(內湖) 쓰레기소각장 공공시설	138
III 무자(木柵) 쓰레기소각장 공공시설.....	141
IV 산주쿠(山豬窟)수영장 개방시간, 이용금액 및 이 용안내	143
V 산수이뤄(山水綠) 생태공원	144
VI 푸더캉(福德坑)환경보호복원공원	145
VII 내이후(內湖)복원공원	146
VIII 옌후이(延慧)서고.....	146
제 11 장 관광전파국	148
I 타이베이 관광포털	148
II 숙박 정보.....	148
III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인센티브 지원.....	149
IV 타이베이시 관광안내센터 서비스 항목 및 센터 정보	149
V 관광 출판.....	151
VI 온천 정보.....	152
VII Taipei Fun Pass 카드	153
VIII 타이베이 탐색관(臺北探索館) 관람안내.....	154
IX 타이베이 라디오방송국 소개.....	156
X 타이베이시 2층 관광버스.....	157
제 12 장 교통국.....	159
I 공공운수처(公共運輸(대중교통)處)	159
II 타이베이시 주차관리공정처(臺北市停車管理工程	

處).....	161
III 타이베이시 교통관제공정처(臺北市交通管制工程處).....	161
IV 타이베이시 교통사고재결소(臺北市交通事件裁決所).....	162
V 유바이크(YouBike)공공자전거.....	165
VI 관련 업무 부처.....	166
제 13 장 문화국.....	171
I 문화관광.....	171
II 문화지원.....	173
III “컬처 익스프레스(Culture Express)”.....	174
제 14 장 소방국.....	175
I 신고전화 119.....	175
II 구조증명 발급 신청.....	175
III 화재증명 발급 신청.....	175
IV 화재조사자료 발급 신청.....	176
V ‘소방풍수사(지도사)’ 방문 신청.....	177
VI 방재과학교육관 관람.....	178
VII 방재공원 정보.....	178
VIII 방재 지도.....	179
IX 병원 밖 심정지(OHCA)응급처치.....	180
X 재난 음성사서함 1991 번.....	181
XI 시민방재수첩<타이베이 방재 바로 Go!>.....	182
<부록> 타이베이시 각 국처 홈페이지 주소.....	184

목 차

제 1 장 타이베이시 경찰국	1
I 외국인 주의사항	1
II ‘타이베이시경(北市警政)’ 앱	2
III 타이베이시정부 시민 서비스 플랫폼 (경찰국 안 건 신청) :	4
IV 경찰형사기록증명	5
V 교통 관련 주의사항	9
(i) 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	9
(ii) 주행 및 교통 안전	12
VI 타이베이시 경찰국 교통경찰 서비스항목	13
VII 타이베이시 경찰국 교통경찰 페이스북(Facebook)..	13
VIII 음주운전 처벌 규정	13
IX 보이스 피싱 대처 및 예방	14
X 여성· 아동 안전보호	15
XI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15
XII 각종 형사사건 대처방법	16
XIII 치안풍수사 (방범지도사)	17
XIV 문자 신고 서비스	18
XV 안전 주의사항	18
XVI 기타 민원 서비스	20
(i) 분실물 서비스	20
(ii) 타이베이시 콜센터 1999 번	20
(iii) 외국인 생활지원 콜센터 0800-024-111	20
(vi) 타이베이시 경찰기관 연락망	21
(v) 타이베이시 경찰국 각 분국 소속 파출소	21
제 2 장 노동국	24
I 대만 노동기준법 中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 가에 대한 규정	24
II 이주 노동자 입국 후 대만에서의 처리사항	26
III 이주 노동자 안전 및 위생 상식	28

IV	노사분쟁 대처법.....	28
V	직장 성희롱 대처법.....	29
VI	이주 노동자 구직 시 주의사항.....	30
VII	이주 노동자 상담 지원	30
제 3 장 사회국.....		32
I	유관기관 연락망.....	32
II	복지서비스	32
III	보호 서비스	35
IV	성희롱 예방 및 대처.....	37
V	각 행정구별 사회복지지원센터.....	37
VI	여성복지자원 일람표.....	38
VII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39
VIII	청소년 미혼모 지원센터.....	39
IX	여성보호센터.....	40
X	신이민자(다문화가정)지원업무	40
XI	각 행정구별 노인지원센터.....	40
제 4 장 위생국.....		42
I	민원서비스 정보.....	42
II	타이베이 시립 관두(關渡)병원	42
III	타이베이 시립 완팡(萬芳)병원	42
IV	타이베이 시립 렌허(聯合)병원	43
V	12 개 행정구 건강지원센터 리스트.....	43
VI	타이베이시 응급책임병원.....	45
VII	지역 심리상담 외래거점병원.....	46
VIII	신이민자(다문화가정)건강돌봄서비스.....	47
제 5 장 교육국.....		49
I	〈외국인학생 대만 취학 판법〉.....	49
II	〈타이베이시 국제교류촉진보조금 외국인 중국어 연수 요점〉.....	61
III	〈교육 관련 질의 해석〉.....	65
IV	외국인학교 리스트.....	66
V	산하기관 리스트.....	67

제 6 장	민정국	68
I	자주하는 질문	68
II	외국인 배우자 중화민국 귀화 신청 및 호적 등록 절차	83
III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 연락망	84
IV	타이베이시 신이민자회관(新移民會館)	84
제 7 장	산업발전국	85
I	자주하는 질문	85
II	유관기관 리스트	87
III	타이베이시 야시장 관광정보	87
제 8 장	지정국(地政局)	88
I	토지법 일부 조문<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관련 조문>	88
II	<외국인 국내 중대건설사업, 거시경제 또는 농 축업경영 투자에 관한 토지 취득 관법>	90
III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에 관한 작업요점>	93
IV	타이베이시 지정국 연락처	96
제 9 장	세무기관	97
I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97
(i)	소득세	97
(ii)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	115
II	타이베이시 세금징수처	123
(i)	토지가격세(地價稅)	123
(ii)	토지부가가치세	124
(iii)	주택세	125
(iv)	취득세	127
(v)	자동차면허세	127
(vi)	인지세	128
(vii)	타이베이시 세금징수처 및 각 지부(分 處)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	129
제 10 장	환경보호국	131
I	자원 재활용	131
(i)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131

(ii)타이베이시 재활용품 분류항목 일람표	131
II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133
III 쓰레기 수거	134
IV 타이베이시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135
V 공해 및 환경보호 신고전화.....	136
VI 폐기물 처리법 준수.....	136
VII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팁.....	136
* 타이베이시 환경보호국 공공시설 이용안내	137
I 베이더우(北投) 쓰레기소각장 공공시설.....	137
II 내이후(內湖) 쓰레기소각장 공공시설	138
III 무자(木柵) 쓰레기소각장 공공시설.....	141
IV 산주쿠(山豬窟)수영장 개방시간, 이용금액 및 이 용안내	143
V 산수이뤄(山水綠) 생태공원	144
VI 푸더坑(福德坑)환경보호복원공원	145
VII 내이후(內湖)복원공원	146
VIII 옌후이(延慧)서고.....	146
제 11 장 관광전파국	148
I 타이베이 관광포털	148
II 숙박 정보.....	148
III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인센티브 지원.....	149
IV 타이베이시 관광안내센터 서비스 항목 및 센터 정보	149
V 관광 출판.....	151
VI 온천 정보.....	152
VII Taipei Fun Pass 카드	153
VIII 타이베이 탐색관(臺北探索館) 관람안내.....	154
IX 타이베이 라디오방송국 소개.....	156
X 타이베이시 2층 관광버스.....	157
제 12 장 교통국.....	159
I 공공운수처(公共運輸(대중교통)處)	159
II 타이베이시 주차관리공정처(臺北市停車管理工程	

處).....	161
III 타이베이시 교통관제공정처(臺北市交通管制工程處).....	161
IV 타이베이시 교통사고재결소(臺北市交通事件裁決所).....	162
V 유바이크(YouBike)공공자전거.....	165
VI 관련 업무 부처.....	166
제 13 장 문화국.....	171
I 문화관광.....	171
II 문화지원.....	173
III “컬처 익스프레스(Culture Express)”.....	174
제 14 장 소방국.....	175
I 신고전화 119.....	175
II 구조증명 발급 신청.....	175
III 화재증명 발급 신청.....	175
IV 화재조사자료 발급 신청.....	176
V ‘소방풍수사(지도사)’ 방문 신청.....	177
VI 방재과학교육관 관람.....	178
VII 방재공원 정보.....	178
VIII 방재 지도.....	179
IX 병원 밖 심정지(OHCA)응급처치.....	180
X 재난 음성사서함 1991 번.....	181
XI 시민방재수첩<타이베이 방재 바로 Go!>.....	182
<부록> 타이베이시 각 국처 홈페이지 주소.....	184

제 1 장 타이베이시 경찰국

I 외국인 주의사항

대만은 아시아 지역의 현대화 민주법치국가 중 하나로, 대만 법률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역사 및 정서적 차이와 치안 및 특수안전(교통 등)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법령 및 규정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i) 대만에서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18조)
- (ii) 대만은 흥등가 지역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는 불법행위이다. (사회질서보호법 제80조)
- (iii) **마약**, 특히 **대마(씨앗 포함)** 및 **총기류**는 금지물품이다. 금지물품을 소지할 경우, 몰수는 물론 형사책임이 따른다. (마약위해방지조례, 총포·도검·화약류 관제조례)
- (iv) 대만은 도박을 불허하며 어떤 장소에서든 재물로 도박하는 것을 금한다. (형법 제266조)
- (v) 대만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 인신 자유를 구속(구금)당하여 위법이 의심될시, 법원에 직접 재판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이 대신 청구하여 인신자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재판청구권 통지서 양식은 7개 언어(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제공한다. (제심법(인신보호법) 제1조)
- (vi) 대만에서 **전철(MRT) 탑승 시 껌이나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대중전철법 제50조)
- (vii) 여행 시 사진 촬영을 할 때 군사시설은 피해야 한다 (주의표지 확인). 비행사고 방지를 위해 공항 인근 일정 거리 범위 내, **항공촬영장비 등 무선 조정 무인항공기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민간항공법 제99-13118-1조)
- (viii) 휴대폰, 신용카드 등 물품 분실 시, 현지 경찰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 (ix) **여권 분실 시**, 내정부(內政部) **이민서(移民署)** 각 현·시 안내소(service center)(비근무시간: 각 현·시 특별근무조(Specialized Operation Brigades))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 (x) 입산통제구역을 방문할 때 **사전에 입산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xi) 실내 공공장소나 3인 이상 근무하는 실내장소 및 대중교통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한다. (담배규제법 제15 및 16조)
- (xii) 대만의 은행 영업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국가 공휴일은 영업하지 않는다.
- (xiii) **인신매매 신고 전화번호: 02-23883095(內政部移民署 내정부 이민서), 110(범죄신고전화), 1955(외국인 근로자 24시간 상담 보호 전화번호)**

II ‘타이베이시경(北市警政)’앱

다운로드

iOS	Android
iOS버전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버전 앱 다운로드
	

타이베이시 경찰국은 ‘타이베이시경(北市警政)’앱을 개발하여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능과 서비스 항목은 다음과 같다.

- (i) ‘신고(報案專區)’: 신고’ 기능은 ‘110 음성신고, 113 보호 요청, 165 보이스피싱 신고’의 신속한 연락기능을 제공하며 또한, ‘온라인, 문자, 화상연락’ 방식의 신고 기능도 제공한다.

- (ii) ‘서비스 거점(服務據點)’: 전국 및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경찰 기관을 검색하여 구글맵으로 관련 위치를 제공합니다.
- (iii) ‘교통법률위반 고발’(違規檢舉)기능을 통해 휴대폰으로 고발 증거사진 및 고발자의 정보를 업로드하여 교통위반 사례를 고발할 수 있다.
- (iv) ‘법률집행정보(執法資訊)’에서는 교통 및 치안 분야 총 2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통법규 FAQ』, 『불법주정차 다발지역』, 『과속 단속카메라 위치검색』, 『견인차량보관소 조회』,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발생지 표시도』, 『교통상황』, 『택시』, 『교통경찰업무 자원봉사 사항』, 『경찰 행정 법규 FAQ』, 『타이베이시 데이터베이스』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v) ‘온라인 신청 (線上申辦)’: ‘온라인 신청(線上申辦)’에서 ‘교통안전보호단 신청’, ‘법규위반 및 견인정보서비스 신청’, ‘교통사고 자료 신청 및 진행 상황’, ‘치안풍수사(주거방범지도사) 조사 신청’, ‘자전거 실명 등록’, ‘시민서비스 플랫폼’ 신청 (경찰행정항목)등 6가지의 신청 기능을 제공한다.
- (vi) ‘홍보자료(宣導專區)’:
 1. ‘최신정보’: 교통통제, 우회경로 등 최신 업데이트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통제구간을 피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홍보영상’: 다양한 홍보영상을 통해 교통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 ‘범죄예방홍보’: 다양한 홍보영상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vii) ‘페이스북(臉書專區)’ 기능은 ‘NPA서장실’, ‘타이베이 폴리스’, ‘뉴스클라우드’, ‘타이베이시정부 경찰국 각 부서 페이스북’의 링크를 제공한다. 타이베이시정부 경찰국의 ‘타이베이 폴리스’의 팔로워란은 범죄 예방 및 홍보를 취지로 경찰 근무자들의 글, 촬영기록, 그

림 창작물 등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경찰들은 본 플랫폼을 통해 교류할 수 있다

(viii) ‘민원조회(便民查詢)’

1. ‘위반차량 견인조회’: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차량 견인여부와 견인차량보관소의 위치 등과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2. ‘분실물 보관 공고’: 경정서 (경찰 행정업무부) 에 업데이트된 분실물 공고를 검색할 수 있다.
3. ‘차량 도난(失竊車輛)’: 경정서 (경찰행정업무부) 에 업데이트된 차량 도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Ⅲ 타이베이시정부 시민 서비스 플랫폼

랫폼 (경찰국 안전 신청) :

<https://service.gov.taipei/>



서비스 항목	구비서류	담당기관
경찰형사 기록증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혹은 임시 데스크에서 수기 작성)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발급 수수료 4.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인 인감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위임장 1부(신청서에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음) 및 대리인 신분증 원본 	타이베이시 경찰국 외사과 (전화번호:(02)2381-7494, 팩스: 2381-7487)
차량분실/도난증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 국민신분증 2. 재산증명리스트 혹은 출처증명 3.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이나 거류증 제출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 제출 ; 신청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 호적등본 제출 	각 분국 경찰대 또는 파출소 (전화번호:(02)2331-3561, 내선을 통해 관할구 분국 경찰대 및 파출소로 연결)

서비스 항목	구비서류	담당기관
재산분실/도난증명	1. 신청인 국민신분증 2. 재산증명리스트 혹은 출처증명 3.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여권이나 거류증 제출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 제출 ; 신청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 호적등본 제출	각 분국 경찰대 또는 파출소 (전화번호:(02)2331-3561, 내선을 통해 관할구 분국 경찰대 및 파출소로 연결)
일반유실물증명	1. 신분증 및 유실물 관련 증명서류 2.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여권이나 거류증 제출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 제출 ; 신청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 호적등본 제출	각 분국 경찰대 또는 파출소 (전화번호:(02)2331-3561, 내선을 통해 관할구 분국 경찰대 및 파출소로 연결)
교통사고자료신청	1. 신청서 1부 2. 기타 관련 신분증명서	타이베이시 경찰국 교통경찰대 사고처리팀 (전화번호: (02)2375-2100 (내선: 1010-1012))

IV 경찰형사기록증명

(i) 신청방법

1. 방문신청
2. 우편신청
3. 팩스신청 (방문 수령)
4. 온라인신청 (방문 수령)
5. 휴대전화 앱 신청 (방문 수령)

(ii) 접수 장소 및 시간

1. 접수기관: 타이베이시 경찰국민원센터
2. 오시는길: 타이베이시 중정(中正)구 옌핑남로(延平南路)96호L층 (민원센터 입구는 중화로(中華路)를 향하

여 위치함. MRT 반난(板南)라인/신덴(新店)라인 시먼(西門)역 5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3. 접수시간: 월,화,목,금 8:30~17:00 / 수요일 8:30~20:00
(공휴일 제외)

4. 문의전화: (02)2381-7494, (02)2375-2105
팩스번호: (02)2381-7487

(iii) 신청인구비서류

1. 방문신청

(1) 신청서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1부(본인 서명날인 필수) 및 대리인 국민신분증 원본 필요)

(2) 구비서류

a. 자국민: 국민신분증 원본(확인 후 반환). 영문 이름을 추가할 경우 중화민국 여권 사본 1부 필요.

b. 중국, 홍콩, 마카오 주민: 중화민국 대만 지역 정거증(定居證)원본 (확인 후 반환)

c. 외국인: 여권 원본 및 외국인거류증(ARC)원본 (외국인거류증 미발급 시 제외)

d. 신청인이 20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신분증 원본 제출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3) 수수료: 1부당 NT\$100. 2부 이상 신청 시(증명서 내용 동일), 1부당 NT\$20 추가.

(4) 수령방법:

a. 방문수령: 영수증 제출. 영수증 분실 시, 본인이 상기 구비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수령

b. 우편수령: 신청 시 등기우편 봉투에 수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제출

2. 우편신청

(1) 국내우편신청

a. 작성 완료한 신청서

b. 구비서류는 방문신청과 동일 (원본도 발송해야 하며 증명서 발급 후 함께 반환)

- c. 신청료는 전신환이나 어음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어음사용시 계정명은 타이베이 시정부 경찰국으로 기재
- d. 증명서 수신용 등기우편 봉투 1매 (수신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e. 준비된 a~d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타이베이시 경찰국에 발송
수신인: 타이베이시 경찰국 외사과
(경찰형사기록증명 신청)
주소: (100001)타이베이시 중정(中正)구 옌핑남로 (延平南路)96호
전화번호: (02)2381-7494

(2) 해외우편신청

- a. 작성 완료한 신청서
- b. 대만 해외주재기관 또는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또는 관련 공증기관의 검증,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은 여권 또는 외국인거류증 사본
- c. 1부당 수수료 7달러 (홍콩, 마카오 지역 6달러. 현금만 가능하며 어음 및 수표 불가. 발급수수료 및 중화우정 국제등기요금 포함) 2부 이상 신청 시, 1부당 1달러 추가(증명서 내용 동일)
- d. 증명서 수신용 우편봉투 1장 (우표는 붙일 필요 없으며 수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 e. 준비된 a~d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타이베이시 경찰국에 발송
수신인: 타이베이시 경찰국 외사과
(경찰형사기록증명 신청)
주소: (100001)타이베이시 중정(中正)구 옌핑남로 (延平南路)96호
전화번호: 886-2-2381-7494

3. 온라인신청

(1) 내정부경정서 신청 시스템:
<http://eli.npa.gov.tw/E7WebO/index01.jsp>

(2) 타이베이시정부 시민 서비스 플랫폼:
<https://service.gov.taipei/Case/ApplyWay/2018122401901002>

(3) 수령방법:

갑. 본인: 신분증명 가능한 증서를 구비하고 방문하여 수령

을. 대리인: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위임장 (신청서에 위임장 기입란이 있음), 신청인과 대리인의 국민신분증 또는 여권 원본을 지참하여 수령

4. 팩스신청

(1) 구비서류는 방문신청과 동일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을 팩스((02)2381-7487)로 전송 후, (02)2381-7494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전화 확인을 거쳐야 접수가 완료된다.

(3) 수령방법: 온라인신청과 동일

5. 휴대전화 앱 신청

(1) 휴대전화에 ‘타이베이시경’ 앱 설치 후 신청

(2)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방문신청과 동일

(3) 수령방법: 온라인신청과 동일

(iv) 주의사항

1. 다른 궁금한 사항은 근무시간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2. 경찰형사기록증명은 중/영본으로 발급된다. 해외 국가나 외국기관에 제출해야 할 경우 여권 사본을 제시하면 영문명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3. 만약 신청인이 법원이나 군법정으로부터 형사판결확정, 무죄판결, 감형선고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사법, 군법 판결문을 제출하면 조회 및 발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V 교통 관련 주의사항

(i) 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

1. 현장처리

- (1) 교통사고 발생 시 아래 5단계 대처법을 숙지한다.
 - a. 설치(안전표지를 설치한다)
 - b. 신고(경찰신고 또는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전화를 건다)
 - c. 표시(사고차량 최종위치를 표시한다)
 - d. 이동(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량을 이동시킨다)
 - e. 대기(경찰의 처리결과를 침착하게 기다린다)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현장에 남아서 처리해야 뺑소니를 면할 수 있다.
- (2) 부상/사망 사고는 어떻게 대처하나?
 - a.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신속히 부상자를 병원으로 호송한다.
 - b. 사고지점 앞뒤 적정거리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한다.
 - c. 즉각 신고하고, 뺑소니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멋대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 (3) 뺑소니 사고는 어떻게 대처하나?
 - a.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현장 증거를 보존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b. 경찰 조사에 유리할 수 있도록 목격자를 찾는 한편, 뺑소니 차량번호, 차종, 색깔, 특징 및 도주방향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구한다.
- (4) 어떻게 신고하나?
 - a.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쉽고 빠른 신고방법은 즉각 110번으로 경찰국에 신고한다.
 - b. 신고할 때 구체적인 사고발생 장소, 시간, 차량번호, 차종, 사상자 현황 및 신고자 이름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c. 신고 후에는 사고처리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서 기다려야 한다.

- d. 교통사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형법상의 자수 요건에 맞을 경우 감형될 수 있다.

(5) 자신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a. 담당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전

- (a) 침착하게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처리하며, 언쟁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곤란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b) 사고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 (c)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길 때, 만약 다른 차량이 없어 사고 차량을 이용해야 될 경우 우선 차량위치를 표시한 후 이동해야 한다.
- (d) 가능하면 카메라로 현장상황, 노면흔적, 떨어진 물건, 사고차량 파손상태 및 사상자 당시상황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긴다.
- (e)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를 찾도록 한다.

b. 담당경찰이 사고처리를 진행할 때

- (a) 경찰에 협조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한다.
- (b) 스키드 마크, 노면 스크래치 등 현장의 중요 단서들을 주의 깊게 수집하고 사진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당부한다.
- (c) 현장 스케치와 진술기록에 날인하기 전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하며,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d) 언행에 주의하여 상대방 당사자나 사고처리 담당자와 언쟁을 벌이지 않도록 한다.

c. 경찰 조사 종료 이후

- (a) 사고현장에서 경찰이 도로교통사고 당사자등록증을 발급해준다.
- (b) 사고 7일 후 교통경찰대 홈페이지

(<http://117.56.12.139>) 에서 현장스케치, 현장사진 및 도로교통사고조사 잠정결과표(잠정결과표는 신청 30일 후 발급) 발급을 신청하고, 사건 종결 이후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서류 발급 통보를 받으면, 본인이 지정한 경찰국 산하 파출소나 교통경찰분대에서 수령하거나 또는 업무시간(8:30~17:00, 점심시간 정상근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통경찰대 통합민원센터(주소: 타이베이시 중정(中正)구 아이궈서로(愛國西路) 26호, 전화번호: (02)2375-2100 (내선 1011~1012)) 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c)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단, 1. 당사자 위임장 원본, 2. 당사자 신분증 원본, 3.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2. 사고책임처리

(1) 형사책임은 어떻게 처리하나?

- a.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당사자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고지점 관내 분국 조사팀 또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정소송기한인 6개월을 넘길 경우 그 권리가 상실된다.
- b.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검찰이 법에 따라 기소하게 되며 당사자는 지방법원 검찰의 처리 통보를 기다려야 한다.

(2) 민사책임은 어떻게 처리하나?

- a. 민사 구상 관련당사자는 직접 보상금을 조율하거나, 보험사에 위임하여 처리하거나 지방법원 민사 법정에 심리를 소청해야 한다.
- b.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향진시 중재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1. 차량파손 또는 재물손실에만 연관된 경우, 상대방 주소지/주거지 향, 진,

시(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2. 형사 사건과 연관된 경우, 상대방 주소지/주거지 또는 사고발생지 향, 진, 시(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3. 쌍방 동의와 중재 신청이 접수된 향, 진, 시(구)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향, 진, 시(구)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3) 행정책임은 어떻게 처리하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교통위반고지서를 지참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처벌을 받는다.

3. 문의사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정보 조치가 필요할 시 교통경찰대 통합민원센터에서 문의/조회할 수 있다. (臺北市中正區愛國西路26號 1F, 전화번호: (02)2375-2100(내선 1011~1012))

(ii) 주행 및 교통 안전

1. 자전거 주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도로교통 안전규칙>제124조 규정에 따라 표지판, 노면표시, 신호등을 준수하고 교통지휘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1)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이 없는 곳에서는 저속차선을 따라 우측 차선에서 주행해야 한다.
 - (2) 신호위반, 고속차선 추월, 고속차선 주행, 역주행, 자전거 음주운전 등은 해서는 아니 된다.
 - (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는 보행자도로에서 주행해서는 아니 된다.
2. 좌회전할 때, 신호등 표시를 따라야 하며 방향지시등을 키고 직진차량 우선 통과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3.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 우선 통행을 위해 잠시 정차해야 한다.

VI 타이베이시 경찰국 교통경찰 서비스항목

1. 교통사고 신고 처리
2. 교통사고 잠정조사결과 조회
3.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잠정조사결과표 발급
4. 골목 이중주차 또는 출입구 주차 견인 서비스
5. 차량 견인 및 일반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
6. 교통위반 신고건 문자메시지 통보
7. 실시간 도로교통상황 안내
8. 신호등 고장 처리



VII 타이베이시 경찰국 교통경찰 페이스북

이스북(Facebook)

[타이베이 안전 주행, 시민 곁에 늘 교통경찰]

<https://www.facebook.com/td.police.taipei>

교통 업무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홍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교통법규 집행,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VIII 음주운전 처벌 규정

- (i) <도로교통안전규칙> 제114조 규정에 따라, 주류 또는 기타 유사물 섭취 후 음주측정기로 측정된알코올농도가 0.15mg/L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인 자는 <도로교통관리처벌특례> 제35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NT\$15,000~90,000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차량 운전자는 NT\$30,000~12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장에서 차량을 보관소에 견인하고 운전면허를 1년에서 2년간 취소한다.
- (ii)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알코올농도가 0.25mg/L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자는 <형법> 제185조 중 '3 안전운전불능죄'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NT\$20만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iii) <도로교통관리처벌특례> 제35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운전자는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알코올농도가 0.25mg/L 이상일 경우, 18세 이상의 동승자에게도 NT\$ 600~3,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 (iv) 『도로교통관리 처벌조항』 제35-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 67조 제5항 운전면허 규정을 근거로 면허증을 획득한 운전자가 운전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사용규정을 위반하였다면 NT\$6,000~12,000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가 장착된 본인의 차량을 제3자의 도움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시동하였다면 제3자도 NT\$6,000~12,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IX 보이스 피싱 대처 및 예방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최대한 냉정하게 경찰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의전화로 연락한다.

1. 사기신고 문의 전화: 165번
2. 전국 각지 신고 전화: 110
3. 사기를 어떻게 예방하나?
 - (1) 낯선 사람의 지시를 듣고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제공을 하지 않는다.
 - (2) 낯선 사람의 지시를 듣고 ATM기를 사용하거나 게임 포인트를 구매하지 않는다.
 - (3)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점은 피한다.
 - (4) 사기 예방 3대 요령: 침착, 확인, 신고
 - (5) 사기 신고전화 ‘165’를 기억한다.
4. 법원 판사, 검찰 검사 또는 경찰기관의 사건처리 5불(不)원칙:
 - (1) 직원을 보내 현금, 직불카드, 비밀번호 및 계좌이

- 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 (2) 절대 통장이나 예금을 관리하지 않는다.
 - (3) 절대 팩스로 통보하지 않는다.
 - (4) 절대 전화로 사건기록을 하지 않는다.
 - (5) 절대 전화로 구속 또는 유치한다고 하지 않는다.

X 여성·아동 안전보호

(i) 여성·아동 서비스 상담전화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타이베이시정부 주 타이베이방법원 가정폭력 사건 연합 서비스 센터	231204新北市新店區中興路1段248號2樓	(02)8919-3866 (내선 5368、5398)
타이베이시정부 주 스린지방법원 가정폭력사건 연합 서비스 센터	111035臺北市士林區士東路190號1樓	(02)2831-2321 (내선 103、136)
타이베이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센터	100006臺北市中正區延平南路123號	(02)2361-5295
타이베이시 사회국 여성복지 및 아동탁육과	110204臺北市信義區市府路1號(西南區8樓)	(02)2759-7732 #부녀자복지 내선 6969~71 #아동탁아 내선 1622~25
타이베이시 경찰국 여성·아동 경찰대	110022臺北市信義區信義路5段180號	(02)2759-0827

(ii) 『0800 스마트 여성안심 콜택시 시스템』

유선전화: 0800-055-850(무료통화)

핸드폰: 55850(유료통화)

XI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 (i)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거나 본인 신변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때 110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도움을 청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보호령을 신청해주고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타이베이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센터’에 통보하여 후속조

치를 마련해 준다.

- (ii)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별이 같은 경찰이 동행하여 상처검사, 진술기록, 신변보호 강화 등 타이베이시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XII 각종 형사사건 대처방법

(i) 연락처 정보

1. 기관명: 타이베이시 경찰국 형사경찰대,
주소: 100001臺北市中正區武昌街1段69號
2. 긴급전화: 110 또는 (02)2381-7263
3. 근무시간: 월~금 8:30~17:30 (점심시간: 12:30~13:30)

(ii) 민원서비스

신고전화는 (02)2381-7263 콜센터로 하면 된다. 근무지 휘센터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직 형사조사팀이 24시간 신고 접수를 처리한다. 만약 해당 사건이 관할지역 사건이 아닐 경우, 담당 부서에 이관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iii) 자주하는 질문

1.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사건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경찰 당국에 포상금을 요청할 수 있나?

답변: 포상금 규정에 따라 사건 단서를 제공하거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경우, 경찰 당국에서 NT\$1,000~200,00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유실물을 습득한 후 본인이 소유할 경우 죄가 성립이되나?

답변: 유실물 습득 후 본인이 소유할 경우, 형법 제337조 ‘유실물 횡령죄’에 저촉될 수 있다.

3. 오토바이 도난 및 분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하나?

답변:(1)오토바이 주정차 시 자물쇠를 걸어둔다. (견고하고 정밀한 합금 재질의 자물쇠 권장)

(2)주정차 시 주위를 잘 살핀 후 열쇠를 빼고 경

보 설정을 한다.

(3)주정차 시간이 짧다고 아무데나 세우거나 열쇠를 빼지 않고 자물쇠를 걸어두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가능한 주차장이나 보관소에 주차하고 주차증을 잘 보관한다.

(5)부품 교체 시 합법적인 제품을 사용하여 장물의 유통을 차단한다.

4. 자칭 폭력배 조직원이라 칭하는 자가 협박하거나 재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되도록 시간을 끌어둔다.

(2) 전화 녹음기능이 있는 기기를 준비한 후 통화시 녹음을 하여 증거를 남겨둔다.

(3) 경찰에 신고한다.

XIII 치안풍수사 (방법지도사)

타이베이시는 시민들의 주거방범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방범 지도사인 치안풍수사(治安風水師)를 도입하여 주거방범시설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i) 신청자격: 현재 타이베이시 관할 구에 거주 중인 가구

(ii) 서비스시간: 연중무휴

(iii) 신청기관: 타이베이시 경찰국 각 분국 경찰대 및 파출소

(전화번호: 경찰국 대표번호 2331-3561, 내선을 통해 관할 구 지구대 및 파출소로 연결)

(vi) 온라인 신청 QR코드/웹사이트:

<http://police.gov.taipei/lp.asp?ctNode=45826&CtUnit=25084&BaseDSD=7&mp=10800E>



XIV 문자 신고 서비스

타이베이시 경찰국은 ‘문자신고번호’ 0911-510-914를 개설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청각 및 언어 장애인 포함)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건개요 및 사고지점을 전송하면 타이베이시 경찰국이 관할지구에 통보하여 처리한다.

XV 안전 주의사항

(i) 주거안전

1. 외출 시 문과 창문 단속을 잘 하고 방범시스템이 있다면 작동시킨다.
2. 휴가로 인한 부재 시, 해당지역 경찰국 분국 또는 파출소에 ‘안심외출 주택순찰서비스’를 신청하면 순찰을 강화해 준다.
3. 낯선 사람이 방문할 때, 우선 방문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4. 지역사회의 ‘방범 품앗이’를 통해 상부상조하여 도둑 침입을 방지한다.
5.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차량 발견 시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자동차 번호를 기록해둔다.
6. 귀중품을 집안이 아닌 은행 금고에 두거나 분산 보관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다.

(ii) 외출안전

1. 길을 걸을 때 주변을 잘 살펴야 하며,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자제한다.
2. 길을 걸을 때 등 뒤에서 날치기나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차량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걷는다.
3.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납치 등 미연의 사고를 방지한다.
4. 심야나 새벽시간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자제한다.
5. 업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늦은 밤 귀가를 해야 할 경

우, 호루라기나 경보기를 옷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만일 위협을 받을 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간을 단축하고자 지름길로 가기 위해 어두운 골목이나 공원, 거리 또는 외진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iii) 화재안전

1. 집안에 소방설비나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한다.
2. 자기 전 또는 외출 전에 가스밸브와 불필요한 전원을 꺼놓는다.
3. 대피계획을 세우고이에 맞는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사고발생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야외장소를 지정해 놓는다.
4. 화재 발생 시 가족들을 우선 대피시키고 구조요청을 한다.
5. 부적합한 전선이나 조명기기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조리기구나 전열기구 사용 시 유의해야한다.
6. 공공장소에서는 비상구 위치를 파악해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정전으로 인해 갇힐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vi) 개인안전

1. 택시 이용 시 주의사항
 - (1) 먼저 와서 호객하는 택시는 이용하지 않는다.
 - (2)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가 불분명한 택시는 이용하지 않는다.
 - (3) 택시기사가 음주한 것으로 보이거나 복장이 불량한 경우 즉각 하차를 요구해야 한다.
 - (4) 택시 이용 시, 지인들에게 택시 회사명과 번호를 알려준다.
 - (5) 택시 이용 시, 차량번호와 택시기사 이름을 기억해 두면 유사시 대처하거나 놓고 내린 물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2. 여행 시 주의사항

- (1) 여행자수표를 지참하고, 본인의 재산과 물품을 잘 관리한다.
- (2) 숙박환경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숙박시설은 피한다.
- (3) 외출 시 호신용품 소지를 권장한다.

XVI 기타 민원 서비스

(i) 분실물 서비스

택시에 놓고 내린 물건이 있을 시, 경찰방송국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전화번호:(02)2388-0066

(ii) 타이베이시 콜센터 1999번

타이베이시는 쉽고 간편한 시정업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콜센터 1999번』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민원이나 신고, 제보, 건의사항 등의 처리와 절차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999번을 통해 타이베이시의 세심하고 창의적인 시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타이베이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에서 『1999타이베이시 콜센터』서비스 이용시 연락처: (02)2720-8889

(iii) 외국인 생활지원 콜센터 0800-024-111

내정부 이민서는 외국인 및 거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만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어, 영어, 일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7개 언어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콜센터(0800-024-111)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vi) 타이베이시 경찰기관 연락망

분국/부서	주소	경찰대 (형사사건/ 사기상담)	외사경찰 (외국인 지원)
외사과	100001臺北市中正區延平南路96號		(02)2381-8251 (02)2381-7494
외사지원센터 (服務站)	111040臺北市士林區大東路80號		(02)2556-6007
다통(大同)분국	103047臺北市大同區錦西街200號	(02)2553-1516	(02)2553-4657
완화(萬華)분국	108214臺北市萬華區桂林路135號	(02)2331-1475	(02)2314-4530
중산(中山)분국	104204臺北市中山區中山北路2段1號	(02)2562-7500	(02)2551-5495
다안(大安)분국	106241臺北市大安區仁愛路3段2號	(02)2325-9854	(02)2325-5901
중정(中正) 제1분국	100008臺北市中正區公園路15號	(02)2314-3643	(02)2311-7130
중정(中正) 제2분국	100052臺北市中正區南海路35號	(02)2311-9708	(02)2375-1614
송산(松山)분국	105037臺北市松山區南京東路4段12號	(02)2579-6395	(02)2579-6837
신이(信義)분국	110014臺北市信義區信義路5段17號	(02)2723-4508	(02)2723-4989
스린(士林)분국	111012臺北市士林區文林路235號	(02)2881-3411	(02)2881-3853
베이터우(北投) 분국	112023臺北市北投區中央北路1段1號	(02)2891-2354	(02)2892-3334
원산(文山)제1분국	116008臺北市文山區木柵路2段202號	(02)2939-5272	(02)2939-2324
원산(文山)제2분국	116066臺北市文山區景中街2號	(02)2931-5472	(02)2934-6993
난강(南港)분국	115001臺北市南港區向陽路150號	(02)2783-7780	(02)2782-5093
네이후(內湖)분국	114020臺北市內湖區民權東路6段101號	(02)2790-0310	(02)2790-9718

(v) 타이베이시 경찰국 각 분국 소속 파출소

분국명	파출소명	연락처	주소
다통(大同) 분국	닝샤(寧夏) 파출소	(02)2557-5011	臺北市大同區錦西街200號
	엔핑(延平)파출소	(02)2556-4340	臺北市大同區延平北路1段86號
	젠청(建成)파출소	(02)2558-5463	臺北市大同區承德路1段80號
	민주로(民族路) 파출소	(02)2592-6204	臺北市大同區重慶北路3段168號
	민성서로(民生西路) 파출소	(02)2553-8587	臺北市大同區保安街47-1號
	중칭북로(重慶北路) 파출소	(02)2591-0370	臺北市大同區重慶北路3段320之2號
완화(萬華) 분국	룡산(龍山)파출소	(02)2331-4823	臺北市萬華區桂林路135號
	강딩로(康定路)파출소	(02)2306-4226	臺北市萬華區和平西路3段112號
	동위안가(東園街) 파출소	(02)2303-3247	臺北市萬華區長泰街130號
	시위안로(西園路) 파출소	(02)2309-1238	臺北市萬華區東園街17號
	다리가(大理街)파출소	(02)2306-3468	臺北市萬華區大理街99號
	화장(華江) 파출소	(02)2306-1531	臺北市萬華區環河南路2段196號
	취광(莒光) 파출소	(02)2306-4987	臺北市萬華區莒光路171號
	시먼딩(西門町) 파출소	(02)2331-2212	臺北市萬華區康定路22號
	청년로(青年路) 파출소	(02)2305-4219	臺北市萬華區萬大路423巷114號
중산(中山) 분국	중산(中山) 1파출소	(02)2511-1499	臺北市中山區中山北路1段110號
	중산(中山) 2파출소	(02)2541-2002	臺北市中山區中山北路2段90號

분국명	파출소명	연락처	주소
	위안산(圓山) 파출소	(02)2594-2750	臺北市中山區中山北路3段62號
	창춘로(長春路) 파출소	(02)2501-0644	臺北市中山區長春路206號
	창안동로(長安東路) 파출소	(02)2771-1932	臺北市中山區長安東路2段165號
	민취안(民權) 1파출소	(02)2531-4671	臺北市中山區新生北路2段127-1號
	젠궈(建國)파출소	(02)2509-1990	臺北市中山區民族東路284號
	다즈(大直) 파출소	(02)2533-2984	臺北市中山區北安路456號
다안(大安) 분국	허핑동로(和平東路)파출소	(02)2321-8073	臺北市大安區和平東路1段143號
	안허로(安和路) 파출소	(02)2702-5232	臺北市大安區信義路4段216號
	둔화남로(敦化南路) 파출소	(02)2771-0400	臺北市大安區復興南路1段219之1號
	신성남로(新生南路) 파출소	(02)2325-8611	臺北市大安區仁愛路3段18號
	루이안가(瑞安街) 파출소	(02)2705-4164	臺北市大安區瑞安街23巷17號
	뤄스푸로(羅斯福路) 파출소	(02)2735-5761	臺北市大安區羅斯福路4段113巷13號
위룽가(臥龍街) 파출소	(02)2733-4439	臺北市大安區臥龍街185號	
중정 제1 (中正第一) 분국	런아이로(仁愛路) 파출소	(02)2321-2067	臺北市中正區仁愛路1段19號
	지예쇼우로(介壽路) 파출소	(02)2311-3081	臺北市中正區公園路54號
	보아이로(博愛路) 파출소	(02)2311-8175	臺北市中正區博愛路119號
	중샤오동로(忠孝東路) 파출소	(02)2321-8656	臺北市中正區忠孝東路2段10號
중샤오서로(忠孝西路) 파출소	(02)2314-2722	臺北市中正區公園路15號	
중정 제2 (中正第二) 분국	샤먼가(廈門街) 파출소	(02)2368-4427	臺北市中正區廈門街43號
	스위안가(思源街) 파출소	(02)2365-0844	臺北市中正區汀州路3段72號
	취엔쑤우가(泉州街) 파출소	(02)2303-9915	臺北市中正區中華路2段503號
	난창로(南昌路) 파출소	(02)2321-8148	臺北市中正區南昌路1段7號
난하이로(南海路) 파출소	(02)2375-2835	臺北市中正區南海路35號	
송산(松山) 분국	산민(三民) 파출소	(02)2762-1708	臺北市松山區民生東路5段163之1號
	중룬(中崙) 파출소	(02)2579-0718	臺北市松山區南京東路4段12號
	동서(東社) 파출소	(02)2713-5253	臺北市松山區敦化北路199巷5之1號
	송산(松山) 파출소	(02)2767-0446	臺北市松山區八德路4段692號
민요우(民有) 파출소	(02)2712-3638	臺北市松山區民權東路3段162號	
신이(信義) 분국	산장리(三張犁) 파출소	(02)2729-5561	臺北市信義區信義路5段17號
	우펀푸(五分埔)파출소	(02)2765-3349	臺北市信義區永吉路333號
	리오우장리(六張犁) 파출소	(02)2735-5068	臺北市信義區基隆路2段131-22號
	우싱가(吳興街) 파출소	(02)2739-8997	臺北市信義區吳興街262號
푸더가(福德街) 파출소	(02)2727-3424	臺北市信義區松德路66號	
스린(士林) 분국	텐무(天母) 파출소	(02)2871-4110	臺北市士林區中山北路7段192號
	산자이호우(山仔后) 파출소	(02)2861-1295	臺北市士林區格致路39號
	호우강(後港) 파출소	(02)2882-9373	臺北市士林區福港街151號
원린(文林) 파출소	(02)2881-2211	臺北市士林區文林路235號	

분국명	파출소명	연락처	주소
	용푸(永福) 파출소	(02)2861-6353	臺北市士林區仰德大道3段49號
	시산(溪山)파출소	(02)2841-1110	臺北市士林區至善路3段263號
	서즈(社子) 파출소	(02)2812-2720	臺北市士林區延平北路6段237號
	추이산(翠山) 파출소	(02)2841-1423	臺北市士林區中社路1段56號
	쯔산옌(芝山岩) 파출소	(02)2881-3194	臺北市士林區仰德大道1段16號
	란야(蘭雅) 파출소	(02)2831-5001	臺北市士林區中山北路6段153號
베이터우 (北投)분국	광밍(光明) 파출소	(02)2891-2047	臺北市北投區泉源路14號
	공위옌(公園) 파출소	(02)2861-0145	臺北市北投區紗帽路110號
	다툰(大屯) 파출소	(02)2891-3971	臺北市北投區中和街534號
	치옌(奇岩) 파출소	(02)2891-3531	臺北市北投區公館路209巷11號
	용밍(永明) 파출소	(02)2821-3110	臺北市北投區石牌路2段101號
	스파이(石牌) 파출소	(02)2823-1513	臺北市北投區文林北路296號
	쭈즈호(竹子湖) 파출소	(02)2861-6082	臺北市北投區竹子湖路16號
	창안(長安) 파출소	(02)2891-1646	臺北市北投區中央北路1段1號
	관두(關渡) 파출소	(02)2858-3864	臺北市北投區大度路3段305號
원산 제1 (文山第一) 분국	무짜(木柵) 파출소	(02)2939-7141	臺北市文山區木柵路2段202號
	무신(木新) 파출소	(02)2937-2488	臺北市文山區恆光街45號
	푸싱(復興) 파출소	(02)2236-7140	臺北市文山區木柵路1段54號
	즈난(指南)파출소	(02)2938-2712	臺北市文山區指南路2段177號
	완팡(萬芳) 파출소	(02)2239-1753	臺北市文山區萬美街1段50號
원산 제2 (文山第二) 분국	징메이(景美) 파출소	(02)2931-3459	臺北市文山區景中街2號
	싱룽(興隆) 파출소	(02)2931-3842	臺北市文山區興隆路2段156號
	완성(萬盛)파출소	(02)2931-2502	臺北市文山區羅斯福路5段151號
난강(南港) 분국	통더(同德)파출소	(02)2786-7201	臺北市南港區同德路83號
	난강(南港)파출소	(02)2783-0476	臺北市南港區興中路12巷2號
	지우좡(舊莊)파출소	(02)2782-2492	臺北市南港區舊莊街1段213號
	위청(玉成)파출소	(02)2788-6958	臺北市南港區向陽路150號
네이후 (內湖)분국	네이후(內湖)파출소	(02)2793-1031	臺北市內湖區內湖路2段261號
	탄메이(潭美)파출소	(02)2791-7233	臺北市內湖區新明路324號
	시후(西湖)파출소	(02)2798-7505	臺北市內湖區瑞光路515號
	다후(大湖)파출소	(02)2790-9521	臺北市內湖區成功路5段1號
	윈더(文德)파출소	(02)2794-4946	臺北市內湖區民權東路6段26號
	동후(東湖)파출소	(02)2631-3350	臺北市內湖區五分街10號
	강러(康樂)파출소	(02)2634-2237	臺北市內湖區康樂街110巷16弄20號
	강닝(康寧)파출소	(02)8792-0061	臺北市內湖區金湖路83號
	강첸(港墘)파출소	(02)8751-8690	臺北市內湖區內湖路1段550號

제 2 장 노동국

I 대만 노동기준법 中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대한 규정

(i) 임금

노사 양측이 합의한 약정에 따라, 대만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임금이 기본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임금 지급은 법정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해야 한다. 단, 관습 또는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물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노사간 별도의 계약이 있을 시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취업 서비스 법 제46조 제1항 제8관부터 제11관의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는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ii) 근로시간

노사 양측이 합의한 근로계약을 따른다. 만약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1일 정상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추가 근무 시 해당 법 규정을 따른다.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간 휴식을 해야 한다. 단, 교대근무나 연속성 또는 다급한 업무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시간 내에 별도의 휴식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

(iii) 휴일

노사 양측이 합의한 근로계약을 따른다. 만약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7일 중 2일은 휴일로 그 중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휴무일이다. 천재지변, 사변 또는 돌발사고로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근무를 해야 한다. 근로기간이 만 6개월

이 지난 후에는 3일 연차를 지급받으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7일 연차를 지급받는다.

(iv) 휴가

1. 일반휴가: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개인 사유가 있을 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합계 일수가 14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휴가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일반병가: 일반적인 부상, 질병 또는 생리적 사유로 반드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입원치료가 아닌 경우 연간 합계 일수가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산재병가: 산업재해로 인한 경우, 치료기간 동안 산재병가로 처리된다.

(v) 노동부에 따르면 개인서비스업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즉 취업 서비스법 제46조 제1항 제9관의 이주 노동자)은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노사 양측이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vi) 취업 서비스법 제46조 제1항 제8관부터 제11관에 의거,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주 또한 취업 서비스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 식대와 숙박비, 생활 서비스 돌봄 계획.. 등 규정.

(vii)근로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1. 중화민국 국적의 국민과 외국인거류증이 있는 이주 노동자는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이주 노동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그 고용주 또는 소속단체 또는 소속기관이 보험가입 주체가 되고 근로보험에 가입한 자는 피보험자가 되며 규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외국인 가사도우미 또는 간병인이 자연인에 고용된 경우, 근로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자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주는 보험가입 주체가 되며 고용허가서류 등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보험국 및 건강보험서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4. 이주 노동자의 기타 근로보험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근로보험조례 및 취업복무법 관련 규정을 따른다.

(viii) 근로복지

1. 50인 이상 공·민영 공장, 광산 또는 기타 기업단체는 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직원복지위원회를 설립하고 복지 관련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창립 시 자본금, 매월 영업총수익, 직원 매월 임금, 자투리 물품 판매금에서 직원복지기금을 출연하여 복지 관련 사항을 처리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전원 직원복지를 누릴 수 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직원복지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의 복지 관련 규정을 따르고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명시할 수 있다.

II 이주 노동자 입국 후 대만에서의 처리사항

(취업 서비스법 제46조 제1항 제8관부터 제11관 규정의 외국인 근로자)

(i) 정기건강검진

1. 이주 노동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중앙 위생 주무기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결과 불합격 시, 근로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용주가 근로자의 귀국수속을 진행해줘야 한다.
2. 이주 노동자의 근무시작 혹은 고용주 변경후 만 6개월, 18개월, 30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주무기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결과 불합격 시, 근로허가증은 폐기되며 고용주는 즉각 근로자의 귀국을

독촉해야 한다.

3. 외주 노동자의 고용주가 변경되었거나 업무가 변경된 이후 1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고용주는 고용 허가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ii) 입국통보

1. 고용주 또는 위탁민간취업서비스기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3일 이내에 ‘고용주 채용 외국인 근로자 입국통지서’를 기재하여 타이베이시 ‘노동력재건운용처’에서 입국 통보를 진행해야 하고 동시에 외국인 작업장 주소도 통보해야한다.
2. 타이베이시 ‘노동력재건운용처’는 ‘고용주 채용 외국인 근로자 입국통지서’ 접수증서를 발급한 후 외국인 생활지원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3. 외국인은 입국 후 허가를 받은 숙소에서 거주해야한다, 고용주는 이주 노동자의 숙소 변경(예: 간호인에 따라 이동, 사업체 변경으로 인한 숙소 변경 혹은 고용주가 중개업소에 위탁 등) 7일내, ‘외국인 숙소 변경 통지서’로 외국인 원 작업장 소재지 및 원 숙소지의 주관기관에 통지해야하며, 또한 이주하는 도시의 지방 주관기관에도 통지해야한다.

(iii) 기한내 거류증 취득

1. 이주 노동자가 입국한 후, 고용주는 15일 이내에 노동부의 승인서와 타이베이시 위생국의 이주 노동자 건강검진 합격증을 첨부하여 내정부 이민서에서 외국인 거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거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외국인 거류증을 항시 소지해야 한다. 거류증 미취득자는 여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2. 외국인 거류증 신청 시, 이주 노동자가 내정부 이민서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iv) 고용허가증 발급 및 연장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후 15일 이내에 고용주는 고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기간은 최장 3년이다.

Ⅲ 이주 노동자 안전 및 위생 상식

- (i) 산업재해 방지와 이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업안전위생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는 규정에 맞는 안전위생 필수장비와 필수조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 (ii) 고용주는 고용한 이주 노동자에 대해 직업안전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주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Ⅳ 노사분쟁 대처법

- (i) 이주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하여 조원이 될 수 있다.
- (ii) 이주 노동자가 노동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사업장이 경영부진으로 인해 사업축소, 영업적자, 휴업, 양도 등 상황이 발생할 시,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근로자가 과실을 범하고 그 과실이 노동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정사유일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고용주가 과실을 범하고 그 과실이 노동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정사유일 경우, 근로자는 사전 예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다.
- (iii)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연장이 없거나 새로운 고용자가 없는 이주 노동자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
- (iv)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가 고용관계를 앞당겨 해지하고 고용허가기한 만료 14일 전에 출국할 경우, 타이베이션시 노동력재건운동처에 통보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하

고 고용관계 종료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관계 종료를 입증해야할 경우, 타이베이시정부 시민 서비스 플랫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v) 이주 노동자는 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노동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근신의 의무등 고용주에게 충성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vi) 이주 노동자는 노동기준법 쟁의 발생 시, 노동 임금 쟁의 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타이베이시 노동국 노동기준과(02-2720-8889)에 연락하여 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서 노동 임금 쟁의 합의 신청을 할 수 있나? 신청 링크: <https://bit.ly/2IED4Yq>

(vii) 이주 노동자(취업 서비스법 제46조 제1항 제8관부터 제11관)는 노동 임금 쟁의 처리법 쟁의(노동기준법 미 저촉) 발생 시, 타이베이시 노동력 재건 운용처(02-2338-1600)에 연락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어디서 노동 임금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 신청 링크: <https://bit.ly/2JxxYsE>

V 직장 성희롱 대처법

(i) 성별근로평등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성희롱은 크게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피고용인이 직무 수행 시, 누구든지 성(性)적 요구, 성적 의미나 성차별적 언사 또는 행위로적의적, 협박 또는 무례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인격의 존엄성이나 인신의 자유를 침해 또는 간섭하거나 업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고용주가 피고용인 또는 구직자에게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성적 요구를 하거나 성적 의미나 성차별적 언사 또는 행위를 함으로써 용역계약의 성립, 존속, 변경 또는 파견, 배정, 보수, 실적, 승진, 강등, 징벌

등의 교환조건으로 삼는 경우

- (ii) 성별근로평등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성희롱 행위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피고용인이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고용주가 알고 있다면, 즉각 효과적인 시정 및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주가 규정을 위반할 시, NT\$10만~50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희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955,1999 혹은 133에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다.

VI 이주 노동자 구직 시 주의사항

- (i) 외국인 배우자가 구직 시, 아래의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1. 신분증(원본)

또는

- 2. 거류증(원본) 및 혼인 호적자료 원본(예: 호적등본)을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는 거류증 취득 전 취업할 수 없다.

- (ii) 외국인 학생이 구직 시, 아래 3가지 유효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1. 거류증(원본)

- 2. 학생증(원본)

- 3. 근로허가증(원본)

- (iii) 외국인 학생이 취업할 경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주일 최장 20시간이다. 신청한 허가증의 최장 허가기간은 6개월이다.

*고용주는 상기 자료를 직원 명부로 만들것을 권장하며, 공작증 유효기간에 주의해야한다.

VII 이주 노동자 상담 지원

- (i) 이주 노동자 24시간 상담 보호 전화번호: 1955

전국 어디서든 24시간 무료상담전화 '1955번'을 통해 외국어(중국어, 영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

서비스, 법률자문, 신고접수, 법률지원상담,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ii) 타이베이시 노동력재건운용처

타이베이시 노동력재건운용처 외국인근로자검사과는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상담 직원이 상주하면서 긴급사건처리 및 취업 서비스 법 관련 규정 자문을 지원한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1. 대표번호(02)2338-1600

영어: (02)2338-1600 (내선 4113, 4115, 4116)

인니어: (02)2338-1600 (내선 4122, 4124, 4129, 4131, 4132)
(02)2302-6651

베트남어: (02)2338-1600 (내선 4114)
(02)2302-6705

태국어: (02)2338-1600 (내선 4119)

필리핀어: (02)2338-1600 (내선 4120, 4127)
(02)2302-6632

팩스번호: (02)2302-6623

2. 업무시간: 월~금 8:30~17:30

3. 주소: 타이베이시 완화(萬華)구 명자대도(艋舺大道)101호 4F

(iii) ‘대만 국제공항 외국인 근로자 상담서비스’

1. 타오위안공항 이주 근로자 안내센터

전화번호: (03)398-9002

2. 가오슝(高雄)공항 이주 근로자 안내센터

전화번호: (07)803-6804, (07)803-6419

(iv) ‘노동부’ 자문 대표번호:

1. 직접 고용 연합 서비스 센터: (02) 6613-0811

(고용주가 직접 이주 노동자 고용 시 관련 문제는 동 번호로 연락할 것.)

2. 노동부 노동력 발전서: (02) 8995-6000

(이주 근로자 자격 신청 및 공작 허가 관련 문제는 동 번호로 연락할 것.)

제 3 장 사회국

I 유관기관 연락망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타이베이시 사회국	臺北市市府路1號	1999(타지역:02-2720-8889)내선:6947-8
인민단체과	상동	1999(타지역:02-2720-8889)내선:6956-8
사회구조과	상동	1999(타지역:02-2720-8889)내선:1609-13
장애인복지과	상동	1999(타지역:02-2720-8889)내선:2267-8,6963-4
노인복지과	상동	1999(타지역:02-2720-8889)내선:6966 ~ 8
여성복지 및 아동탁육과	상동	1999(타지역:02-2720-8889)내선:6969-71
아동 및 소년 복지과	상동	1999(타지역:02-2720-8889)내선:6972-4
종합기획과	상동	1999(타지역:02-2720-8889)내선:6975-6
사회공작과	상동	1999(타지역:02-2720-8889)내선:1632-4
타이베이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센터	臺北市中正區延平南路123號	2361-5295
타이베이시 장애인 필요평가센터	臺北市中山區長安西路5巷2號3樓	2511-2895
노인 자비양로센터 (유료 노인양로주택)	臺北市文山區興隆路4段109巷30弄6號	2939-3146
평안의 집(무주택 빈곤계층 긴급보호센터)	臺北市大同區歸綏街205號4樓	2552-0501
노숙자수용센터	新北市中和區圓通路143號	2247-3005

II 복지서비스

(i) 인민단체, 기금회, 합작사 설립

1. 인민단체(사회단체 및 직업단체), 기금회, 합작사(협동조합)의 설립 신청 및 지도
2. 지역사회 발전사업 상담 및 지도
담당기관: 타이베이시 인민단체과

(ii) 저소득가구, 중저소득 생활지원 및 복지(타이베이 시 민에 한함)

담당기관: 타이베이시 사회구조과

(iii)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 상담전화: 1999 (타이베이 외 타지역 02-

2720-8889) 내선 2267~8 혹은 6963~4

(iv) 노인 복지서비스

1. 노인 복지서비스 상담: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기관이 송서비스, 문화체육서비스 등
담당기관: 타이베이시 노인복지과
2. 돌봄서비스관리센터 전화번호: (02)2537-1099 또는 장기돌봄서비스 1966

(v) 특수환경가정 복지서비스

신청자격 :

타이베이시 시민과 혼인신고를 했으며 아래 제1항~제7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가구 총소득을 구성원 수로 나눴을 때 1인당 매월 NT\$33,252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가구 총재산이 1인당 NT\$510,150를 초과하지 않고 부동산이 가구당 NT\$6,500,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1인당 1회씩 최대 3개월의 타이베이시 최저생활비를 받게 된다. (2020년 기준, 매달 NT\$17,005)

1.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학대로 인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을 확정했거나 합의이혼 신고를 마친 자
3.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자 (타이베이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센터에 문의)
4. 임신한 미혼여성, 임신 3개월 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 이내인 자
5. 이혼, 배우자 사망, 미혼 자녀로 인해 혼자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은 있으나 중대한 부상/질병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자
6. 배우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처분에 처하고 현재 형 집행 중인 자
7. 기타 본국의 심사결과 3개월 내에 생활에 중대한 변

고가 발생했으나 개인의 책임, 채무, 자발적 실업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자

지원내용: 긴급생활지원, 아동양육보조금, 자녀생활보조금, 자녀교육보조금, 부상/질병의료보조금, 법률소송보조금, 창업대출보조금, 상처검사의료지원, 심리치료보조금

담당기관: 타이베이시 여성복지 및 아동탁육과

(vi) 아동 청소년 복지

1. 양육서비스: 여성복지 및 아동탁육과, 타이베이시 아동탁육자원센터: (02) 2748-6008
2.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구조요청 전화번호: 110, 113
3. 아동발전상담 및 조기 치료교육 서비스: (02) 2756-8852
4. 입양 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아동청소년복지과
타이베이시 입양기관: 재단법인 중화민국 아동복지연맹 문화교육기금회(02-2558-5806), 재단법인 총의사회 복지사업기금회(02-2230-1100), 재단법인 천주교복지회(02-2662-5184), 재단법인 타이베이시기독교구세회 사회복지사업기금회(02-2729-0265), 재단법인 리신사회복지사업기금회(02-2362-6995), 타이베이시 아동 청소년 입양서비스자원센터(02-2311-2528)

(vii) 사회복지업무 전문서비스

갑작스런 변고나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대해 사회복지업무를 통해 의료, 학업, 취업, 양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담당기관: 타이베이시 사회공작과

(viii) 노숙자 서비스

노숙자 수용센터 및 무주택 빈곤계층 긴급보호센터인 ‘평안의 집’ 등 시설 2곳을 설립하여 수용 및 돌봄, 후속조치 마련, 가정재건, 직업재활, 취업알선, 병원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당기관: 타이베이시 사회공작과

Ⅲ 보호 서비스

(i)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폭력이란 4촌 이내 가족 및 16세 이상 현재 또는 과거에 친밀한 관계인 비동거인이 신체, 정신 또는 경제적인 추행, 통제, 협박 또는 기타 불법적인 침해 행위를 가한 것으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동거인 또는 비동거인, 형제, 부모와 자녀간 폭력행위를 포함한다.

2. 가정폭력을 어떻게 발견하나? 어떤 징조들이 있나?

만약 가정에서 아래와 같은 경험이 있었다면 가족간의 친밀한 관계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뜻이며, 본인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학대자들은 자주 충동적이며 반복적으로 분노, 비난 및 위협하는 태도로 가족들과 지낸다. 만약 본인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가하고, 그러한 폭력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밖에도, 가족의 신체에 말하려 하지 않거나 제대로 말할 수 없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상처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발하는 상처가 자주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 위생상태가 나쁘거나, 병이 났는데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등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 가정폭력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로 우리 모두 가정폭력을 막아야 하는 책임과 폭력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10에 신고하거나 113(24시간

국보호전화)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ii) 성폭력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일종의 폭력범죄행위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데이트 상대자라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친밀한 행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2.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1)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다.

(2) 옷을 갈아입거나 훼손시키지 않는다.

(3) 증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샤워, 손씻기, 양치질, 세수 또는 화장실 가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로 알리고, 즉각 110에 신고하거나 113(24시전국보호전화)에 도움을 요청한다.

3.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타이베이시립연합병원의 중샤오(忠孝), 양밍(陽明), 중싱(中興), 런아이(仁愛), 허핑(和平) 여성아동(婦幼)지점 및 완팡(萬芳)병원 등 6개 거점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 간호, 사회복지사가 피해자에게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연합병원 중샤오(忠孝)지점: 타이베이시 난강(南港)구 통더로(同德路)87호 / (02) 2786-1288

* 연합병원 양밍(陽明)지점: 타이베이시 스린(士林)구 위성가(雨聲街)105호 / (02) 2835-3456

* 연합병원 중싱(中興)지점: 타이베이시 다통(大同)구 정저우로(鄭州路)145호 / (02) 2552-3234

* 연합병원 런아이(仁愛)지점: 타이베이시 다안(大安)구 런아이로(仁愛路)4단 10호 / (02) 2709-3600

* 연합병원 허핑(和平)여성아동(婦幼)지점:

여성아동(婦幼)지점: 타이베이시 중정(中正)구 푸저

우가(福州街)12호 / (02) 2391-6470

허핑(和平)지점: 타이베이시 중정(中正)구 중화로(中華路)2단 33호(02) 2388-9595

* 완팡(萬芳)병원: 타이베이시 원산(文山)구 상룡로(興隆路)3단 111호 / (02) 2930-7930

(iii) 타이베이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주나?

1. 24시 구조전화: (02) 2361-5295(내선번호: 6226)
2. 24시 긴급구조, 상처검사 및 증거수집
3. 심리치료, 상담지도, 긴급이송 및 법률지원
4. 가해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심신치료 지원
5.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6. 기타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된 조치 마련

IV 성희롱 예방 및 대처

타이베이시는 성희롱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 또는 구직 시 성희롱을 당했다면 1999(타지역 02-2720-8889)내선: 7023(노동국)에 도움을 청한다. 학생이 교장, 교사, 직원, 직장 동료 또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 1999(타지역 02-2720-8889)내선: 1212(교육국)에 도움을 청한다. 그 밖의 경우 1999(타지역 02-2720-8889)내선: 3365, 4553(사회국)에 문의한다.

V 각 행정구별 사회복지지원센터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중산(中山)사회복지지원센터	臺北市合江街137號3樓	(02)2515-6222 (02)2515-6223
다통(大同)사회복지지원센터	臺北市昌吉街57號6樓	(02)2597-4452 (02)2594-7064
중정(中正)사회복지지원센터	臺北市延平南路207號6樓	(02)2396-2340 (02)2396-2332
완화(萬華)사회복지지원센터	臺北市梧州街36號5樓	(02)2336-5700
다안(大安)사회복지지원센터	臺北市四維路198巷30弄5號2樓之9(成功國宅35棟)	(02)2700-0960 (02)2703-0523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원산(文山)사회복지지원센터	臺北市興隆路2段160號6樓	(02)2932-3587 (02)2932-3591
신이(信義)사회복지지원센터	臺北市松隆路36號5樓	(02)2761-6515 (02)2761-4755
쑹산(松山)사회복지지원센터	臺北市民生東路5段163之1號2樓	(02)2756-5018 (02)2756-4934
네이후(內湖)사회복지지원센터	臺北市星雲街161巷3號4樓	(02)2792-8701
난강(南港)사회복지지원센터	臺北市市民大道8段367號3樓	(02)2783-1407 (02)2783-1287
스린(士林)사회복지지원센터	臺北市基河路140號1樓	(02)2835-0247
베이터우(北投)사회복지지원센터	臺北市新市街30號5樓	(02)2894-2640 (02)2894-5933

VI 여성복지자원 일람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타이베이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센터	臺北市中正區延平南路123號	(02)2361-5295
타이베이시 성희롱예방위원회	臺北市信義區市府路1號	(02)2720-8889 내선 3365、4553
쑹더(松德)여성가정지원센터	臺北市信義區松德路25巷60號1樓	(02)2759-9176
베이터우(北投)여성가정지원센터	臺北市北投區中央北路1段12號6樓	(02)2896-1918
원산(文山)여성가정지원센터	臺北市文山區景後街151號3樓	(02)2935-9595
다안(大安)여성가정지원센터	臺北市大安區延吉街246巷10號5樓	(02)2700-7885
네이이(內湖)여성가정지원센터	臺北市內湖區康樂街110巷16弄20號7樓	(02)2634-9952
다쯔(大直)여성가정지원센터	臺北市中山區大直街1號2樓	(02)2532-1213
완화(萬華)여성가정지원센터	臺北市萬華區東園街19號4樓	(02)2303-0105
중정(中正)부녀 및 가정서비스센터	臺北市中正區延平南路207號4樓	(02)2370-1126
재단법인 천주교선목사회복지사업기금회	臺北市中正區中山北路1段2號11樓100室	(02)2381-5402
재단법인 현대여성기금회	臺北市中正區羅斯福路1段7號7樓之1, B室	(02)2391-7133
재단법인 리신 사회복지사업기금회	新北市新店區順安街2-1號1樓	(02)8911-8595
재단법인 여성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	臺北市士林區忠誠路2段53巷7號8樓	(02)2555-8595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재단법인 타이베이 기독교 여성청년회	臺北市中正區青島西路7號6樓	(02)2381-2131

Ⅶ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기관명	지원대상	주소	주요관할구	전화번호
동구한부모가정 지원센터	한부모가정	臺北市松山區南京東 路5段251巷46弄5號7 樓	松山 南港	(02)2768-5256
서구한부모가정 지원센터	한부모가정	臺北市大同區迪化街 1段21號7樓	大同 士林	(02)2558-0170
쑹더(松德) 여성가정지원센 터	한부모가정	臺北市信義區松德路 25巷60號1樓	信義 南港	(02)2759-9176
베이더우(北投) 여성가정지원센 터	한부모가정	臺北市北投區中央北 路1段12號6樓	北投 士林	(02)2896-1918
내이후(內湖) 여성가정지원센 터	한부모가정	臺北市內湖區康樂街 110巷16弄20號7樓	內湖	(02)2634-9952
다쯔(大直) 여성가정지원센 터	한부모가정	臺北市中山區大直街 1號2樓	中山 士林	(02)2532-1213
다안(大安) 여성가정지원센 터	한부모가정	臺北市大安區延吉街 246巷10號5樓	大安	(02)2700-7885
완화(萬華) 여성가정지원센 터	한부모가정	臺北市萬華區東園街 19號4樓	萬華 中正	(02)2303-0105
원산(文山) 여성가정지원센 터	한부모가정	臺北市文山區景後街 151號3樓	文山	(02)2935-9595
중정(中正) 부녀 및 가정서비스센터	한부모가정	臺北市中正區延平南 路207號4樓	中正	(02)2370-1126

Ⅷ 청소년 미혼모 지원센터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타이베이시 동구소년지원센 터	臺北市松山區敦化北路199巷5號3 樓	(02)2719-1980
타이베이시 서구소년지원센 터	臺北市萬華區東園街19號1樓	(02)2303-0168
타이베이시 남구소년지원센 터	臺北市大安區延吉街246巷10號4 樓	(02)2704-8595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타이베이시 북구소년지원센터	臺北市北投區中央北路1段12號5樓	(02)2897-1567
타이베이시 중산(中山)다통(大同)구 소년지원센터	臺北市大同區延平北路2段242號	(02)2553-9005
타이베이시 난강(南港)신이(信義)구 소년지원센터	臺北市信義區信義路6段12巷21號1樓	(02)2346-8070

IX 여성보호센터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재단법인 천주교선목사회복지기금회	臺北市中山區中山北路1段2號6樓606室	(02)2381-5402
재단법인 리신사회복지사업기금회	新北市新店區順安街2-1號1樓	(02)8911-8595

X 신이민자(다문화가정)지원업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신이민여성가정지원센터	臺北市大同區迪化街1段21號7樓	(02)2558-0133
타이베이시 동구신이민지역 사회돌봄거점기관 (지역:송산(松山), 난강(南港), 네이후(內湖))	臺北市內湖區康寧路3段189巷83弄19號1樓	(02)2631-7059
타이베이시 서구신이민지역 사회돌봄거점기관 (지역:완화(萬華), 중정(中正), 다통(大同))	臺北市中正區延平南路207號4樓	(02)2361-6577
타이베이시 남구신이민지역 사회돌봄거점기관 (지역:원산(文山), 다안(大安), 신이(信義))	臺北市文山區景興路127巷7號	(02)2931-2166
타이베이시 북구신이민지역 사회돌봄거점기관 (지역:스린(士林), 베이더우(北投), 중산(中山))	臺北市中山區長春路232號4樓	(02)2504-0399

XI 각 행정구별 노인지원센터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다통(大同)노인지원센터	臺北市大同區重慶北路3段347號3樓	(02)2594-7064
다안(大安)노인지원센터	臺北市大安區四維路76巷12號1-5樓	(02)2708-6255
송산(松山)노인지원센터	臺北市松山區健康路317號1-2樓	(02)2768-5636
스린(士林)노인지원센터	臺北市士林區忠誠路二段53巷7號5樓	(02)2838-1571
중산(中山)노인주택지원센터	臺北市中山區新生北路二段101巷2號	(02)2542-0006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중정(中正)노인지원센터	臺北市中正區貴陽街1段60號	(02)2381-4571
중정(中正)국민주택 실버지원센터	臺北市萬華區青年路52號1樓之2	(02)2309-0660 2309-2735
내이후(內湖)노인지원센터	臺北市內湖區康樂街110巷16弄20號5樓	(02)2632-5560
원산(文山)노인지원센터	臺北市文山區萬壽路27號6樓	(02)2234-4893
베이더우(北投)노인지원센터	臺北市北投區三合街1段119號	(02)2892-9702
신이(信義)노인지원센터	臺北市信義區松隆路36號4樓	(02)8787-0300
난강(南港)노인지원센터	臺北市南港區重陽路187巷5號1樓	(02)2653-5311
완화(萬華)노인지원센터	臺北市萬華區西寧南路4號A棟3樓	(02)2361-0666
룡산(龍山)노인지원센터	臺北市萬華區梧州街36號3樓	(02)2336-1880 (02)2336-1881

제 4 장 위생국

I 민원서비스 정보

- (i) 주소: 110204 타이베이시 신이(信義)구 스푸로(市府路) 1호 (동남구역 1~3F)
- (ii) 타이베이시 콜센터: 1999(타지역:02-2720-8889)
- (iii) 의료분쟁 상담전화: 02-2728-7080
- (vi) 소비자 상담전화(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관리 상담): 02-2720-8777
- (v) 이주 근로자 건강관리업무 전화: 02-2375-9800(내선: 1959, 1956, 1953)
- (vi) 방역 전화(각종 전염병 신고 및 상담): 02-2375-3782
- (vii) 위생국 정보포털: <https://health.gov.taipei>
위생국 및 건강서비스센터 업무소개, 건강, 방역, 보건, 의료 등 관련 정보 제공
- (viii) 타이베이시 지역사회 심리보건센터:
<https://mental-health.gov.taipei/>
주소: 100010타이베이시 중정(中正)구 금산남로(金山南路) 1단 5호
전화번호: 02-33937885

II 타이베이 시립 관두(關渡)병원

타이베이 룽민종합병원(榮民總醫院)에 위탁 경영
<http://www.gandau.gov.tw/>
주소: (112020)타이베이시 베이더우(北投)구 즈싱로(知行路)225항 12호
전화번호: 02-2858-7000

III 타이베이 시립 완팡(萬芳)병원

재단법인 사립타이베이의학대학에 위탁 경영
<https://www.wanfang.gov.tw/>
주소: 116081 타이베이시 원산(文山)구 싱룽로(興隆路)3단 111호
전화번호: 02-2930-7930

IV 타이베이 시립 렌허(聯合)병원

<https://tpech.gov.taipei/>

전화번호: 02-2555-3000

외국어 상담번호: 1999 (내선: 888)

타이베이 시립 렌허(聯合)병원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중상(中興)지점	103212臺北市大同區鄭州路145號	02-2552-3234
런아이(仁愛)지점	106243臺北市大安區仁愛路4段10號	02-2709-3600
허핑(和平), 여성아동(婦幼)지점	100058臺北市中正區中華路2段33號 (和平)	02-2388-9595 (허핑(和平))
	100027臺北市中正區福州街12號(婦幼)	02-2391-6471 (여성아동(婦幼))
양밍(陽明)지점	111024臺北市士林區雨聲街105號	02-2835-3456
중샤오(忠孝)지점	115006臺北市南港區同德路87號	02-2786-1288
린선(林森), 중의(中 醫), 쿤밍(昆明)지점	104230臺北市中山區林森北路530號 (林森)	02-2591-6681 (린선(林森))
	108203臺北市萬華區昆明街100號(中 醫)	02-2388-7088 (중의(中醫))
	108203臺北市萬華區昆明街100號(昆 明)	02-2370-3739 (쿤밍(昆明))
송덕(松德)지점	110209臺北市信義區松德路309號	02-2726-3141

베트남어/미얀마어 상담가능시간:

- 월~금 9:00~12:00, 13:00~16:00

- 토요일 9:00~12:00

V 12개 행정구 건강지원센터 리스트

<https://health.gov.taipei/cp.aspx?n=43D2F011F36207ED>

구분	주소	전화번호	외국어 상담번호*
	홈페이지		
쑹산 (松山) 구	105212臺北市松山區八德路4段692號6樓	02-2767-1757	현장 상담만 가능* / 외국어 상담번호 없음
	https://www.sshc.gov.taipei/		
신이 (信義) 구	110203臺北市信義區信義路5段15號	02-2723-4598	현장 상담만 가능* / 외국어 상담번호 없음
	https://www.xyhc.gov.taipei/		
다안 (大安) 구	106034臺北市大安區辛亥路3段15號	02-2733-5831	현장 상담만 가능* / 외국어 상담번호 없음 상담가능시간: 화요일 09:00~12:00(일본어) 목요일 09:00~12:00(일본어) 금요일 09:00~12:00(영어) 금요일 13:30~16:30 (스페인어,영어)
	https://www.dahc.gov.taipei/		

구분	주소	전화번호	외국어 상담번호*
	홈페이지		
중산 (中山) 구	104257臺北市中山區松江路367號7樓	02-2501-4616	현장 상담만 가능* / 외국어 상담번호 없음 화요일 09:00~12:00(인니어) 목요일 09:00~12:00(베트남어)
	https://www.zshc.gov.taipei/		
중정 (中正) 구	100055臺北市中正區牯嶺街24號	02-2321-5158	현장 상담만 가능* / 외국어 상담번호 없음 상담가능시간: 화요일 09:00~12:00(베트남어) 격주 화요일 14:00~16:30 (인도네시아어)
	https://www.zzhc.gov.taipei/		
다통 (大同) 구	103038臺北市大同區昌吉街52號	02-2585-3227	현장 상담만 가능* / 외국어 상담번호 없음 상담가능시간: 화요일 13:30~16:30(홀수주는 영어, 짝수주는 인도네시아어 상담원) 금요일 13:30~16:30(베트남어)
	https://www.dthc.gov.taipei/		
완화 (萬華) 구	108240臺北市萬華區東園街152號	02-2303-3092	현장 상담만 가능* / 외국어 상담번호 없음 상담가능시간: 월요일 08:30~11:30(영어) 화요일 13:30~16:30(베트남어)
	https://www.whhc.gov.taipei/		
원산 (文山) 구	116008臺北市文山區木柵路3段220號1樓	02-2234-3501	현장 상담만 가능* / 외국어 상담번호 없음 상담가능시간: 화요일 13:30~16:30(인니어) 수요일 13:30~16:30(베트남어) 금요일 13:30~16:30(일어)
	https://www.wshc.gov.taipei/		
난강 (南港) 구	115203臺北市南港區南港路1段360號7樓	02-2782-5220	현장 상담만 가능* / 외국어 상담번호 없음 상담가능시간: 화요일 13:30~16:30(베트남어) 홀수일 수요일 13:30~16:30(인니어)
	https://www.nghc.gov.taipei/		
네이후 (內湖) 구	114020臺北市內湖區民權東路6段99號2樓之1	02-2791-1162	현장 상담만 가능* / 외국어 상담번호 없음 상담가능시간: 월요일 09:30~11:30(인니어) 월요일 13:30~16:30(베트남어) 화요일 13:30~16:30(영어) 홀수 주 목요일 09:30~11:30, 짝수 주 목요일 13:30~16:30(태국어)
	https://www.nhhc.gov.taipei/		

구분	주소	전화번호	외국어 상담번호*
	홈페이지		
스린 (士林) 구	111013臺北市士林區中正路439號2樓	02-2881-3039	현장 상담만 가능* / 외국어 상담번호 없음 상담가능시간: 화요일 13:30~16:30(인니어,영어) 수요일 13:30~16:30(베트남어)
	https://www.slhc.gov.taipei/		
베이터 우(北 投)구	112063北投區石牌路2段111號3樓	02-2826-1026	현장 상담만 가능* / 외국어 상담번호 없음 상담가능시간: 화요일 13:30~16:30(인니어) 목요일 14:00~17:00(베트남어) 베트남어 서비스지점: 北投門診部- 臺北市北投區新市街30號5 樓 (02-2891-2670)
	https://www.bthc.gov.taipei/		

* 비고: 상기 현장 외국어 상담 서비스 시간은 전염성 폐렴(코로나19)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 필수.

VI 타이베이시 응급책임병원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완팡(萬芳)병원	116081臺北市文山區興隆路3段111號	(02)2930-7930
대만대(臺大)병원	100225臺北市中正區中山南路7號	(02)2312-3456
타이베이 롱민종합병원 (榮民總醫院)	112201臺北市北投區石牌路2段201號	(02)2871-2121
마지에(馬偕)병원	104217臺北市中山區中山北路2段92號	(02)2543-3535
창경(長庚)병원	105406臺北市松山區敦化北路199號	(02)2713-5211
귀타이(國泰)병원	106438臺北市大安區仁愛路4段280號	(02)2708-2121
타이베이의학대학 부속병원	110301臺北市信義區吳興街252號	(02)2737-2181
타이안(臺安)병원	105404臺北市松山區八德路2段424號	(02)2771-8151
산원종합병원(三軍總醫院) 내이후(內湖)	114202臺北市內湖區成功路2段325號	(02)8792-3311
시위안(西園)병원	108035臺北市萬華區西園路2段270號	(02)2307-6968
신광(新光) 우휘스(吳火獅) 기념병원	111045臺北市士林區文昌路95號	(02)2833-2211
산원종합병원(三軍總醫院) 송산(松山)분원	105309臺北市松山區健康路131號	(02)2764-2151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보어런(博仁)병원	105035臺北市松山區光復北路66號	(02)2578-6677
전싱(振興)병원	112401臺北市北投區振興街45號	(02)2826-4400
강녕(康寧)병원	114050臺北市內湖區成功路5段420巷26號	(02)2634-5500
타이베이시립렌허(聯合)병원 중싱(中興)지점	103212臺北市大同區鄭州路145號	(02)2552-3234
타이베이시립렌허(聯合)병원 런아이(仁愛)지점	106243臺北市大安區仁愛路4段10號	(02)2709-3600
타이베이시립렌허(聯合)병원 허핑(和平)지점	100058臺北市中正區中華路2段33號	(02)2388-9595
타이베이시립렌허(聯合)병원 양밍(陽明)지점	111024臺北市士林區雨聲街105號	(02)2835-3456
타이베이시립렌허(聯合)병원 중샤오(忠孝)지점	115006臺北市南港區同德街87號	(02)2786-1288

Ⅶ 지역 심리상담 외래거점병원

외래부	전화번호	주소	위치
신이(信義)구 외래부	02-87804152	臺北市信義區信義路5段15號	각 행정 구별 건강 서비스 센터 1F (구보 건소)
중정(中正)구 외래부	02-23210168 화요일	臺北市中正區牯嶺街24號	
중산(中山)구 외래부	02-25013363	臺北市中山區松江路367號	
다안(大安)구 외래부	02-27390997 화,목,금	臺北市大安區辛亥路3段15號	
송산(松山)구 외래부	02-27653147	臺北市松山區八德路4段692號	
남강(南港)구 외래부	02-27868756	臺北市南港區南港路1段360號	
다통(大同)구 외래부	02-25948971	臺北市大同區昌吉街52號	
내이후(內湖)구 외래부	02-27908387	臺北市內湖區民權東路6段99號	
스린(士林)구 외래부	02-28836268	臺北市士林區中正路439號	
완화(萬華)구 외래부	02-23395384	臺北市萬華區東園街152號	
베이더우(北投)구 외래부	02-28912670내선 9	臺北市北投區新市街30號5樓	
원산(文山)구 정치대학 외래부	02-82377441 02-82377444	臺北市文山區指南路2段117號	
지역사회 심리보건센터	02-33936779내선 10	臺北市中正區金山南路1段5號	

- 주1: 외래시간과 심리상담사는 당일 외래접수대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 주2: 매달 외래시간표는 타이베이시 위생국 심리보건센터 홈페이지(<https://mental-health.gov.taipei/>)→문진표→심리상담 서비스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주3: 현재 베이더우(北投)구 커수린(柯書林), 따통구 심리위생센터(大同區/社區心理衛生中心) 왕춘홍(王淳弘), 신이구(信義區) 차오귀시(曹國璽) 심리상담사만 중국어 및 영어 상담을 제공한다.
- 주4: 지역사회 심리보건센터는 신이민자(다문화가정)를 대상으로 ‘신이민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번호:02-3393-6779 내선번호: 23

Ⅷ 신이민자(다문화가정)건강돌봄서비스

- (i) 우생보건(優生保健) 감면 또는 보조금 지원
1. 타이베이시 출산육아지원방안
 - (1) 결혼 후 산전검사 보조금: 여성 NT\$1,595/남성 NT\$655
 - (2) 임신부 다운증후군 선별검사 보조금 (택1)

초기 다운증후군 선별검사: 배우자 호적지 타이베이에 등록된 9~13주 신이민 임부 NT\$2,200지원 (검사비)

중기 다운증후군 선별검사: 배우자 호적지 타이베이에 등록된 15~20주 신이민 임부NT\$1,000 지원 (검사비)
 2. 산전 유전진단검사 보조금: 검사비 NT\$5,000지원
 3. ‘호적등록 전 건강보험 미가입 신이민자 산전검사비용’ 보조금 지급: 태아 1명당 10회 지급,보조금은 위생복지부 국민건강서의 보조금 기준을 따른다.
 4. 만 35주~38주 미만 임부 GBS(B군 연쇄상구균)선별검사 보조금: 건당 NT\$500지원
- (ii) 12개 행정구에 위치한 건강지원센터내 신이민자 지역보건상담소에서 보건의료 통역서비스 제공

- (iii) 신이민자 지원 단체활동 진행
- (iv) 신혼 및 산후 신이민가정(다문화가정)에게 전화 또는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 (v) 외국어 위생보건 교육자료 제작
- (vi) 신이민자 돌봄포털 (<http://health.gov.taipei/>)개설
- (vii) 타이베이시는 0~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타이베이시 아동발달 선별검사표’를 본국 사이트 (<https://health.gov.taipei/兒童及青少年保健/兒童發展檢核資料下載>)를 통해 제공한다. 사이트를 통해 중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등 다국어로 된 아동 발달 선별검사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제 5 장 교육국

I <외국인학생 대만 취학 판법>

2017년 9월 8일 개정

제1조

본 판법은 <대학법> 제25조 제3항, <전문대학교법> 제32조 제1항, <고급중등교육법> 제41조 제1항 및 <국민교육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정하였다.

제2조

외국 국적자로 중화민국 국적을 소지한 적이 없으며 신청 당시 화교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본 판법 규정에 따라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 국적자로 아래 규정에 적합하며 신청 당시 해외에 6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도 본 판법 규정에 따라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대학의 의학, 치의학, 또는 중의학과에 진학을 원할 경우 그 연속 거주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 a. 신청 당시 중화민국 국적도 소지한 자로 처음부터 대만에 호적을 등록한 적이 없어야 함.
- b. 신청 전에는 중화민국 국적도 소지하였으나 신청 당시 중화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는 자로 내정부가 중화민국 국적 상실을 허가한 날로부터 신청 시까지 만 8년이 되어야 함.
- c. 전2호 모두 화교 신분으로 대만에서 취학한 적이 없으며 당해 학년도에 해외합동입학모집위원회로부터 배정 받지 않았음.

교육협력에 관한 협의에 따라 외국정부, 기관 또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 대만에 취학하러 온 외국 국민으로 처음부터 대만에 호적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자는 주무 교육행정기관의 승인에 의해 제1, 2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2항에서 규정한 6년과 8년은 입학예정 당해 학기 시작일(2월 1일 또는 8월 1일)을 종료일로 계산한다.

제2항에서 말하는 해외란, 중국지역, 홍콩 및 마카오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이다. 연속거주란, 외국인 학생이 1역년(曆年)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20일을 넘지 않는 것이다. 해외연속거주 집계기간의 시작 및 종료 연도가 완전한 역년이 아닌 경우, 각 당해 연도의 집계기간내 국내 체류기간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정된다. 단,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체류기간을 해외거주기간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 a. 교무(僑務, 화교업무) 주무기관이 주최한 해외청년기술교육과정 또는 교육부(이하 “본부”)가 인정한 기술교육과정에 참석한 자
- b. 본부의 승인을 거쳐 외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대학 및 2년제 전문대의 외국어센터에서 재학기간 합계 2년 미만인 자
- c. 교환학생으로 교환기간 합계 2년 미만인 자
- d.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 허가를 받아 대만에서 실습기간 합계 2년 미만인 자

외국 국적과 중화민국 국적을 모두 소지하고 본 판법이 2011년 2월 1일 개정 시행되기 전 이미 중화민국 국적 상실을 신청한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입학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2항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3조

외국 국적과 홍콩 또는 마카오 영구거류증을 소지하고 대만에 호적을 등록한 적이 없으며, 신청 당시 홍콩, 마카오 또는 해외에 연속 만 6년 이상 거주한 자는 본 판법 규정에 따라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대학의 의학, 치의학, 또는 중의학과에 진학을 원할 경우 그 연속 거주기한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연속거주란, 1역년(曆年)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20일을 넘지 않는 것이다. 단, 전조 제5항 a~d호 중 하나에 해당되고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체류기간을 전항 연속거주기간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중국 국민이었으나 현재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대만에 호적을 등록한 적이 없으며 신청 당시 해외에 연속 6년 이상 거주한 자는 본 판법 규정에 따라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대학의 의학, 치의학, 또는 중의학과에 진학을 원할 경우 그 연속 거주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연속거주란, 1역년(曆年)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20일을 넘지 않는 것이다. 단, 전조 제5항 a~d호 중 하나에 해당되고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체류기간을 해외연속거주기간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6년과 8년은 입학예정 당해 학기 시작일(2월 1일 또는 8월 1일)을 종료일로 계산한다.

제1~4항에서 규정한 해외는 전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외국인 학생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대만 학교 진학을 신청하는 것을 1회로 제한한다. 학교 진학 이후, 석사반 이상 과정 신청은 각 학교 규정에 따라 진행하지만, 계속 대만에서 재학을 원할 경우 입학방식은 대만 국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다.

제5조

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 5년제 전문대학,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모집 시, 모집인원은 각 교육행정 주무기관에서 확정된 학교별 당해 학년도 모집인원 외 추가 10%로 한정하며 당해 학년도 모집인

원수에 추가한 총인원수를 각 교육행정 주무기관에 보고한 후 확정 받아야 한다. 단, 대만 국내대학과 외국 대학간 협력사업으로 본부로부터 확정 받은 학위 과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학 및 2년제전문대학의 당해 학년도 확정 총 모집인원수 중, 자국 학생 모집인원이 부족한 경우 외국인 학생으로 채울 수 있다.

제1항의 모집인원에는 정식으로 학적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대학 및 2년제전문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을 모집할 시, 공개모집규정을 제정하여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학생 모집요강을 제작하여 모집학과, 재학기한, 모집인원, 신청자격, 선발방식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제7조

대학 및 2년제전문대학에 입학신청한 외국인학생은 학교별로 지정한 기한내에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또는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후, 입학허가를 받는다.

- a. 입학신청서
- b. 학력증명서:
 - (a) 중국지역 학력: <대륙지역 학력인증판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 (b) 홍콩/마카오 학력: <홍콩 마카오 학력 검증 및 인증판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 (c) 기타지역 학력:
 - 1. 해외 대만학교 및 중국지역 대만학교의 학력은 대만 동급학교 학력과 동일하다.
 - 2. 전2목이외 해외지역의 학력은 대학별 해외학력인증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단, 중국지역에 설립한 외국학교 본교 또는 분교의 학력은 대륙지

역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행정원이 설립했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위탁한 민간단체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c. 대만에서 재학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재정증명 또는 정부, 대학 및 2년제전문대학 또는 민간조직에서 전액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증명서
- d. 기타 입학신청한 학교가 규정한 서류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신청을 심사할 때, 전항 제2~4호의 대만 재외공관, 대표처, 판사처 또는 기타 외교부의 위탁기관(이하 재외기관), 행정원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 또는 위탁 받은 민간단체를 통해 검증 받지 않은 서류에 의문이 생길 시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검증을 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1조

외국인학생이 제출한 입학증명서류에 위조, 도용, 변조 등이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미 입학등록을 마친 경우, 학적을 취소하고 학업 관련 증서를 일체 발급하지 않는다. 졸업생일 경우, 학교측이 졸업자격을 취소하고 학위증을 말소한다.

제8조

외국인학생이 대만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마치고 계속해서 석사 이상 과정에 입학신청을 할 경우, 졸업증과 성적표를 갖고 전조 규정에 따라 입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제약은 받지 않는다.

외국인학생이 대만에서 외국인 교민학교나 고등학교 부속 외국어부(반) 또는 사립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외국과정부(반)의 졸업생일 경우, 해당 학교의 졸업증과 성적표를 갖고 전항 규정에 따라 입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조 및 전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제약은 받지 않는다.

제9조

외국인학생을 모집하는 대학 및 2년제전문대학은 즉각 본부가 지정한 외국인학생 자료관리정보시스템에 외국인학생의 입학, 편입, 휴학, 퇴학 또는 학생신분 변경, 상실 등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학생은 대만의 대학 및 2년제전문대학에서 개설한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 학사과정, 직장인석사과정 및 기타 야간이나 휴일에만 수업하는 과정은 신청할 수 없다. 단, 외국인학생이 대만에서 이미 합법적인 거류자격을 가졌거나 해당 과정이 본부의 승인을 득한 과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 5년제 전문대학,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외국인학생이 입학 등록 시, 당해 학년도 1학기 수업기간의 삼분의 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당해 학기에 입학한다. 당해 학년도 1학기 수업기간의 삼분의 일을 초과한 경우 2학기 또는 다음 학년도에 입학한다. 단, 각 교육행정 주무기관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제12조

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의 외국인학생이 대만 대학에서 졸업한 후 학교의 신청을 거쳐 본부의 허가를 받아 대만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학생의 체류자격은 졸업 1년 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학생이 대만에서 진학한 후, 재학기간 동안 대만 호적 최초등록, 호적 이전 및 등록, 귀화 또는 중화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외국인학생의 자격이 상실되어 퇴학을 해야 한다.

외국인학생이 입학한 학교에서 품행불량, 성적미달 또는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어 퇴학을 당했을 경우, 본 판법에 따라 다시 입학 신청을 할 수 없다.

외국인학생의 편입과 관련하여, 각 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입학모집규정에 포함시킨 후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국인학생이 입학한 학교에서 품행불량, 성적미달 또는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어 퇴학을 당했을 경우, 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 편입할 수 없다.

제13조

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은 수업의 정상적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 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교환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학생 입학규정을 준용하여 외국인을 청강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각 교육행정 주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1년 이하의 단기연수할 외국인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제14조

각급 학교가 국제학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또는 기타 특수목적으로 외국인학생 전문과정을 개설할 경우, 학교의 발전규모와 제반여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교육행정 주무기관을 통해 본부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본부는 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학생 장학금을 조성하거나 장학금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은 외국인학생의 대만 유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인학생 장학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할 수 있다.

제16조

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은 외국인학생의 입학신청, 지도, 연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직원을 지정하고, 대만에 대한 외국인 학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홈스테이를 마련해주고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학 및 2년제전문대학은 매학년 비정기적으로 외국인 학생 지도활동이나 캠퍼스 국제화 촉진활동 등 자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을 개최해야 한다.

제17조

5년제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모집할 때,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만에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학생의 입학 신청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 학생 모집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 전까지 해당 교육행정 주무기관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 직할시, 현(시)교육행정 주무기관은 매년 12월 31일 전까지 승인을 한 학교 명단을 본부에 송부해야 한다.

전항의 계획에 외국인 학생 전담부서 설치, 중국어 및 문화 교육과정 계획, 외국인 학생 숙박시설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학교가 모집하는 외국인 학생의 나라와 모집인원은 필요시 본부가 내정부 및 외교부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입학할 외국인 학생은 제20조의 별도 규정 외에 학교별 지정기간 내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또는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후, 입학허가를 받는다.

a. 입학신청서

b. 학력증명서:

(a) 중국지역 학력: <대륙지역 학력인증판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b) 홍콩/마카오 학력: 〈홍콩 마카오 학력 검증 및 인증판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c) 기타지역 학력:

1. 해외 대만학교 및 중국지역 대만학교의 학력은 대만 동급학교 학력과 동일하다.

2. 전2목이외 해외지역의 학력은 본부의 해외학력인증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지역에 설립한 외국학교 본교 또는 분교의 학력은 대륙지역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행정원이 설립했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위탁한 민간단체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c. 대만에서 재학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재정증명

d. 대만 후견인 자격증명

e.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부모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이 대만 후견인에게 위탁한다는 위임장

f. 대만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대만 후견인의 동의서

g. 기타 입학신청한 학교가 규정한 서류

전항 제2호의 학력증명서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입학 신청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신청을 심사할 때,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재외기관 또는 행정원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 또는 위탁 받은 민간단체를 통해 검증 받지 않은 서류에 의문이 생길 시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검증을 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

전조에서 말하는 ‘대만 후견인’은 대만에 호적이 등록된 중화민국 국민으로 경찰기관에서 발급한 무범죄기록증명 및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최신년도 개인 각종 소득총액이 NT\$90만이상인 자료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전항 규정에 적합할 경우, 대만 후견인 1명당 외국인 학생 1명을 맡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0조

대만에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한 외국인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신청을 해야 한다. 선발시험을 통해 입학한 후에는 해당 교육행정기관 주무기관에 리스트를 송부한다.

- a. 입학신청서
- b. 합법적인 거류증 사본
- c. 학력증명서:
 - (a) 중국지역 학력:<대륙지역 학력인증판법>규정을 따라야 한다.
 - (b) 홍콩/마카오 학력:<홍콩 마카오 학력 검증 및 인증판법>규정을 따라야 한다.
 - (c) 기타지역 학력:
 - 1. 해외 대만학교 및 중국지역 대만학교의 학력은 대만 동급학교 학력과 동일하다.
 - 2. 전2목이외 해외지역의 학력은 본부의 해외학력인증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지역에 설립한 외국학교 본교 또는 분교의 학력은 대륙지역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행정원이 설립했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위탁한 민간단체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전항 제3호의 학력증명서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입학 신청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각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신청을 심사할 때, 제1항 제3호의 재외기관 또는 행정원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 또는 위탁한 민간단체를 통해 검증 받지 않은 서류에 의문이 생길 시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검증을 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외국인학생이 신청한 학교가 인원마감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될 경우, 인원이 남는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교육행정 주무기관에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제1항의 입학 신청 학생의 면접성적을 토대로 적절한 학년에 배정하거나 선택수강으로 안배할 수 있다. 선택수강은 1년만 가능하며 시험에 합격해야만 학적으로 인정된다.

제20-1조

외국인학생의 나라에 전쟁, 중대한 재해 또는 중대한 전염병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대만 재외기관 또는 대만 주재 자국 공관 또는 위탁기관에서 관련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중앙 교육행정 주무기관이 외교부, 내정부 출입국 이민서 등 유관 기관과 협의 후 입학할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특수사안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전항의 특수사안으로 인원추가로 모집하는 경우, 각 학교의 당해 학제 총 모집인원에서 1%를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외국인학생이 입학 시 납부해야 할 비용은 아래 규정을 따른다.

- a. 전2조 규정에 따라 입학한 자, 재외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만에 진학하는 외교부 대만 장학금 장학생 및 대만 영주권 소지자는 입학할 학교에서 정한 자국학생 납부비용 기준을 따른다.
- b. 교육협력협약에 따라 입학한 자는 협의 규정을 따른다.
- c. 전2호 이외의 외국인학생은 입학할 학교에서 정한 외국인학생 납부비용 기준을 따르며 동급의 사립학교 납부비용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본 판법이 2011년 2월 1일에 개정되기 전에 이미 입학한 학생의 경우, 각 과정 단계별 납부비용은 기존 규

정을 따른다.

제22조

외국인학생이 등록할 때, 신입생은 입국 당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유효한 기납부한 의료상해보험을 제출해야 하며, 재학생은 대만 국민건강보험 등 관련 보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항 보험증명이 해외에서 발급된 경우, 재외기관에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외국인학생이 취업서비스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교 또는 유관 주무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외국인학생에게 휴학, 퇴학 또는 학생신분 변경 및 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외교부 영사사무국과 학교 소재지의 내정부 출입국이민서의 각 안내소에 통보해야 하며 동시에 본부에도 알려야 한다.

제25조

교육행정 주무기관은 필요시 외국인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학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할 시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학교가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해당 교육행정 주무기관은 상황에 따라 외국인 학생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외국인학생이 대만의 대학및 2년제 전문대학 부속 중국어센터에서 언어 연수를 하는 경우, 신청절차, 장학금, 관리 및 지도, 결석시수가 해당 학기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 이상 초과, 학생신분의 변경 또는 상실에 대한 통보는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제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문서서식은 각 학교에서 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문서서식은 본부에서 정한다.

제28조

본 판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판법 중 2012년 12월 24일에 개정된 조문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판법 중 2013년 8월 23일에 개정 반포된 조문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판법 중 2014년 6월 23일 및 2014년 12월 18일에 개정 반포된 조문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Ⅱ < 타이베이시 국제교류촉진보조금 외국인

중국어 연수 요점

2003년 3월 20일 타이베이시정부(92)부교일자 제09201717100호 수정

- (i) 타이베이시는 도시외교 발전과 타이베이시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타이베이시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길 희망한다. 이에 대해 평등호혜의 원칙을 따라 본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ii) 외국인이 타이베이시 국제교류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교육부의 ‘외국인학생 대만 유학 판법’ 및 관련 법령 규정 외에 본 요점에 따라 진행한다.
- (iii) 본 요점에서 말하는 외국인이란, 화교 신분이 아니며 중화민국 국적(이하 본국)또한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 (iv) 본 보조금 경비는 타이베이시 또는 관련 민간단체, 기금회, 기업에서 지급하며, 수여 명수는 경비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10명을 잠정 원칙으로 삼는다.

- (v) 본 보조금은 1인당 매월 NT\$25,000로 6개월 지급이 원칙이며 1인당 수여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 (vi) 본 보조금 신청 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1. 타이베이시 자매도시 시민 또는 학생으로 타이베이시에서 중국어 연수를 받길 원하며 본국의 다른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타이베이시 자매도시의 시민 또는 학생으로 타이베이시 소재 대학의 부속 중국어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며 본국의 다른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vii) 본 보조금 신청 시, 타이베이시 자매도시 시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도시에서 2인 이상을 추천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viii) 본 보조금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보조금은 위탁 받은 타이베이시 소재 대학의 부속 중국어교육기관에서 접수신청을 받으며 타이베이시와 각 중국어교육기관은 공개접수 시작 전 관련 규정을 공지해야 한다.
 2. 본 보조금은 타이베이시 교육국에서 구성한 심사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3. 위탁을 받은 중국어교육기관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타이베이시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단체, 기금회, 기업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처리 완료 후 보조금 수여 학생의 수령대장과 잔액을 타이베이시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단체, 기금회, 기업에 송부하여 정산한다.
 4. 보조금 수여 학생은 학생평안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5.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일 국적의 보조금 수여 학생 수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 (ix) 보조금의 취소 또는 지급정지
 1. 보조금 수여 학생이 수여기간 동안 매월 결석(휴가 포함)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했거나 성적이 80점 이하

일 경우, 당월 또는 다음학기의 보조금 수여자격을 취소한다.

2. 위탁을 받은 중국어교육기관이 상기 상황이나 학칙 위반의 이유로 본 보조금 지급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지급 취소 또는 정지 이후, 타이베이시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단체, 기금회, 기업에 통보하고 타이베이시 교육국에도 알려야 한다.
- (x) 보조금 수여 학생은 매주 수강시간이 최소 1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1대1수업 수강으로 단체수업보다 추가된 학비는 자비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수여기간 동안 반드시 재학 중이어야 한다.
- (xi) 본 보조금 신청자는 본 보조금 지급 확정 후 이를 연기 또는 유보시킬 수 없다. 보조금수여 학생은 본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단체, 기금회, 기업 및 타이베이시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Q&A〉

Q: 본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

A:(1) 타이베이시 자매도시의 시민 또는 학생으로 타이베이시에서 중국어 연수를 받길 원하며 본국의 다른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타이베이시 자매도시의 시민 또는 학생으로 타이베이시 소재 대학의 부속 중국어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며 본국의 다른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Q: 시장 추천서는 일정한 양식이 있나?

A: 시장 추천서는 일정한 양식이 없으나, 만약 귀사에서 2명 이상 추천 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Q: 매년 보조금 수여자는 몇 명인가?

A: 매년 본 보조금 수여자수는 10명이다.

Q: 본 보조금의 금액은 얼마인가?

A: 1인당 매월 NT\$25,000으로 6개월 지급이 원칙이며 1인당 수여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Q: 보조금 수령 후 재학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A: 보조금 수령 후, 타이베이시 보조금 요점에 나와있는 중국어교육기관에서 재학 신청을 하면 된다.

〈중국어교육기관〉

1. 국립대만사범대학 중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 www.mtc.ntnu.edu.tw/

주소: 타이베이시 허핑동로(和平東路) 1단 162호

전화: 886-2-7734-5130

팩스: 886-2-2341-8431

E-mail: mtc@mtc.ntnu.edu.tw

2. 국립대만대학 문과대 어문학센터

홈페이지: <http://ntulcoffice.liberal.ntu.edu.tw/>

주소: 10663타이베이시 신하이로(辛亥路) 2단 170호

전화: 886-2-3366-3419

팩스: 886-2-2362-6926

E-mail: ntulcoffice@ntu.edu.tw

3. 국립정치대학 중국어문학교육센터

홈페이지: mandarin.nccu.edu.tw/

주소: 타이베이시 원산(文山)구 즌난로(指南路) 2단 64호

전화: 886-2-29387141

팩스: 886-2-29396353

E-mail: mandarin@nccu.edu.tw

Ⅲ <교육 관련 질의 해석>

Q: 외국인학생이 타이베이시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되나? 어떤 규정이 있나?

A:

- (i) 외국인학생이 타이베이시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을 원할 경우, 여권, 외국인거류증 및 성적표를 갖고 거류주소지 학군의 공립초등학교에 신청하면 입학할 수 있다.
- (ii) 입학을 신청한 초등학교가 인원이 마감될 경우, 인원이 마감되지 않은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 (iii) 외국인 학생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기를 원한다면 여권, 거류증 및 성적증명서를 지참하여 원하는 사립학교에 신청하면 입학이 가능하다. 학생 정원수가 다 찼다면 먼저 후보 명단에 등록하고 다음 학기 결원이 발생하면 입학통지를 받을 수 있다.

Q: 외국인학생이 타이베이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해도 되나? 어떤 규정이 있나?

A:

- (i) 외국인학생이 타이베이시 소재 중학교에 입학을 원할 경우, 여권, 외국인거류증 및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외국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모든 학기의 성적표를 갖고 주소지 학군의 중학교에 신청하면 입학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입학을 원할 경우, 지룽·타이베이지역(基北區) 고등학교 시험면제 입학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편입시험을 통해 입학할 수 있으며 또는 <외국인학생 대만취학판법>에 따라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 (ii) 입학을 신청한 중학교가 인원이 마감될 경우, 인원이 마감되지 않은 인근의 다른 중학교를 신청해야 한다.
- (iii) 상기 신청방식은 1회만 적용되며, 외국인학생이 신청 완료하여 입학한 후 계속 진학을 원할 경우, 입학방식

은 대만 자국학생과 동일하다.

Q: 외국인 학생이 타이베이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시, 학비 납부에 관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나?

A: 대만 자국학생과 모두 동일하다.

Q: 외국인 학생이 타이베이시 공립유치원에 입학해도 되나? 어떤 규정이 있나?

A: 타이베이시 공립유치원의 모집대상은 타이베이시에 호적을 등록했거나 거류 중인 외국인, 화교(여권 및 거류증 원본 제시, 학군구분은 거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로서 2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원아에 한한다. 모집방법은 '신청등록'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학년도 모집요강에서 공고한 모집등록일에 맞춰 해당 유치원에서 진행하면 된다.

IV 외국인학교 리스트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타이베이 미국인학교 (교육부 관할)	臺北市中山北路6段800號	(02)2873-9900
타이베이 한국인학교	臺北市青年路68巷1號	(02)2303-9126
타이베이시 사립 Dominican국제학교	臺北市大直街76號	(02)2533-8451
타이베이 베다니(Bethany) 미국인학교	新北市林口區東湖路1號	(02)2602-6502
타이베이시 일본인학교	臺北市中山北路6段785號	(02)2872-3801
타이베이 유럽학교 (중등부)	臺北市建業路31號	(02)8145-9007
타이베이 유럽학교 (초등부)	臺北市福國路99號	(02)8145-9007
타이베이 Adventist 미국인학교	臺北市士林區莊頂路80巷64號	(02)2861-6400
타이베이 Grace Christian Academy	臺北市南港區東新街67號	(02)2785-7233

V 산하기관 리스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타이베이시 교육국	臺北市信義區市府路1號8樓	(02)2720-8889
타이베이시립도서관	臺北市大安區建國南路2段125號	(02)2755-2823
타이베이시립동물원	臺北市文山區新光路2段30號	(02)2938-2300
타이베이시립어린이놀이공원	臺北市士林區承德路5段55號	(02)2833-3823
타이베이시립천문과학교육관	臺北市士林區基河路363號	(02)2831-4551
타이베이시가정교육센터	臺北市中山區吉林路110號5樓	(02)2541-9690
타이베이시청소년발전처	臺北市中正區仁愛路1段17號	(02)2351-4078

제 6 장 민정국

I 자주하는 질문

i. 질문: 외국국적 남성과 대만 국적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한 자녀는 대만에서 호적 신고를 어떻게 하나?

답변: (i) 2000년 2월 9일 <국적법>이 개정 공표된 후, 자국 여성과 외국 국적 남성간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대만에서 출생한 자녀는 호적등록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법>개정 공표 당시의 미성년자, 즉 1980년 2월 10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내정부 이민서에서 정거증(定居證)을 신청하고 최초호적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그 자녀의 중문 성씨는 대만 민법 제1059조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대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어야 한다. 그 출생순서는 일반혼인의 경우 부계를 따르며 아버지가 외국인이어도 마찬가지이다.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 내용에 따라, 해외에 이미 자녀가 신청되어 있을 경우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서류(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득한 중문 번역본)를 제출해야 한다.

(ii)신청절차

1. 대만 국내 출생자

-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청인으로, 호적등록을 희망하는 지역의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한다.
- (2)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 위임장(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을 제출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해야 한다.

2. 해외 출생자

- (1) 20세 미만이며 대만 여권, 입국증 사본 또는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는 내정부 이민서에서 정거

증(定居證)을 신청하고 최초 호적등록을 진행한다.

- (2) 20세 이상은 <출입국 및 이민법>과 동법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 장기거류를 신청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정거증(定居證)을 취득한 후 최초 호적등록을 진행한다.
- (3) 본인 또는 호주가 신청인이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이다.

(iii)구비서류

1. 대만 국내 출생자

- (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또는 서명)
- (2) 호적등록 희망지역의 호구명부(戶口名簿)
- (3) 출생증명서 원본 (자녀의 성씨계승약정서 첨부)

2. 해외 출생자

- (1) 정거증 원본 (사진 1매)
-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또는 서명)
- (3) 호적등록 희망지역의 호구명부
- (4) 호주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ii. 질문: 외국 국적 남성과 대만 국적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자녀는 대만에서 호적 신고를 어떻게 하나? 생부는 어떻게 입양신청을 진행하나?

답변: (i)호적신고 방법

1. 신청절차

- (1) 대만 국내 출생자
 - a. 생모가 신청인이 되며 호적등록 희망지역 호정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한다.
 - b.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 위임장을 제출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해야 한다.
- (2) 해외 출생자
 - a. 20세 미만이며 대만 여권, 입국증 사본 또는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는 내정부 이민서에서 정거증(定居證)을 신청하고 최초 호적등록을 진행한

다.

- b. 20세 이상은 <출입국 및 이민법>과 동법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 장기거류를 신청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정거증(定居證)을 취득한 후 최초 호적등록을 진행한다.
- c. 본인 또는 호주가 신청인이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이다.

2. 구비서류

(1) 대만 국내 출생자

- a.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또는 서명)
- b. 호적등록 희망지역의 호구명부
- c. 출생증명서 원본

(2) 해외 출생자

- a. 정거증 원본 (사진 1매)
- b. 호적등록 희망지역의 호구명부
- c.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또는 서명)

(ii) 입양신청 방법

1. 신청절차

- (1) 입양자가 신청인이며 소재지 상관없이 아무 호정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 (2)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 위임장(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을 제출하여 호정사무소에서 승인을 받고 처리해야 한다.
- (3) 생부의 중국어 성씨는 대만 국민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씨에 적합해야 하며, 입양신청을 진행할 때 부계 성씨로 변경할지 아니면 모계 성씨를 유지할지 정할 수 있다.

2. 구비서류

- (1) 서면입양서류 (대만 법률에 부합하고 입양의 성립이 유효한 서류)
- (2)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 (또는 서명)

- (3) 피입양인의 호구명부, 국민신분증 (미 취득시 해당사항 없음)
- (4) 자녀의 성씨계승약정서
- (5) 미성년 자녀 권리의무행사부담약정서

iii. 질문: 대만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한 자녀는 대만에서 호적 신고를 어떻게 하나?

답변: (i)신청절차

1. 대만 국내 출생자

-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청인으로, 호적등록을 희망하는 지역의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한다.
- (2)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 위임장(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을 제출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해야 한다.

2. 해외 출생자

- (1) 20세 미만이며 대만 여권, 입국증 사본 또는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는 내정부 이민서에서 정거증(定居證)을 신청하고 최초 호적등록을 진행한다.
- (2) 20세 이상은 <출입국 및 이민법>과 동법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 장기거류를 신청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정거증(定居證)을 취득한 후 최초 호적등록을 진행한다.
- (3) 본인 또는 호주가 신청인이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이다.

(ii) 구비서류

1. 대만 국내 출생자

- (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또는 서명)
- (2) 호적등록 희망지역의 호구명부
- (3) 출생증명서 원본 (자녀의 성씨계승약정서 첨부)

2. 해외 출생자

- (1) 정거증 원본 (사진 1매)

-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또는 서명)
- (3) 호적등록 희망지역의 호구명부
- (4) 호주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iv. 질문: 대만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자녀는 대만에서 호적 신고를 어떻게 하나? 생부는 어떻게 입양신청을 진행하나?

답변: 대만 국적의 생부가 입양하지 않은 비혼 자녀는 외국 국적자임으로 대만에서 호적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000년 2월 9일 <국적법>개정 공표 당시 이미 출생하였고 생부가 입양한 미성년자는 대만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출입국 및 이민법>과 동법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i. 입양신청 방법

(i) 신청절차

1. 입양자가 신청인이며 소재지 상관없이 아무 호정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2.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 위임장(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을 제출하여 호정사무소에서 승인을 받고 처리해야 한다.

(ii) 구비서류

1. 서면입양서류 (대만 법률에 부합하고 입양의 성립이 유효한 서류)
2. 피입양인의 출생증명서(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
3.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또는 서명)
4. 생모의 혼인상태증명서 원본 및 중문 번역본(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함)
5. 자녀의 성씨계승약정서
6. 미성년 자녀 권리의무행사부담약정서

ii. 입양 후 호적신고 방법

(i) 신청절차

1. 대만 국내 출생자

- (1) 부, 모, 조부, 조모, 호주, 동거인 또는 부양인이 신청인이며 호적등록 희망지역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한다.
- (2)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 위임장(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을 제출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해야 한다.

2. 해외 출생자

- (1) 20세 미만이며 대만 여권, 입국증 사본 또는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는 내정부 이민서에서 정거증(定居證)을 신청하고 최초 호적등록을 진행한다.
- (2) 20세 이상은 <출입국 및 이민법>과 동법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 장기거류를 신청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정거증(定居證)을 취득한 후 최초 호적등록을 진행한다.
- (3) 본인 또는 호주가 신청인이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이다.

(ii) 구비서류

1. 대만 국내 출생자

- (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또는 서명)
- (2) 호적등록 희망지역의 호구명부
- (3) 출생증명서 원본 (자녀의 성씨계승약정서 첨부)

2. 해외 출생자

- (1) 정거증 원본 (사진 1매)
-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또는 서명)
- (3) 호적등록 희망지역의 호구명부
- (4) 호주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v. 질문: 외국인이 대만인을 입양할 때 입양 등록을 어떻게 하나?

답변: (i)신청절차

1. 당사자가 대만 법원에 입양 허가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2. 입양인 또는 피입양인이 신청인이며 소재지 상관없이 아무 호정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3.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 위임장(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을 제출해야 한다.
4. 입양인의 중국어 성씨는 대만 국민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씨에 적합해야 한다. 피입양 자녀는 입양인의 성씨를 계승하거나 기존의 성씨를 유지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입양할 경우, 입양등록 전 피입양 자녀가 부계성씨 또는 모계성씨를 계승할지 기존의 성씨를 유지할 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ii)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또는 서명)
2. 피입양인의 호구명부, 국민신분증 (미취득자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취득자는 교체진행)
3. 법원결정서 및 결정확정증명서
4. 성씨계승약정서

vi. 질문: 대만인이 외국인을 입양할 때 입양 등록을 어떻게 하나?

답변: (i)신청절차

1. 당사자가 대만 법원에 입양 허가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2. 입양인 또는 피입양인이 신청인이며 소재지 상관없이 아무 호정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3.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 위임장(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을 제출해야 한다.
4. 피입양 자녀는 입양인의 성씨를 계승하거나 기존의 성씨를 유지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입양할 경우, 입양등록 전 피입양 자녀가 부계성씨 또는 모계성씨를

계승할지 기존의 성씨를 유지할 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ii)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또는 서명)
2. 입양인의 호구명부
3. 법원결정서 및 결정확정증명서
4. 성씨계승약정서

vii. 질문: 외국 국적의 양부모와 대만 국적의 양자녀가 입양관계를 종료할 시, 입양 종료 신청을 어떻게 진행하나?

답변: (i)신청절차

1. 입양인 또는 피입양인이 신청인이며 소재지 상관없이 아무 호정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2.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 위임장(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을 제출하여 호정사무소에서 승인을 받고 처리해야 한다.
3. 양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원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4. 양자녀의 원래 성씨로 회복한다.

(ii)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또는 서명)
2. 양자녀의 호구명부, 국민신분증 (미취득자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취득자는 교체진행)
3. 대만 및 외국 법률에 맞는 입양종료 성립이 유효한 서류 (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

viii. 질문: 대만 국적의 양부모와 외국 국적의 양자녀가 입양관계를 종료할 시, 입양 종료 신청을 어떻게 진행하나?

답변: (i)신청절차

1. 입양인 또는 피입양인이 신청인이며 소재지 상관없이 아무 호정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2.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 위임장(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을 제출하여 호정사무소에서 승인을 받고 처리해야 한다.
3. 양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원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ii)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또는 서명)
2. 대만 및 외국 법률에 맞는 입양종료 성립이 유효한 서류 (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

ix. 질문: 대만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가 결혼할 시,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

답변: (i)신청절차

1. 대만에서 결혼한 경우
양당사자가 직접 소재지 상관없이 아무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한다.
2.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 a. 일방당사자가 소재지 상관없이 아무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한다.
 - b.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 위임장(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을 제출해야 한다.
 - c. 결혼 당사자가 직접 대만 재외기관에서 신청하고, 혼인신고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대만내 호정기관에 송부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

(ii)구비서류

1. 대만에서 결혼한 경우
 - a. 대만에 호적이 등록된 일방의 호구명부, 국민신분증,

인감(또는 서명)

b. 혼인서약서 (증인 2명의 서명 필요)

c. 중문 성명 사용성명서

d.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및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혼인상태증명서 및 중문번역본

2.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a. 당사자가 호정사무소에 신청한 경우

(a) 대만에 호적이 등록된 일방의 호구명부, 국민신분증, 인감(또는 서명)

(b)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혼인증명서 및 중문번역본, ‘행위지법 적법’이라고 기재된 경우 혼인상태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c)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d) 외국인 배우자가 대만 국적자를 따라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외국인 배우자의 중문 성명 사용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b. 당사자가 대만 재외기관에 신청한 경우

(a) 외국인 배우자의 중문 성명 사용성명서, 혼인증명서 및 중문번역본

(b) 혼인신고신청서

3. 대만인과 동성결혼 합법 국가 혹은 지역의 외국인은 동성결혼 등록할 수 있다. 관련 절차와 구비서류는 상기와 같다. (동성결혼 등록이 가능한 국가 혹은 지역 리스트는 각 지역 호정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x. 질문 :대만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가 이혼할 시, 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나?

답변: (i)신청절차

1. 대만에서 이혼한 경우

양당사자가 직접 소재지 상관없이 아무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한다. (재판 또는 협의이혼의 경우, 일방당사자가 신

청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2. 해외에서 이혼한 경우

- a. 일방당사자가 소재지 상관없이 아무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한다.
- b.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 위임장(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중문 번역본이어야 함)을 제출해야 한다.
- c. 이혼 당사자가 직접 대만 재외기관에서 신청하고, 이혼신고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대만내 호정기관에 송부하여 이혼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

(ii) 구비서류

1. 대만에서 이혼한 경우

- a. 대만에 호적이 등록된 일방의 호구명부, 국민신분증, 인감(또는 서명)
- b.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 c. 이혼합의서(증인 2명의 서명 필요),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판결문과 확정증명서 또는 법원조정서(법원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해외에서 이혼한 경우

- a. 당사자가 호정사무소에 신청한 경우
 - (a) 대만에 호적이 등록된 일방의 호구명부, 국민신분증, 인감(또는 서명)
 - (b)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 (c)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을 받은 이혼증명서 및 중문 번역본 (행위지법에 따라 이혼한 경우, ‘행위지법적법’이라고 기재)
- b. 당사자가 대만 재외기관에 신청한 경우
 - (a) 이혼증명서 및 중문번역본
 - (b) 이혼신고신청서

3. 배우자의 성씨 철회

이혼신고 신청 시 배우자 성씨 철회 신청도 함께 한다.

4. 대만인과 동성결혼합법 국가 혹은 지역의 외국인이 동

성결혼 등록 후, 결혼 등록을 종료를 원할 경우, 관련 절차와 구비서류는 각 지역 호정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xi. 질문: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대만 국적으로 귀화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하나?

답변:

- (i) 법률근거: <국적법>제3조, 제8조, 제9조, 동법 시행세칙 제2~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 (ii) 신청절차: 본인이 대만 주소지 관할구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직할시, 현(시)정부를 거쳐 내정부에 승인 신청이 전달된다.
- (iii) 구비서류
 1. 국적귀화신청서 (최근 2년 내에 찍은 사진 1매, 국민신분증 사진 사이즈와 동일)
 2. 합법적이고 유효한 외국인거류증 또는 외국인영구거류증 (<외국여권비자조례> 규정에 따라 대만 재외기관에 거류비자를 신청하고, 거류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의 내정부 이민서 안내소에서 외국인거류증을 신청해야 함)(외국인영구거류증은 <출입국 및 이민법>관련 규정에 따라 내정부 이민서에서 신청해야 함)
 3. 외국인거류증명서(신청인이 제출할 필요 없으며, 호정기관에서 조회 가능)는 본법에 따라 매년 합계 183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류한 사실이 연속적이며 5년 이상 중단된 적이 없고 기간을 초과하여 거류한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거류기간이 연속적이며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블루칼라의 취업기간 및 학생의 재학기간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 거류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4. 외국인 출입국일자증명서 (신청인은 제출할 필요 없으며 호정기관에서 조회 가능)
 5. 원국가의 정부가 발급한 경찰기록증명서 또는 기타 관

련 증명서 (신청일 이전 6개월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는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과 외교부의 재검증을 거쳐야 함. 대만 주재 해외공관 또는 위탁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는 외교부에서 재검증을 거쳐야 함.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재외기관의 검증과 외교부의 재검증을 받았거나 대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중문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신청인이 대만인의 배우자이거나, 영구거류증 소지자, 혹은 거류증 사유가 "의친(부/처)"으로 되어있는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과거 대만인의 배우자였다가 혼인관계 소멸후 출국기록이 없는 경우, 그리고 만14세전 입국후 미출국자의 경우는 본 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됨)

6. 직할시, 현(시) 경찰국이 발급한 대만 거주기간의 경찰 형사기록증명 (신청인은 제출할 필요 없으며 호정기관에서 조회 가능)
7. 일정규모의 재산 또는 전문기술 보유로 자립하거나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류 (<국적법>시행세칙 제7조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대만인의 배우자로서 혼인관계가 3년 이상 지속되었거나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자는 본 서류 제출 면제)
8. 대만 국적 취득자의 기본언어능력 및 국민권리의무 기본상식인증표준 제3조에서 정한 서류
9. 신청비용: NT\$1,200 (우체국어음으로 납부, 수취인: 내정부 / 인터넷 "e-Bill全國繳費網" 혹은 어플리케이션 "e-Bill全國繳費網APP"를 다운받아 납부할 수 있음)
10. 내정부가 귀화를 허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국적 상실증명서 원본과 중문번역본 제출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는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과 외교부의 재검증을 거쳐야 함. 대만 주재 해외공관 또는 위탁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는 외교부에서 재검증을 거쳐야 함.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재외기관의 검증과 외교부의 재검증을 받았거나 대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중문번역본을 함

게 제출해야 함.)단, 외교부의 확인결과 원국가의 법률 또는 행정적 절차의 제한을 받아 기한내 국적상실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 경우, 시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xii. 질문: 외국인 배우자의 대만 국적신청은 어떻게 하나?

답변:

- (i) 법률근거: <국적법>제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9조, 동법 시행세칙 제2~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 (ii) 신청절차: 본인이 대만 주소지 관할구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직할시, 현(시)정부를 거쳐 내정부에 승인 신청이 전달된다.
- (iii) 구비서류
 1. 국적귀화신청서 (최근 2년 내에 찍은 사진 1매, 국민신분증 사진 사이즈와 동일)
 2. 합법적이고 유효한 외국인거류증 또는 외국인영구거류증 (<외국여권비자조례> 규정에 따라 대만 재외기관에 거류비자를 신청하고, 거류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의 내정부 이민서 안내소에서 외국인거류증을 신청해야 함)(외국인영구거류증은 <출입국 및 이민법>관련 규정에 따라 내정부 이민서에서 신청해야 함)
 3. 내정부 이민서가 발급한 외국인거류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할 필요 없으며, 호정기관에서 조회 가능함. <국적법>에 따라 매년 합계 183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류한 사실이 연속적이며 3년 이상 중단된 적이 없고 기간을 초과하여 거류한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거류기간이 연속적이며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블루칼라의 취업기간 및 학생의 재학기간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 거류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4. 외국인 출입국일증명서 (신청인은 제출할 필요 없으며

- 호정기관에서 조회 가능). 직할시, 현(시) 경찰국이 발급한 대만 거주기간의 경찰형사기록증명 (신청인은 제출할 필요 없으며 호정기관에서 조회 가능)
5. 직할시, 현(시) 경찰국이 발급한 대만 거주기간의 경찰형사기록증명 (신청인은 제출할 필요 없으며 호정기관에서 조회 가능)
 6. 대만 국적 취득자의 기본언어능력 및 국민권리의무 기본상식인증표준 제3조에서 정한 서류 (중화민국 국적 예비귀화 증명 취득자는 해당사항 없음)
 7. 혼인신고 이후의 호적등본 (신청인은 제출할 필요 없으며 호정기관에서 조회 가능).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혼인증명서류, 외국인 배우자 및 대만 배우자의 국적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만에서 결혼했을 경우 재외기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상태 증명서 및 중문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8. 신청비용: NT\$1,200 (우체국어음으로 납부, 수취인: 내정부 / 인터넷 "e-Bill全國繳費網" 혹은 어플리케이션 "e-Bill全國繳費網APP"를 다운받아 납부할 수 있음)
 9. 내정부가 귀화를 허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국적 상실증명서 원본과 중문번역본 제출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는 대만 재외기관의 검증과 외교부의 재검증을 거쳐야 함. 대만 주재 해외공관 또는 위탁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는 외교부에서 재검증을 거쳐야 함.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재외기관의 검증과 외교부의 재검증을 받았거나 대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중문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단, 외교부의 확인결과 원국가의 법률 또는 행정적 절차의 제한을 받아 기한내 국적상실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 경우, 시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Ⅲ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 연락망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이메일주소
쑹산(松山)구 호정사무소	臺北市八德路4段 692號4樓	02-2753-3043	http://sshr.gov.taipei/ web02300@mail.taipei.gov.t w
신이(信義)구 호정사무소	臺北市信義路5段 15號2樓	02-2723-3977	http://xyhr.gov.taipei/ web02310@mail.taipei.gov.t w
다안(大安)구 호정사무소	臺北市新生南路2 段86號	02-2358-7877	http://dahr.gov.taipei/ web02320@mail.taipei.gov.t w
중산(中山)구 호정사무소	臺北市松江路367 號2樓	02-2503-2461	http://zshr.gov.taipei/ web02330@mail.taipei.gov.t w
중정(中正)구 호정사무소	臺北市忠孝東路1 段108號7樓	02-2394-8838	http://zzhr.gov.taipei/ web02340@mail.taipei.gov.t w
다통(大同)구 호정사무소	臺北市昌吉街57 號3樓之1	02-2594-2569	http://dthr.gov.taipei/ web02350@mail.taipei.gov.t w
완화(萬華)구 호정사무소	臺北市和平西路3 段120號4樓	02-2306-2706	http://whhr.gov.taipei/ web02360@mail.taipei.gov.t w
원산(文山)구 호정사무소	臺北市木柵路3段 220號2樓	02-2939-5885	http://wshr.gov.taipei/ web02380@mail.taipei.gov.t w
난강(南港)구 호정사무소	臺北市南港路1段 360號4樓	02-2782-5196	http://nghr.gov.taipei/ web02400@mail.taipei.gov.t w
네이후(內湖)구 호정사무소	臺北市民權東路6 段99號3樓	02-2791-2277	http://nhhr.gov.taipei/ web02410@mail.taipei.gov.t w
스린(士林)구 호정사무소	臺北市中正路439 號3樓	02-2880-3252	http://slhr.gov.taipei/ web02420@mail.taipei.gov.t w
베이더우(北投)구 호정사무소	臺北市新市街30 號3樓	02-2892-4170	http://bthr.gov.taipei/ web02430@mail.taipei.gov.t w

Ⅳ 타이베이시 신이민자회관(新移民會館)

-스린(士林)신이민자회관

전화번호: 02-2883-7750, (02)2883-1735

주소: 臺北市大東路75號

- 완화(萬華)신이민자회관

전화번호: 02-2370-1046

주소: 臺北市長沙街2段171號

홈페이지:

[http://nit.taipei/ct.asp?xItem=39913274&ctNode=5717
5&mp=102161](http://nit.taipei/ct.asp?xItem=39913274&ctNode=57175&mp=102161)

제 7 장 산업발전국

I 자주하는 질문

(i) 질문: 화교 또는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답변:

1. 화교 또는 외국인이 대만에서 회사를 설립 시, 우선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에 문의하여 비준심사를 받아야 한다. 타이베이시에 주소를 두고 납입자본이 NT\$5억미만일 경우, 별도로 타이베이시 산업발전국(상업처)에 회사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2. 타이베이시정부가 설립한 투자서비스 사무실 (Invest Taipei Office ; ITO) 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i) 질문: 화교 또는 외국인이 개인사업자나 합명회사를 등록할 때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답변: 화교 또는 외국인이 대만에서 상점(行號)을 설립 시, 우선 타이베이시 산업발전국(상업처)에 상업명 및 사업분야의 사전조사를 신청한다. 타이베이시 산업발전국(상업처)이 발급한 답변서를 들고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에 허가 신청을 내고, 허가서류의 사본과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고 타이베이시 산업발전국(상업처)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iii) 질문: 회사의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답변: 회사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가 발급한 허가서류 사본과 아래의 신분증명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

1. 대만 거류증 사본
2. 재외기관에서 발급한 국적증명서
3. 자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서류로 대만 재외기관

의 증명이 필요없는 것(예: 여권 사본, 일본의 호적증명)

4. 본인이 작성한 성명서(국적, 신분증명 등 포함)로 대만 외교부 재외공관 또는 주대만 자국기관(예: 주대만미국협회, AIT)의 증명을 거쳤거나 대만 법원의 공증을 거친 것(중문번역본 첨부)

5. 교무위원회(僑委會)가 발급한 신분증명

상기 증명서류에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을 시, 신청인이 거주지 주소를 추가하고 날인 또는 서명(본인의 날인이나 서명, 또는 회사 및 이사장의 직인)할 수 있다.

(vi) 질문: 개인사업 또는 합명회사의 책임자가 외국인일 경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답변: 상업책임자 또는 합명인이 외국인일 경우,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가 발급한 허가서류 사본과 아래의 신분증명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

1. 대만 거류증 사본

2. 재외기관에서 발급한 국적증명서

3. 자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서류로 대만 재외기관의 증명이 필요없는 것(예: 여권 사본, 일본의 호적증명)

4. 본인이 작성한 성명서(국적, 신분증명 등 포함)로 대만 외교부 재외공관 또는 주대만 자국기관(예: 주대만미국협회, AIT)의 증명을 거쳤거나 대만 법원의 공증을 거친 것(중문번역본 첨부)

5. 교무위원회(僑委會)가 발급한 신분증명

상기 증명서류에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을 시, 신청인이 거주지 주소를 추가하고 날인 또는 서명(본인의 날인이나 서명, 또는 회사 및 책임자의 직인)할 수 있다.

II 유관기관 리스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제부	臺北市中正區福州街15號	(02)2321-2200
	http://gcis.nat.gov.tw (全國商工行政服務入口網)	
타이베이시 산업발 전국	臺北市信義區市府路1號	(02)2720-8889
	http://www.doed.gov.taipei	
타이베이시 상업처	臺北市信義區市府路1號北區1樓	(02)2725-6485 (02)2725-6491
	http://www.tcooc.gov.taipei	
타이베이시 투자서 비스 사무실	臺北市信義區市府路1號北區1樓	(02)2757-4518 (02)2757-4519
	http://invest.taipei	

III 타이베이시 야시장 관광정보

야시장명	위치	영업시간
랴오닝제(遼寧街)야시장	臺北市中山區遼寧街(長安東路2段至朱崙街)	18:00~24:00
쌍청제(雙城街)야시장	臺北市中山區雙城街(雙城街10巷、13巷至農安街)	08:00~24:00
칭광(晴光)시장	臺北市中山區農安街2巷及雙城街12巷	09:00~2100
스핑양광(四平陽光)상 권	臺北市中山區四平街(南京東路2段115巷至伊通街)	11:00~1900
옌산(延三)관광야시장	臺北市大同區延平北路三段(民族西路至民權西路)	18:00~24:00
닝샤(寧夏)관광야시장	臺北市大同區寧夏路(南京西路至民生西路)	18:00~24:00
다룽제(大龍街)야시장	臺北市大同區大龍街(酒泉街至民族西路)	18:00~24:00
랴오허제(饒河街)관광 야시장	臺北市松山區饒河街(塔悠路至松山慈祐宮)	17:00~24:00
난지창(南機場)야시장	臺北市中正區中華路二段易牙巷(中華路二段307巷至315巷)	09:00~24:00
징메이(景美)야시장	臺北市文山區景華街與景美街間	18:00~24:00
스린(士林)관광야시장	臺北市士林區大東路、大南路、文林路、基河路四周範圍內	17:00~24:00
시창제(西昌街)관광야 시장	臺北市萬華區西昌街(廣州街至桂林路)	18:00~24:00
광저우제(廣州街)관광 야시장	臺北市萬華區廣州街(梧州街至環河南路)	16:00~24:00
화시제(華西街)관광야 시장	臺北市萬華區華西街(廣州街至貴陽街)	16:00~24:00
우저우제(梧州街)관광 야시장	臺北市萬華區梧州街(和平西路三段至桂林路)	16:00~24:00
린장제(臨江街)관광야 시장	臺北市大安區臨江街(通化街至基隆路)	18:00~24:00
젠궈(建國) 주말 옥시장	臺北市大安區建國南路(仁愛路與濟南路間之建國高架橋下)	토: 09:00~20:00 일: 09:00~18:00

제 8 장 지정국(地政局)

I 토지법 일부 조문<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관련 조문>

2011년 6월 15일 개정 공표

제17조

다음의 토지는 외국인에게 이전, 부담설정 또는 임대할 수 없다.

1. 임지
2. 어지(漁地)
3. 수렵지
4. 염지(鹽地)
5. 광지(礦地)
6. 수원지
7. 요새 군비(軍備)지역 및 영토국경 토지

전항 토지의 이전에는 상속에 의한 토지취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단, 상속등록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국인에게 매각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직할시, 현(시)의 지정(地政)기관이 국유재산국에 공개경매를 요청한다. 경매절차는 제73-1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본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상속을 통해 제1항에서 열거된 토지를 취득했으나 아직 상속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8조

중화민국에서 외국인의 토지권리 취득 및 설정은 조약 또는 본국 법률에 따라 중화민국 국민도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

외국인이 자가소유, 투자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용도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그 면적과 장소는 담당 직할시 또는 현(시)로

부터 법에 따라 정해진 규제를 받아야 한다.

1. 주택
 2. 영업장소, 사무장소, 상점 및 공장
 3. 교회
 4. 병원
 5. 외국인 자녀 학교
 6. 재외공관 및 공익단체의 시설
 7. 묘지
 8. 대만내 중대건설사업, 거시경제 또는 농축업경영 투자에 도움이 되며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
- 전항 제8호에서 필요한 토지의 신청절차, 구비서류, 심사방식 및 기타 준수 사항에 관한 판법(辦法)은 행정원이 정한다.

제20조

외국인이 전조에 따라 토지취득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직할시 또는 현(시)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토지의 용도변경 또는 상속 이외의 이전을 할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다. 전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한 자는 우선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할시 또는 현(시)에서 전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접수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승인 후에는 중앙 지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전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할 시 승인한 기한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승인 기한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에 기한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한 기한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직할시 또는 현(시)에서 토지소유권자에게 통지서 송달 후 3년 이내에 매각할 것을 통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경매가 진행되며

경매대금은 토지소유권자에게 지급된다. 그 토지상의 개량물도 함께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전항의 경매 처리절차, 경매금액산정, 이의신청처리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판법은 중앙 지정기관이 정한다.

제24조

외국인이 토지 임대 또는 매입 시, 등록 완료 후 법령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Ⅱ <외국인 국내 중대건설사업, 거시경제 또는 농축업경영 투자에 관한 토지 취득 판법>

2002년 2월 27일 원태내자(院臺內字) 제0910082180호령 제정

제1조

본판법은 <토지법(이하 본법)>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본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중대건설사업, 거시경제 또는 농축업경영 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대건설사업 투자란,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확정 또는 행정원에 보고하여 확정된 중대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이다.
2. 거시경제 투자란 다음의 투자를 말한다.
 - (1) 관광호텔, 관광놀이시설, 운동장/체육관 개발
 - (2) 주택 및 고층건물 개발
 - (3) 산업 공장 개발
 - (4) 산업단지, 상공복합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기타 특정목적의 단지 개발
 - (5) 간척지 개발
 - (6) 공공건설 건축
 - (7) 신도시, 신지역사회 개발 또는 도시재개발
 - (8) 기타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공고한 투자사업

3. 농축업경영 투자란,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고시한 농업기술집약 및 자본집약 종목과 기준에 적합한 투자이다.

제3조

외국인이 본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을 신청할 때,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서류. 외국 법인의 경우 인허가를 받은 증명서도 함께 첨부

2. 투자계획서

3. 토지등기부등본 및 지적도등본.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 토지사용구획증명서 첨부.

농경지의 경우, 농업용지작농업사용증명서(農業用地作農業使用證明書)또는 토지사용규제적합증명서(符合土地使用管制證明書)첨부

4. 대만 재외공관, 대표처, 판사처(사무처) 및 기타 외교부 위탁기관의 검증을 거친 평동호혜(상호주의)증명서류. 단,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 또는 설정에 관한 상호주의 국가에 속할 경우 생략 가능

5. 기타 관련 서류

전항의 구비서류 중 신청인이 심사를 위해 투자계획안에 이미 첨부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

제4조

전조 제1항 제1호의 인허가 증명서류란, 해당 외국법인이 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증명서류이다.

제5조

제3조 제1항 제2호의 투자계획서에 계획명칭, 토지 소재지 및 기타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규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제3조 제1항 제4호의 평등호혜 증명서류란, 신청인 본국의 유관기관이 해당 국가가 대만 국민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발급한 증명서류이다. 단, 해당 외국국가의 외국인 토지권리에 대한 규정이 각 행정구에서 각각 입법한 경우, 대만 국민이 해당 행정구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가 된다.

제7조

외국인이 제3조 규정에 따라 신청 시, 그 투자계획이 2개 이상의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과 연관될 경우, 신청인은 그 투자사업의 주요계획안에 따라 담당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판정할 수 없을 시 행정원에서 지정한다.

제8조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신청안건을 심사할 때,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신청인을 불러서 설명하게 할 수도 있다.

제9조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신청안건을 승인한 후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토지 소재지 직할시 또는 현(시)에 통보해야 한다. 승인이 안될 시에도 신청인에게 불가 사유를 회신해야 한다.

전항의 승인 회신내용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안건 승인 후 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함
2. 신청 취득한 토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환경영향평가, 수자원 및 토지 보존, 토지사용구획, 용지변경 및 토지개발과 연관될 경우에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

제10조

본판법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은 중앙 지정기관에서 제정한다.

제11조

본판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Ⅲ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에 관한 작업요점>

2019년 3월 21일 대내지자(台內地字) 제1080261353호 령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에 관한 작업요점>제4점 수정

제1점

외국인이 중화민국 영토내의 토지권리 취득 또는 설정 안건을 신청할 시, 당사자는 본국 유관기관이 해당 국가가 대만 국민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발급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해당 외국국가(예: 미국)의 외국인 토지권리에 관한 규정이 각 행정구에서 입법한 경우 대만 국민이 해당 행정구에서 동일한 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할 수 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자료를 통해 관련 조약이나 대만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토지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법률 규정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는 전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2점

재외화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화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대만내에서 토지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하는데 적용되는 법령은 대만 자국민과 동일하다. 기존의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는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점

대만 국민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를 국적 상실 후 본국인에게 이전할 때 <토지법>제2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상속으로 <토지법>제17조 제1항 각호의 토지를 취득할 시, 상속등록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권리를 본국인에게 매각해야 하며, 기간경과 후에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토지법>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점

외국법인이 대만에서 토지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할 시, 법률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만 권리의 주체가 된다. 외국회사가 토지등기 신청 시, 회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인허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단,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외국회사가 <회사법(公司法)> 제386조 규정에 따라 연락사무소(辦事處)설치 등록 시, 토지 등록을 할 수 없다.

제6점

외국인의 법원에서 경매중인 공업용지에 대한 계승여부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있을 때 법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다.

제7점

외국인 국적에 대한 인정은 <해외민사법률적용법(涉外民事法律適用法)>에 따라 규정한다.

제8점

외국인이 대만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 행위능력 유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람의 행위능력은 본국 법률을 따른다. 외국인이 본국 법에서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이지만 중화민국 법에서는 행위능력이 있는 경우, 중화민국내에서의 법률행위를 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인 미성년자가 대만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대신 행하거나 또는 받아들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승낙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점

외국인이 토지권리 설정을 신청할 때, <토지법>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제10점

외국은행이 채권을 행사하여 토지권리를 경매 및 승계할 시, 그 취득 및 사후처분 역시 <토지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11점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에 관한 작업요점> 제11점에서 첨부한 간이보고서 양식을 수정하며 등록기관 및 비준기관 날인란을 삭제하였다. 즉일 발효한다.

OOO정부 외국인 토지 건물 권리 이전(취득)안건 처리 간 이보고서

신청인		성명			여권번호 또는 거류증번호			본적 (국가,주/성)		현주소지		
권리인												
의무인												
토지표시					면적			권리 범위				
향진시구	단	소단	지호	지목	헥타르	아르	제곱 미터					
건물표시									면적 (제곱 미터)		권리 범위	
건물 번호	건물위치				문패							
	향진시 구	단	소단	지호	향진시 구	가로단	항농	호수				
토지사용구획 또는 확정					<토지법>제17조 제1항 규정 위반사항 없음:(맞으면✓)							
<토지법>제19조 제1항 제o호의 사용:					<토지법>제18조 규정에 적합: (맞으면 ✓)							
취득목적 (<input type="checkbox"/> 안에 ✓표시): <input type="checkbox"/> 자가소유 <input type="checkbox"/> 투자 <input type="checkbox"/> 공익												
비고:												

IV 타이베이시 지정국 연락처

타이베이시 지정국 산하 토지개발총괄팀 및 송산(松山), 구팅(古亭), 쟈청(建成), 스린(士林), 중산(中山), 다안(大安) 6개 지정사무소(地政事務所)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정국	11008	信義區市府路1號3樓	1999(外縣市 02-2720-8889) 내선 7522
토지개발총괄팀	11050	信義區莊敬路391巷11弄2號3樓	8780-7056
송산(松山)지정사무소	11050	信義區莊敬路391巷11弄2號	2723-0711
구팅(古亭)지정사무소	11675	文山區萬隆街47之12號2~4樓	2935-5369
젠청(建成)지정사무소	10855	萬華區和平西路3段120號7~9樓	2306-2122
스린(士林)지정사무소	11163	士林區中正路439號5~7樓	2881-2483
중산(中山)지정사무소	10482	中山區松江路357巷1號	2502-2881
다안(大安)지정사무소	10692	大安區信義路4段335巷6號	2754-8900

◎ 근무시간:

지정국, 토지개발총괄팀: 8시30분~12시30분, 13시30분~17시30분

제 9 장 세무기관

I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i) 소득세

1. 질문: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중화민국 거주 개인’과 ‘중화민국 비거주 개인’의 차이점은?

답변: 아래 2가지에 해당하는 개인은 ‘중화민국 거주 개인’에 속함.

- (1) ‘과세연도 동안 중화민국에 호적을 등록하고 합계 31일 거주하였거나 또는 합계 1일 이상 31일 미만 거주하고, 그 생활 및 경제 중심이 중화민국 내인 경우.
- (2) 중화민국에 호적 등록 없이 1과세연도 동안 합계만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

상기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은 ‘중화민국 비거주 개인’이다.

2. 질문: 외국인의 대만 체류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답변: 외국인의 대만 체류일수는 여권에 출입국 도장이 날인된 날 또는 내정부 이민서가 발급한 ‘출입국일증명서’ 기준으로 한다(시작일이 아닌 종료일로 산정). 만약 1과세연도 내에 여러 차례 입출국한 경우 누적으로 계산한다.

3. 질문: ‘중화민국 거주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 및 납부하나?

답변: ‘중화민국 거주 개인’이 중화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즉 중화민국 내에서 취득한 각종 소득과 중화민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고용주로부터 받은 보수 등), 매년 5월 31일 (5월 31일이 공휴일이라면 공휴일이 지난 후 첫 평일까지 연기 가능) 전까지 결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거류지 관할 국세국

에 전년도 종합소득총액을 신고한 후, 면세액, 공제액 및 기본생활비 차액을 제한 종합소득 순금액을 누진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결산세액을 계산하고 세금신고 전에 세금수령공고(公庫)에 납부한다. 내정부 이민서가 발급한 중화민국 거류 또는 체류증명서(이하 거류증)를 소지하고 통일번호(統一證號)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5월 31일이 공휴일이라면 공휴일이 지난 후 첫 평일까지 연기 가능)까지 전자세금신고납부 홈페이지(<https://tax.nat.gov.tw>)에서 외국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외래인구 자연인 인증, 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통과한 전자인증(이하 금융인증), ‘건강보험카드 온라인서비스 등록’을 마친 국민건강보험인증(이하 건강보험카드 및 비밀번호), 거류증+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통일번호 및 여권번호/거류증번호/허가증번호로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자료를 업로드하여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4. 질문: ‘중화민국 비거주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 및 납부하나?

답변: ‘중화민국 비거주 개인’이 중화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무납부세액은 각각 공제 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한다. 공제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예: 직원 스톡옵션 등)은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중화민국 비거주 개인’이 1과세연도 동안 중화민국에서 합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였고 중화민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해외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보수는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1) 회사에서 배당한 주식배당금, 합작사(협동조합)에서

배당한 잉여금, 합명회사의 영리사업을 통해 합명인이 매년 배당해야 하는 잉여금, 개인사업자의 영리사업을 통해 자본주가 매년 얻는 잉여금은 지급액, 의무배당금액 또는 소득의 21%를 공제한다.

- (2) 임금은 지급액의 18%를 공제하며, 월급의 지급총액이 행정원에서 정한 매월 기본임금의 1.5배 이하일 경우, 지급액의 6%를 공제한다.
- (3) 커미션은 지급액의 20%이다.
- (4) 이자는 지급액의 20%이며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액 또는 배당액의 15%를 공제한다.
 - a. 단기어음 만기지급금액이 최초 발행가를 초과한 부분의 이자
 - b. 금융자산증권화조례 부동산증권화조례 규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자산담보증권을 통해 배당받은 이자
 - c. 공채, 회사채 또는 금융채권의 이자
 - d. 전3항의 유가증권 또는 단기어음으로 조건부거래를 하고 만기매도금액이 기존 매수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
- (5) 임대료는 지급액의 20%를 공제한다.
- (6) 권리금은 지급액의 20%를 공제한다.
- (7) 경기 및 시합상금, 당첨금 또는 상품은 20%를 공제한다. 단,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 당첨금은 1연(聯)(조(組), 주(注))당 상금이 NT\$5,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2019년 11월 30일 이전에는 공제금이 NT\$2,000)
- (8) 업무수행자의 보수는 지급액의 20%를 공제한다.
- (9) 퇴직소득은 지급액에서 면세정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18%를 공제한다.
- (10) 고발 또는 신고 포상금은 지급액의 20%를 공제한다. 이밖에도 공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소득은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 (1) 재산거래소득은 20%의 공제율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다.
- (2) 세금 연도 1년내에 타이완에서 90일 이상 거류하고, 거류 원인이 중화민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고용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18%의 공제율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다.
- (3) 과세이연 주식 양도소득은 액면가(실제양도가격 또는 증여, 유산분배 시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실제양도가격 또는 증여, 유산분배 시의 시가를 기준)를 소득별로 18% 혹은 21% 공제율로 납세신고를 한다.
- (4) 저당이자 및 기타 소득은 20%의 공제율로 납세신고를 한다.
- (5) <소득세법> 제3-2조 제1항~제3항의 수혜자가 ‘중화민국 비거주 개인’일 경우, 신탁 조성, 변경 또는 연도추가 시 혜택 받은 신탁 이익의 권리가치 또는 권리가치 증가분의 20%를 공제율로 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 (6) 임원직원 스톡옵션의 기타 소득은 20%의 공제율로 납세신고를 한다.

5. 질문: 외국인이 대만 체류기간 동안 해외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용역 보수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답변: 외국인이 대만 체류기간 동안 대만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보수액은 현지 세무기관, 공인회계사 또는 공증인이 발급한 증명서류(회계사는 개업증 사본 첨부 필요)를 갖고 거류 소재지 국세국에 송부하여 인증 받을 수 있다.

6. 질문: 외국인 근로자의 용역 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답변: 외국인 근로자의 용역 보수는 공제증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득 또는 기타 공신력이 있는 소득증명

소득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한다.

7. 질문: 종합소득세 산정 시, 혜택 받을 수 있는 감면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답변: 중화민국 거주자의 외국인종합소득세 산정의 경우, 그 개인종합소득총액에서 면세액, 공제액 및 기본생활비 차액을 제한 잔액이 개인종합소득순액이며, 소득순액에서 규정된 세율에 따라 납세액을 산정한다. 2020년도 면세액, 공제액 및 기본생활비 차액은 다음과 같다.

- (1) 면세액: 외국인 본인, 배우자 및 부양친족은 1인당 면세액이 NT\$88,000이며, 만 70세의 납세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 직계존속은 1인당 면세액이 NT\$132,000이다.
- (2) 공제액: 납세의무자가 표준공제액 또는 항목별공제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고 거기에 특별공제액을 제한한다.
 - a. 표준공제액: (신분에 따라 정액공제)
미혼자는 NT\$120,000공제, 부부가 합산신고 시 NT\$240,000공제
 - b. 항목별공제액:
규정에 따라 사실확인을 거치며, 아래의 6가지로 분류한다.
 - (a) 기부: 종합소득총액의 2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국방이나 군인위로 관련 및 정부와 유적지에 대한 기부는 금액제한을 두지 않는다.
 - (b) 보험료: 납세의무자 본인, 배우자와 부양 직계존속의 개인보험, 노동보험, 국민연금보험, 취업보험 및 군인/공무원/교직원 보험의 보험료는 1인당 매년 공제액이 NT\$24,00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제한을 둔다. 단,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금액 제한을 두지 않는다.

- (c) 의약비 및 출산양육비: 규정에 따라 사실확인을 거친다.
 - (d) 재해손실: 규정에 따라 사실확인을 거친다.
 - (e) 자가소유주택 매입 대출금 이자: 주택이 중화민국에 위치하고 NT\$3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을 둔다. 단, 이미 신고를 마친 저축투자특별공제액 대상자는 주택매입 대출금 이자에서 우선 공제해야 한다.
 - (f) 주택임대료 지출: 주택이 중화민국에 위치하고, 신고 가구당 매년 공제액을 NT\$120,000로 제한을 둔다. 단, 주택매입대출이자 있다고 신고한 경우, 공제할 수 없다.
- c. 특별공제액: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한다.
- (a) 재산거래손실 특별공제액은 ‘당해 연도에 신고한 재산거래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한정한다.
 - (b) 임금소득 특별공제액: 임금 소득이 있을 시 1인당 NT\$200,000를 공제할 수 있다. 단, 그 해 임금소득총액이 NT\$200,000미만일 경우, 그 해 임금소득총액 전액만 공제할 수 있다.
 - (c) 재산거래손실 특별공제액은 ‘당해 연도에 신고한 재산거래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한정한다.
 - (d) 임금소득 특별공제액: 임금 소득이 있을 시 1인당 NT\$200,000를 공제할 수 있다. 단, 그 해 임금소득총액이 NT\$200,000미만일 경우, 그 해 임금소득총액 전액만 공제할 수 있다.
- 註: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 금액을 소득인이 부담하는 필수 발생 비용(아래 열거)의 총액이 임금특별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는 관련 증명 문건을 제출하여 임금 수입에서 동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액으로 계산한다

(2019년도부터 시행).

- A. 직장 전용 유니폼 비용: 직업상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특수 복장 또는 공연 전용 복장의 구입, 대여, 세탁 및 유지 비용. 개인이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자가 종사하는 직업 임금 수입 총액의 3%로 제한한다.
 - B. 교육 연수 비용: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이 주최하고, 직무, 직업 상 또는 법령에 의해 필요한 특정 기술 및 전문 지식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연수비용. 개인이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자가 종사하는 직업 임금 수입 총액의 3%로 제한한다.
 - C. 직업상의 도구 비용: 직무 혹은 직업 상으로만 사용하는 서적, 정기간행물 및 작업 도구를 구입하는 비용. 단, 해당 물건이 2년 내에 소모되지 않고 해당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감가상각하거나 무형자산의 상각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이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자가 종사하는 직업 임금 수입 총액의 3%로 제한한다.
위의 규정에 의해 임금 수입 중에서 필요 비용을 공제받는 자는 임금소득 특별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e) 저축투자 특별공제액: 1가구당 NT\$270,000를 초과할 수 없다.
 - (f) 장애인 특별공제액: 1인당 매년 NT\$200,000이다.
 - (g) 교육학비 특별공제액: 대학(전문대 포함)이상 자녀는 1인당 매년 NT\$25,000를 초과할 수 없다.
 - (h) 유아교육 특별공제액: 납세의무자가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신고하면, 규정에 적합할 시 1인당 매년 NT\$120,000를 공제한다.
 - (i) 장기요양 특별공제액: 납세의무자나 그의 배우

자, 또는 그의 부양 친족이 중앙위생복지 주관기관에서 공고한 심신 장애 기준(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및 소득세법 규정에 부합하는 자는 1인당 매년 NT\$120,000를 공제한다(2019년부터 실행).

- (3) 기본생활비차액: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 당해년도 개인 기본생활비와 외국인 납세의무자 본인, 배우자, 등록된 부양 친족 인원수를 곱하여 기본생활에 필요한 비용 총액을 계산한다. 동 총액이 특정 금액(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종합소득총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액 전부, 일반 공제액, 저축투자 특별공제액, 장애자 특별공제액, 교육학비 특별공제액, 취학 전 아동 특별공제액, 장기 요양 특별공제액의 합계 금액)을 초과할 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화민국 거주자인 외국인이 연중 출국 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경우, 그 면세액과 표준공제액 및 기본생활비는 당해 중화민국내에서 거주한 일수가 연간 거주일수에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공제해야 한다.

8. 질문: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로 중화민국에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나?

답변: 현행 대만의 종합소득세는 대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며 대만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대만이 우선과세권을 갖는다. 납세의무자가 그 국가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 소득세를 재차 납부해야 할 경우, 대만의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대만의 종합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9. 질문: 중화민국에서 납부한 종합소득세로 해외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나?

답변: 중화민국에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로 해외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는 각 나라의 조세 규

정에 따라 결정되며 납세의무자는 해당 국가의 세무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세법 규정에 따라, 이미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경우, 재정부의 타이베이 또는 가오슝 국세국 총국 복무과(服務科) 외교국(外僑股) 또는 기타 각 지역의 국세국 산하 분국, 세금 징수처(稽徵所) 또는 복무처에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0. 질문: 외국인이 해외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필요한 납세증명 영문본은 어떻게 신청하나?

답변: 외국인 본인이 납세증명 영문본을 신청할 시, 여권이나 거류증을 갖고 재정부의 타이베이 또는 가오슝 국세국 총국 복무과(服務科) 외교국(外僑股) 또는 기타 각 지역의 국세국 산하 분국, 세금 징수처(稽徵所) 또는 복무처에 문의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시, 외국인 납세의무자가 서명한 위임장과 여권 사본(기본정보와 서명 포함),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외국인거류증을 갖고 상기 국세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11. 질문: 외국인은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

답변: 외국인이 1과세연도내에 대만에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

- (1) 대만 체류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가 중화민국에서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 소득이 아닐 경우, 출국하기 전 규정된 징수율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 (2) 대만 체류일수가 90일 초과 183일 미만인 자가 중화민국에서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한다. 원천징수 소득도 아니고 중화민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해외 고용주로부터 용역보수를 취득할 시, 출국하기 전에 규정된 징수율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 (3) 대만 체류일수가 만 183일이고 당해 연도 소득이 과세시작점에 도달한 경우, 이듬해 5월 31일(5월 31일이 공휴일이라면 공휴일이 지난 후 첫 평일까지 연기 가능)전까지 외국인 종합소득세 결산신고서를 작성하여, 거류지 국세국에서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산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도 중에 출국한 자는 출국 10일 전에 당해 연도 소득세 결산 신고를 해야 한다.

12. 질문: 외국인은 어디에서 종합소득세 결산 신고를 하나?

답변: 외국인 납세의무자는 신고일 당시 거류지(거류증 주소와 동일)국세국에 신고해야 하며 거류주소가 타이베이시 또는 가오슝시인 자는 각각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또는 재정부 가오슝 국세국의 복무과(服務科) 외교국(外僑股)에서 진행한다. 거류주소가 기타 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 국세국 및 산하 분국 또는 세금징수처(稽徵所)에서 진행한다. 지역별 총국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다.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02)2311-3711

내선번호 1116, 1118

재정부 가오슝 국세국: (07)725-6600

재정부 북구 국세국: (03)339-6789

재정부 중구 국세국: (04)2305-1111

재정부 남구 국세국: (06)222-3111

13. 질문: 외국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답변: 외국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신고 시, 여권, 거류증, 원천징수영수증, 배당금영수증 등 거류 및 소득증명 관련 서류와 중화민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에서 소득한 증명서 등을 지참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 면세액, 각종 특별공제액 및 항목별 공제액 신고자는 해당 규정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갖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질문: 납세의무자와 그 배우자는 종합소득세를 합산해서 신고하나? 연도 중에 결혼 또는 이혼 시 어떻게 신고하나?

답변: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 (1) 소득세법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민법 제1010조 제2항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비동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제1089-1조의 지속적으로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지 6개월 이상 또는 통상보호명령(Full Protection Order)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 배우자의 소득은 납세의무자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금 소득 또는 각종 소득을 분리해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와 배우자의 거류지가 서로 다를 경우에도 합산해서 납세의무자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거류지 국세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 (2) ‘중화민국 비거주 개인’으로 중화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가 ‘중화민국 거주 개인’일 경우, ‘중화민국 비거주 개인’은 배우자와 합산 신고를 하거나 단독으로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 세율로 소득세를 산정해서 납부할 수 있다. 단독으로 납세할 경우, 그 소득은 중화민국거주자 신분인 배우자의 종합소득총액에 합산시켜서 신고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금 및 규정 세율에 따라 납세신고한 세액도 공제할 수 없으며 관련된 면세액이나 공제액도 제할 수 없다.
- (3) 연도 중에 결혼 또는 이혼할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배우자와 분리 또는 합산해서 결산신고를 할 수 있다. 합산 신고를 원할 경우, 결혼 또는 이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 또는 이혼 당해 연도의 부양가족의 경우, 중복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일방 혼자 또는 쌍방이 나눠

서 신고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부양 중인 일방이 신고해야 한다.

상기 세가지 합산 신고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외국인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부양가족의 중화민국내 각종 소득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산 납세 신청을 해야한다.

15. 질문: 외국인이 당해 연도 중간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결산신고는 어떻게 하나?

답변: 외국인이 결산신고 시, 당해 연도의 기신고한 소득액을 합산해서 납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사전에 기납부한 당해 연도 세금은 반환될 수 있다.

외국인이 이미 '중화민국 비거주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출국 신고를 했고, 이후 당해 연도에 대만에 재입국하여 합계 거류일수가 만 183일인 경우, '중화민국 거주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로 변경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납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16. 질문: 외국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기간에 주소지나 거류지를 없애고 출국할 경우 결산신고를 어떻게 하나?

답변: '중화민국거주 개인'이 연도 중에 중화민국내 주소지나 거류지를 없애고 출국할 경우, 출국하기 전에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결산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 가능한 면세액과 표준공제액 및 기본생활비는 해당 연도 전체 일수 중 중화민국내에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출국하기 전에 납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국의 승인을 받아 '중화민국거주 개인'에게 위임하여 납세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며, 미납된 세금이 있거나 회계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해 납세신고를 하지 않을 시, 국세국은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출국절차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 출국한 납세

의무자의 배우자가 '중화민국거주 개인'이고 중화민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그 배우자가 소득을 합산하여 이듬해 5월 31일 전까지 결산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가능한 면세액과 표준공제액 및 기본생활비는 전액 계산으로 공제할 수 있다.

17. 질문: 외국인 '통일번호(統一證號, ID No.)'란 무엇인가? 발급은 어디에서 받으며 번호는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는가?

답변: 2007년 1월 2일부터,

- (1) 내정부 이민서는 홍콩, 마카오, 중국 지역민과 화교를 대상으로 대만 지역 거류증을 발급할 때 통일번호도 함께 발급한다.
- (2) 내정부 이민서는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거류증 발급 시 통일번호도 함께 발급한다.
- (3) 상기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취득한 적은 없지만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여 이미 입국한 외국인이나 대만에 호적이 없는 자국민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여권을 갖고 내정부 이민서에 '중화민국 통일번호 등록표'를 신청할 수 있다.

통일번호의 부여방식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거류증에 기재하는 '통일번호' 10자리 중 첫번째 자리 숫자는 지역번호이며 2번째 숫자는 성별과 발급기관에 따라 A, B, C, D로 구분된다. 3번째부터 9번째 숫자는 일련번호, 10번째 숫자는 검증번호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Mr.Robert W. Davison가 소지한 외국인거류증의 번호는 AC12345678이며 통일번호도 AC12345678이다.
- (2) Ms. Carol Lee가 소지한 외국인거류증의 번호는 HD12345678이며 통일번호도 HD12345678이다.

비고: 외국인거류증이 없거나 외국인거류증 상에 통일번호가 없다면 내정부 이민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질문: 결산신고를 해야하는 외국인 종합소득세납세의 무자가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답변: 외국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결산 신고를 하지 않고 징수기관의 조사에 의해 과세해야 할 소득액이 발견될 시, 체납세금 납부 외에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제보가 있기 전이나 징수기관 또는 재정부가 지정한 직원이 조사하기 전 체납세금을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체납세금 외에 이자까지 합산해서 징수하며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다.

19. 질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이미 결산신고를 마쳤는데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답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산신고를 했으나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액에 누락 또는 축소가 있을 시, 체납세금 납부 외에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의적으로 사기나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경우 법원에 송치하여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납세의무자가 누락 또는 축소 신고 후 제보가 있기 전이나 징수기관 또는 재정부가 지정한 직원이 조사하기 전 체납세금을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체납세금 외에 이자까지 합산해서 징수하며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다.

20. 질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납세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답변: 납세의무자가 기한내 납세를 하지 않으면, 2일 초과 시 마다 미납세금에 1%의 체납금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30일을 초과할 경우 국세국이 법무부 행정집행서에 송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미납세금과 체

납금 납부 외에, 체납일 만료 익일부터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우체국적금 1년 만기 정기적금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매일 이자를 추가하여 합산해서 징수한다. 집행에 소요된 비용 또한 지불해야 한다.

21. 질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미납할 경우 국세국에서 어떤 보전조치를 취하는가?

답변: 다음의 3가지 경우로 나뉘서 답변할 수 있다.

- (1)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미납할 시, 국세국은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납세의무자의 체납세금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 이전 또는 기타 권리설정을 금지할 수 있다.
- (2) 세금을 미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 은닉 또는 이전, 세금도피 등의 징조가 발견될 시, 국세국은 납세의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 (3) 중화민국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가 미납한 세금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시, 재정부가 내정부 이민서에 출국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납세의무자가 이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출국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중화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미납이나 회계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해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국은 출입국 심사 담당기관에 통보하여 출국절차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

22. 질문: ‘개인소득 기본세액 신고서’에서 기본세액 신고자란 무엇인가?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다.

- (1) 신고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인소득 기본세액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a.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산신고 면제대상인 ‘중화민국비거주개인’

b. 종합소득세 신고 시 투자 감면 인센티브 미적용에 ‘해외소득’, ‘특정보험지급금’, ‘사모펀드 수익증권 거래소득’ 및 ‘비현금 기부 공제액’ 등 기본소득액에 포함되는 항목이 없는 자

c. 기본소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기 항목이 있으나 신고가구의 기본소득액이 NT\$670만이하인 자

(2) 상기 조건에 맞지 않는 신고가구는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 기본세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본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23. 질문: 개인기본소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답변: 개인기본소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순액 (즉 일반결산신고서의 세액계산식의 AE또는 AJ+AL금액)

(2) 해외소득: 종합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중화민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 및 홍콩/마카오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 1신고가구의 연간 합계 금액이 NT\$100만미만인 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며 NT\$100만이상인 경우 전액 포함해야 한다.

(3) 특정보험지급금: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인 아닌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지급금으로 단, 사망지급금의 1신고가구 연간 합계 금액이 NT\$3,330만이하인 경우 일부는 포함하지 않는다.

(4) 사모펀드 수익증권의 거래소득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하는 비현금 기부금액

(6) 종합소득세 결산 신고시 배당액 및 잉여액을 나누어서 계산했을 경우 둘의 합계 금액이다.

24. 질문: 주택토지거래소득세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주택토지거래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답변:

- (1) 2016년부터 시행되는 주택토지거래소득세제도에 따라, 주택 및 토지 매각 시, 주택과 토지 전부의 실금액을 계산하고 이미 토지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토지의 가격증가총액을 제하고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2) 외국인은 2016년 1월 1일부터 아래의 주택, 주택 및 용지를 거래하거나 법에 따라 건설면허를 발급받은 토지(이하 주택 및 토지)는 신규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a. 2014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고 소유기간 2년 이내의 주택 및 토지
 - b.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및 토지
 - c. 개인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지상권 설정 방식의 주택사용권

25. 질문: 개인주택토지거래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

답변: 개인이 매각을 한 당해 연도에 대만내 거주 여부와 주택 및 토지 소유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주택 및 토지 소유상황	적용세율	
거주자	소유기간	1년 이내	45%
		1년 초과~2년 이내	35%
		2년 초과~10년 이내	20%
		10년 초과	15%
	자가주택토지조세혜택에 부합 (※개인 또는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호적 등록이 되어 있고, 연속 만 6년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며, 거래 전 6년간 임대, 영업 또는 업무에 사용한 적이 없으며 6년 내 1회로 한정함)	1. 과세소득 NT\$400만이하: 면세 2. NT\$400 초과 부분:10%	
비거주자	1년 이내	45%	
	1년 초과	35%	

26. 질문: 주택토지거래소득세 신규규제가 적용되는 주택 및 토지를 개인이 거래할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무엇이 있는가?

답변: 개인이 매각을 한 당해 연도에 대만내 거주 여부와 주택 및 토지 소유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된다.

- (1) 주택토지거래소득세 신규 규정에 따라, 주택 및 토지의 거래소득은 분리해서 납세신고를 하며 개인은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익일부터 30일 내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당시 거류증에 기재된 주소의 관할 국세국에 신고해야 한다(비거주자는 주택 및 토지 소재지 징수기관에 신고). 해당 거래소득은 거래 연도 종합소득 총액에 합산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2) 납세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a. 개인주택토지거래소득세 신고서 1부
 - b. 계산결과 자체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함
 - c. 부동산 또는 주택 사용권 매입과 매각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 d. 원가 및 필요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 e. 기타 관련 서류

27. 질문: 주택토지거래소득세의 신규 과세범위가 적용되는 주택 및 토지를 외국인이 거래할 때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답변: 이 문제는 아래의 3가지 상황으로 설명 가능하다.

- (1) 외국인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NT\$3,000 이상, NT\$30,000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납세금이 있다면 법에 따른 미납세금 추가징수 외에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상기 2가지 벌금 중 가장 높은 벌금으로 처벌한다.

- (2) 외국인이 규정에 따라 국세국에 주택 및 토지 거래 소득을 신고하였으나 규정 기한내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주택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 익일부터 30일까지 2일 초과 시 마다 미납세금에 1% 체납금을 추가하여 납부하며, 30일 경과 후에도 미납할 경우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다.
- (3) 외국인이 규정에 따라 국세국에 주택 및 토지 거래 소득을 신고하였으나 실제소득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수기관으로부터 법에 따른 미납세금 추가징수 외에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비고: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규범일 뿐이며 실제 과세는 중화민국소득세법 규정을 따른다. 법령 변동 사항은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홈페이지 (<http://www.ntbt.gov.tw>) 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02)2311-3711 내선:1116, 1118]로 문의 가능하다.

(ii)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

1. 질문: 외국인이 대만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영업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답변:(1) 중화민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재화를 수입할 시,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적합하여 영업세 면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1조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부과한다.

- (2) 외국인이 중화민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영업 시작 전 회사, 상업 및 주식회사 파트너 상업등록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에 회사, 상업, 주식회사 파트너 등의 영업등록을 마친 후, 영업 소재지 국세국 산하 분국 또는 세금 징수처(稽徵所)가 회사 또는 상업등록 주무기관에서 제공한 등록기

본자료를 토대로 세적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영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영업인 판매영수증 개설시한표에서 규정한 시한에 따라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개설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한 후, 매출액 여부와 상관없이 2개월을 1기로 매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15일에 징수 주무기관에 지난 기의 매출액, 미납 또는 과납 영업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영업세액이 있을 경우, 우선 공고(公庫)에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동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월별 영업세 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1달을 1기로 익월 15일 전에 전항 규정에 따라 징수주무기관에 매출액, 납부예정 또는 과납 영업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영업의 성질이 특수한 사업자 및 소규모 영업자는 일반영수증을 발급하고 통일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징수주무기관이 매출액과 세액을 평가한 후, 평가세액을 토대로 납세액을 산정하고 징수주무기관이 1월, 4월, 7월 및 10월 말에 각각 나누어 납부통지서를 발송한다.

- (3) 2017년 5월 1일부터 외국사업체, 기관, 단체, 조직이 중화민국내에서 고정된 사업장 없이 전자서비스를 중화민국내 자연인에게 판매하고 연매출액이 대만달러 4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부 세무포탈사이트 해외전자상거래 과세 전용 메뉴의 세적등록시스템에 세적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개월을 1기로 매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15일 전에 동 메뉴에서 지난 기 매출액, 납부예정 또는 과납 영업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납부해야 할 영업세액이 있다면 역시 공고(公庫)에 납부해야 한다.

2. 질문: 외국인이 물품 구매 후 통일영수증(統一發票)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답변:(1)통일영수증 당첨이벤트

홀수달 25일에 2개월 이전의 통일영수증 당첨번호를 추첨하고 익일(26일) 신문지면을 통해 발표한다. 당첨자는 발표일 다음달 6일부터 3개월내에 여권이나 거류증 등 증명서류와 당첨된 영수증을 들고 각지 당첨금 지급 대행기관에서 당첨금을 수령한다. 의문이 있을 경우 재금정보사(주) 고객상담센터: 4128282에 문의, 또는 재정부 세무포탈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 통일영수증 홍보이벤트 참여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은 비정기적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외국인도 타이베이시 통일영수증으로 상품을 교환 받을 수 있다.

3. 외국인 관광객 특정 물품 구매 후 영업세 환급 신청 안내

(1) 적용대상:

아래의 서류로 입국하고 중화민국내 체류일수가 입국일로부터 183일 미만인 외국인 관광객:

- a. 중화민국 여권을 제외한 외국여권
- b. 국민신분증 통일번호가 없는 중화민국 여권
- c. 여행증
- d. 입출국허가증 (내정부이민서가 발급한 입출국허가 신분증 포함)
- e. 임시체류허가증 (주: 국제공항 또는 국제항구에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소액환급과 지정시내환급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세율 및 계산식:

- a. 세율: 5%

- b. 환급서비스 수수료: 14%
- c. 환급신고세액=영수증금액(세금포함)÷1.05×0.05(소수점 이하 반올림)
- d. 환급금 순액=환급신고세액-환급신고세액×0.14(소수점 이하 절사)

(3) 환급 신청 가능 물품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표시가 붙어있는 지정상점에서 구매하고 여행시 휴대하고 출국할 수 있는 세금이 포함된 물품이 이에 속한다. 단, 다음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a. 안전상의 이유로 비행기나 선박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예:인화성물품, 고압가스용기, 부식성물질, 자기성물질, 독성물질, 폭약, 도난방지알람이 있는 서류가방및 소형여행가방, 강한 산화제, 방사능물질 또는 기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규정한 안전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
- b. 각 항공운송회사의 기내 반입 제한 규정에 속하는 물품
- c. 휴대하지 않은 물품
- d. 출국 전에 이미 양도, 개봉사용, 소모 또는 사적으로 교환한 특정물품

주: 숙박비, 식음료비 및 면세물품 등 지출은 환급 신청 가능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외국인 관광객 환급 신청을 위한 최소구매금액(세금포함):

외국인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표시가 붙어있는 지정상점에서 물품 구매 시, 동일 일자의 동일 지정상점 구매 금액이NT\$2,000 이상(세금포함)이면 구매 당일 상점 직원에게 입국 시 제출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환급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5) 외국인 관광객 환급 관련 주의사항

	공항 및 항구 환급	현장소액환급	지정시내환급
신청장소	아래 표시가 부착된 공항 및 항구 환급 창구: 	아래 표시가 부착된 지정상점: 	아래 표시가 부착된 지정시내환급창구: 
신청시점	출국 시 수하물을 탁송하기 전	구매 당일	출국 전 20일내
물품휴대 출국기한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환급 신청일 로부터 20일 이내
환급신청 구비서류	1.입국 여권 2.구매 후 받은 통일 영수증 또는 전자 영수증 3.환급명세신청서	1.입국 여권 2.구매 후 받은 통 일영수증 또는 전 자영수증	1.입국 여권 2.구매 후 받은 통일 영수증 또는 전자영 수증 3.환급명세신청서 4.국제 신용카드 회사 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특이사항	1.소비자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해 3시간 전에 공항이나 항 구에 도착하여 환 급절차를 진행한 다. 2.타오위안국제공항 에서 출국하는 관 광객은 세금 포함 한 소비금액이 NT\$48,000 이하(현 장소액환급 및 지 정시내환급 내역 불포함)일 경우, 출 국 당일 공항전철 타이베이기차역(타 이베이車站)A1에서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	1.동일 일자의 동일 지정상점 (세금포 함)구매 금액이 NT\$48,000 이하이 면 현장소액환급 을 신청할 수 있 다. 2.아래의 경우에는 현장소액환급이 불가하니 출국 전 공항이나 항구에 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1)관광객이 현장소 액환급을 신청할 때 세금 포함 합 계 소비금액이 NT\$120,000을 초 과한 경우 (2)동일 연도 복수 방문한 관광객이 현장소액환급을 신청할 때 세금 포함 합계 소비 금액이	1.관광객 환급시스 템 상 입국기록이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 환급명세 신청서를 지참 한 자는 지정시 내 환급창구(설 치 지점은 타이 베이101 빌딩, 신광산위에 타 이베이 신이신 텐디 A8관, SOGO백화점 중샤오관 및 가 오송 한선 백화 점 포함)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신용카드로 보 증금 (세금 포함 소비금액의 7%) 을 선지불해야 하며 출국 전에 공항 및 항구의 전자자동환급기 나 환급창구에서 검사 여부를 확 인한다. 세관 에서 부적합 판 정을 내리면 환 급창구로 가서 환급금을

	공항 및 항구 환급	현장소액환급	지정시내환급
		NT\$240,000을 초과한 경우 (3) 관광객 환급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없는 자	반납하고 선불 보증금을 취소시킨다. 3. 환급 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할 수 없을 경우, 출국 전 지정시내환급창구나 공항 및 항구에서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4. 아래의 경우에는 선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1) 출국 시, 공항 및 항구 환급창구에서 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검사를 받아야 하나 세관에 검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세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기타 주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관 검사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미 환급을 마친 특정물품 중 출국 전 세관 검사에서 개봉 후 사용했거나 임의로 물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항 및 항구내 환급창구에서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 2. 환급 절차를 완료하고 세관의 검사를 받은 후 수하물을 수탁해야 환급금 반납을 피할 수 있다. 3. 규정에 따라 기수령(초과수령)한 환급금을 반납해야 하나 반납하지 않은 경우, 기수령(초과수령)한 환급금을 반납하기 전까지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4. 대만에서 특정물품을 구매하고 최초 출국 전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은 했으나 환급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 사후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 5. 환급금 수령 후 사정이 생겨 출국을 하지 못하고 비통제구역으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신고(red channel)창구에서 세관 신고를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6. 인터넷 접속오류로 지정상점 환급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경우, 시스템 정상복구 이후 다시 처리하거나 출국 전 공항 또는 항구에서 환급을 진행한다. 7. 재정부에서 허가한 전자영수증을 소지한 경우 현장 소액 환급시 환급명세표 상의 서명은 생략 가능하다. 		

(6) 세금환급절차 안내:

외국인 관광객은 3시간 전에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하여 전자자동환급기 또는 환급창구에서 환급등 관련 출국 절차를 진행한다.

수하물을 수탁하기 전, 입국 여권(허가증)과 환급명세 신청서를 들고 전자자동환급기나 환급창구에서 여권과 환급명세자료를 스캔하면 환급시스템에 세관 검사여부가 뜬다. 세관 검사가 필요없는 물품은 전자자동환급기나 환급창구에서 환급을 진행하면 된다.

- a. 세관 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 (a) 검사서(전자자동환급기에서 인쇄)
 - (b) 환급명세신청서
 - (c) 개인 여권(여권,여행증,입출국증 또는 임시체류허가증)
 - (d) '환급가능물품' 및 '여권번호 끝4자리'가 표기된 통일영수증 또는 전자영수증
 - (e) 구입한 특정상품
- b. 환급방법으로는 현금환급, 신용카드(VISA, Master, JCB, 유니온페이)환급, 수표환급이 있다. 현금환급을 택한 경우, 전자자동환급기나 환급창구에서 발급한 '외국인 관광객 특정물품 구매 시 환급명세확정서'를 들고 출국공항이나 항구에 설치된 지정은행 또는 현금창구에서 환급금을 수령한다.
- c. 신용카드나 수표로 환급을 원할 경우, 전자자동환급기에서 진행하거나 환급창구에서 신용카드(VISA, Master, JCB,유니온페이)환급이나 수표환급을 진행한다.

(7) 반품 및 교환 주의사항

- a. 출국 전 반품/교환 절차
 - (a)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물품을 구매한 지정상점에서 진행한다.
 - I. 물품 구매 후 받은 통일영수증 또는 전자영수증

II. 물품 구매 후 발급받은 환급명세신청서 또는 현
장소액환급확정서

- (b) 반품 및 교환 후 당일 특정물품 구매 누적금액(세금 포함)이 NT\$2,000 미만일 경우, 외국인관광객은 해당 세금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환급금을 초과수령한 경우 물품을 구매한 지정상점에 반납해야 한다.
- (c) 지정시내환급을 이미 완료한 경우, 지정시내 환급창구에서 선불보증금을 재결제 하거나 초과수령한 환급금을 반납한다.

b.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반품/교환 절차

- (a) 물품 구매 후 받은 통일영수증 또는 전자영수증을 들고 물품을 구매한 지정상점에서 진행한다.
- (b) 반품 및 교환 후 환급금을 초과수령한 경우 물품을 구매한 지정상점에 반납해야 하며 ‘외국인관광객 구매환급업무 영업세 반납’ 필증을 수령하여 반납 증거로 사용한다.
- (c) 환급물품을 소지한채 재입국할 시 물품의 납세 완료 가격이 NT\$2만을 초과할 경우, 입국 시 세관신고(red channel)창구에서 세관 신고를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비고:

1. 민영환급업자: 중화텔레콤 기업고객지점
무료고객센터: 0800-880-288
홈페이지: www.taxrefund.net.tw
2.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전화번호: (02)2311-3711내선전화를 통해 영업세국(營業稅股)로 연결
홈페이지: www.ntbt.gov.tw

Ⅱ 타이베이시 세금징수처

(i) 토지가격세(地價稅)

1. 질문: 토지가격세는 언제부터 납부하나?

답변: 토지가격세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부한다.

2. 질문: 자가소유주택용지란 무엇인가?

답변: 자가소유주택용지란 토지소유권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이 해당 지역에서 호적등록을 마치고 임대를 했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주택용지를 말한다.

3. 질문: 자가소유주택용지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기간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세를 과세하는 신청기간은 언제인가?

답변: 토지소유권자는 늦어도 매년 9월 2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 시 신청일 이듬해부터 적용된다.

4. 질문: 자가소유주택용지 세율을 적용한 토지가격세 과세 신청이 가능한 토지의 조건은 무엇인가?

답변: 자가소유주택용지 세율을 적용한 토지가격세로 과세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토지소유권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이 해당 지역에서 호적등록을 완료함
- (2) 지상 주택이 임대 또는 영업중이 아닌 주택용지
- (3) 도시토지면적은 300제곱미터로 제한함. 비도시토지면적은 700제곱미터로 제한함
- (4) 지상 주택은 토지소유권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소유임
- (5) 토지소유권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부양가족의 자가소유주택용지가 한 곳뿐임

5. 질문: 토지가격세 자가소유주택용지의 세율은 얼마인가?

답변: 토지가격세 자가소유주택용지의 세율은 0.2%이다.

6. 질문: 자가소유주택용지의 세율을신청해서 토지가격세를 과세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답변: 건축개량물 증명서류와 해당 지역에서 발급받은 외국인거류등록증 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ii) 토지부가가치세

1. 질문: 토지부가가치세는 언제 납부하나?

답변: 이미 토지가격이 정해진 토지는 토지소유권 이전 시 토지 인상가 총액에 따라 토지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질문: 토지부가가치세 자가소유주택용지의 세율은 얼마인가?

답변: 토지이전 시 자가소유주택용지 요건에 맞을 경우, 토지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이다.

3. 질문: 자가소유주택용지 세율로 토지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면적 제한이 있는가?

답변: 토지소유권자가 '생애 최초' 자가소유주택용지세율을 신청하여 토지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시, 그 면적제한은 도시토지는 3아르(300m^2)를 초과하지 않으며 비도시토지는 7아르(700m^2)를 초과하지 않는다. '생애 1주택' 자가소유주택용지 세율을 신청하여 토지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시, 그 면적제한은 도시토지는 1.5아르(150m^2)를 초과하지 않으며 비도시토지는 3.5아르(350m^2)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질문: 외국인이 토지를 매각할 때 '생애 최초 자가소유 주택용지 세율'로 토지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답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할 때 토지매각 전 1년

동안 대만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거류등록을 마쳤고 그 매각하는 토지가 자가소유주택용지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생애 최초 자가소유주택용지세율'로 토지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

5. 질문: 외국인이 토지를 매각할 때 자가소유주택용지세율을 적용한 토지부가가치세 과세를 신청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어떻게 신청하나?

답변: 외국인이 토지를 매각할 때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토지 소재지의 세금지부(稅捐分處)에 토지 이전 현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자가소유주택용지세율을 적용한 토지부가가치세 과세 신청을 원할 경우, 토지이전 현가액 신고서에 '자가소유주택용지세율 적용 과세'를 체크하고 계약서, 외국인거류등록증, 여권 사본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iii) 주택세

1. 질문: 주택세는 언제부터 납부하나?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답변: 주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납부한다. 과세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이다.

2. 질문: 타이베이시 주택세 세율은 얼마인가?

답변: 주택세 세율은 주택의 실사용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1) 자가거주자 또는 공익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임대 시:
주택 현가의 1.2% 과세
- (2) 기타 주거용으로 사용 시:
 - a. 기타 자가거주 시: 보유가구수가 2가구 이하인 경우 가구당 주택 현가의 2.4% 과세, 3가구 이상 보유한 경우 가구당 주택 현가의 3.6% 과세

- b. 공유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 현가의 1.5% 과세
 - c. 타이베이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 조건 부합자에게 임대하고 관할기관이 발급한 임대허가 공문을 소지한 경우: 주택 현가의 1.5% 과세
 - d. 근로자 관할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근로자 기숙사: 주택 현가의 1.5% 과세
 - e. 민간단체와 관할기관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 및 건축을 거쳐 해당 학교 학생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또한 동 사용기간 만료시 해당 기숙사의 소유권은 정부에 이전된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주택 현가의 1.5% 과세.
 - f. 회사 공동 소유일 경우 자가거주에 해당하는 공동 소유인을 제외하고 주택 현가의 2.4% 과세
- (3) 영업, 개인병원, 진료소, 프리랜서 사무실로 사용 시: 주택 현가의 3% 과세
- (4) 인민단체 등 비주거 및 비영업용으로 사용 시: 주택 현가의 2% 과세
- (5) 건축허가신청인이 매도 목적의 비어 있는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또는 2017년 7월 1일 이후에 사용허가증을 발급받고 과세후로부터 3년 이내까지 매도하지 않은 자: 현재 주택 가치의 1.5% 과세.
- (6) 주택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동시 사용 시: 실사용면적에 따라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세율로 각각 과세해야 한다. 단, 비주거용일 경우 과세면적이 전체면적의 1/6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3. 질문: 연도내 주택사용상황이 변경될 경우 주택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종목을 어떻게 변경하나?

답변: 주택세는 월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사용 상황이나 보유가구수에 변동이 발생할 시 30일 이내에 전화, 팩스 또는 신청서 제출 등 방식으로 주택 소재지 세

금지부에 과세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월 16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며, 변경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당월에 변경된 세율이 적용된다.

(iv) 취득세

1.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

답변: 주택 매매, 저당, 교환, 증여, 분할 또는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 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2. 질문: 취득세 세율은 얼마인가?

답변: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매매취득세는 계약가액의 6%
- (2) 전권(典權)취득세는 계약가액의 4%
- (3) 교환취득세는 계약가액의 2%
- (4) 증여취득세는 계약가액의 6%
- (5) 분할취득세는 계약가액의 2%
- (6) 점유취득세는 계약가액의 6%

3. 질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고하나?

답변: 주택을 취득한 신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을 이전할 시, 신소유자는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 소재지 세금지부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을 이전할 시, 신소유자와 원소유자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v) 자동차면허세

1. 질문: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자동차면허세는 매년 언제 납부하나?

답변: 자가용 자동차 및 151cc(151cc포함)이상 오토바이의 자동차면허세는 매년 1회 납부하며 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영업용 자동차는 상, 하

반기 2차례 납부하며 상반기 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2. 질문: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자동차면허세는 어떻게 산정하여 징수하나?

답변: 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모터의 최대마력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자동차면허세법의 자동차분류세액표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3. 질문: 장애인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자동차면허세 감면 혜택이 있나?

답변: 장애인수첩이나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전면허가 있는 자가 사용하고 해당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1인당 1대에 한해 자동차면허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심신장애로 인해 운전면허가 없으나 본인,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의 2촌 등 이내의 친족이 소유하고 해당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1인당 1대에 한해 자동차면허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총배기량이 2,400cc를 초과하거나 완전히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모터의 최대마력이 262HP 또는 265.9PS를 초과하는 경우, 2,400cc, 262HP 또는 265.9PS 차량의 세액에 한해서만 면제되며 초과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vi) 인지세

1. 질문: 인지세의 과세범위는?

답변: (1) 금전영수증: 금전 수령 후 발급하는 증표
(2) 동산매매계약증서: 동산 매매 시 발급한 증서
(3) 수주계약증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위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가 완수되면 다른 일방이 지급하는 보수의 증서
(4) 부동산 전매(典賣: 장차 원가로 되산다는 조건을 붙여 파는 일), 양수 및 분할 계약증서: 부동산

전권(典權)설정 및 매매, 교환, 증여, 분할 후 발급한 것으로 지정(地政)기관에 물건등기 신청 시 사용하는 계약증서

2. 질문: 인지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답변: (1) 금전영수증: 건당 금액의 4%의 인지 부착
 (2) 동산매매계약증서: 건당 NT\$12의 인지 부착
 (3) 수주계약증서: 건당 금액의 1%의 인지 부착
 (4) 부동산 전매(典賣), 양수 및 분할 계약증서: 건당 금액의 1%의 인지 부착

3. 질문: 인지세는 언제 납부하나?

답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증표를 발급받은 후 교부 또는 사용 시인지를 부착해야 한다.

4. 질문: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답변: 증표를 발급하는 계약자가 우체국에서 인지를 구매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증표에 부착하여 규정에 따라 소인을 찍는다. 금액이 방대해서 인지를 부착할 수 없다면, 가까운 지방의 세금징수기관에 인지세납부서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에 납부 후 납세한 납부서를 증표에 부착하면 된다.

(vii) 타이베이시 세금징수처 및 각 지부(分處)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총처(總處)	(02)2394-9211 (02)6632-7979	(02)2351-4382	100009臺北市中正區北平東路7之2號 d03010990@mail.taipei.gov.tw
중정(中正)지부	(02)2393-9386 (02)6630-0101	(02)2393-0994	100009臺北市中正區北平東路7之2號1樓 d03010110@mail.taipei.gov.tw
다통(大同)지부	(02)2587-3650 (02)6619-5511	(02)2593-0103	103026臺北市大同區昌吉街57號3樓之2 d03010120@mail.taipei.gov.tw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중산(中山)지부	(02)2503-9221 (02)6608-5252	(02)2501-3265	104257臺北市中山區松江路 367號3樓 d03010070@mail.taipei.gov.tw
완화(萬華)지부	(02)2302-1191 (02)6632-9292	(02)2336-7245	108220臺北市萬華區和平西 路3段120號6樓 d03010150@mail.taipei.gov.tw
신이(信義)지부	(02)2723-5067 (02)6639-9922	(02)2722-3867	110203臺北市信義區信義路5 段15號3樓 d03010090@mail.taipei.gov.tw
쑹산(松山)지부	(02)2570-3911 (02)6601-2727	(02)2577-9893	105046臺北市松山區八德路3 段178號3樓 d03010080@mail.taipei.gov.tw
주타이베이 감리소 (자동차면허세)	(02)2753-4416	(02)2767-9278	105210臺北市松山區八德路4 段21號3樓 d03010990@mail.taipei.gov.tw
난강(南港)지부	(02)2783-4254 (02)6616-0202	(02)2782-3099	115203臺北市南港區南港路1 段360號3樓 d03010170@mail.taipei.gov.tw
원산(文山)지부	(02)2234-3518 (02)6629-8585	(02)2234-3519	116201臺北市文山區木柵路3 段220號4樓 d03010160@mail.taipei.gov.tw
다안(大安)지부	(02)2358-1770 (02)6630-0055	(02)2341-2589	106206臺北市大安區新生南 路2段86號3樓 d03010100@mail.taipei.gov.tw
스린(士林)지부	(02)2831-8101 (02)6611-0909	(02)2831-8106	111043臺北市士林區美崙街 41號 d03010130@mail.taipei.gov.tw
주타이베이 감리소 스린(士林)감리장 (자동차면허세)	(02)2831-5444	(02)8866-3255	111063臺北市士林區承德路5 段80號2樓 d03010990@mail.taipei.gov.tw
베이터우(北投)지부	(02)2895-1341 (02)6610-9797	(02)2895-2132	112203臺北市北投區新市街 30號3樓 d03010140@mail.taipei.gov.tw
네이후(內湖)지부	(02)2792-2059 (02)6601-5353	(02)2791-8544	114020臺北市內湖區民權東 路6段99號2樓 d03010180@mail.taipei.gov.tw
◎지방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금징수처 각 지부에 문의할 수 있다.			

제 10 장 환경보호국

I 자원 재활용

(i)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1. 환경보호국 야간수거차량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평면형 재활용품(깨끗한 헌옷, 폐지류, 비닐봉투류 및 헌책류)을, 매주 화, 목, 토요일에는 입체형 재활용품 [일반 재활용품(병, 캔, 용기, 소형가전 등) 및 깨끗한 스티로폼류]을 수거한다.
2. 민간수거업자에게 보낸다.
3. 재활용 표시「♻」가 있는 각종 용기나 건전지는 편의점에 있는 수거통(함)에 넣으면 된다.
4. 지역사회에서 베품시장을 개최하여 물물교환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인다.
5. 아파트, 고층빌딩, 지역사회 또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재활용품수거함’에 넣는다.

(ii) 타이베이시 재활용품 분류항목 일람표

입체류(매주 화, 목, 토 수거)	
일반 재활용품	깨끗한 스티로폼류
각종 병, 캔, 종이용기(종이도시락, 종이컵, 알루미늄팩, 우유 및 음료 종이팩 등), 소형가전(휴대폰, 드라이기, 스탠드조명, 전화기, 팩스기, 비디오,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 청소기, 휴대용 라디오, 포충등, 전기모기채, 전자게임기, 플라스틱 전구커버), 컴퓨터 본체,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스캐너, 태블릿PC, 외장하드, 폐플라스틱, 폐금속, 아크릴, 플라스틱 호스, ABS플라스틱, 변기뚜껑, 페타이어, 녹음(녹화)테이프(속에 있는 테이프는 제거해야 함)	스티로폼 식기류, 공업용 스티로폼(완충재), 과일 보호망
재활용 불가품목	형광등, 탈장난감, 자전거패드, 우레탄폼(속재질, 스펀지), 각종 신발, 노끈, 화이트보드, 각종 공류, 플라스틱 화분, 나무도시락, 속타이어, 오토바이 시트

평면류(매주 월, 금 수거)			
깨끗한 헌옷	폐지류	비닐봉투류	헌책
각종 깨끗한 헌옷(깨끗하면서 탄성이 완전한 여성속옷도 포함)	빵(케익)상자, 각종종이상자(박스), 음료컵세트, 잡지, 종이봉투, 재생종이 등	깨끗한 비닐봉투(기름, 국물, 피, 물 등이 들어 있지 않는 것)	다른 폐지와 분리해서 묶은 후 배출. 200권 이상일 경우, 각 구별 환경미화단에 연락하여 시간을 정한 후 수거하도록 함
재활용 불가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페트, 발매트, 목욕수건, 수건, 모자, 이불, 베개, 침대시트, 침대커버, 팬티속옷, 천(천조각 포함), 신발, 양말, 커튼, 식탁보, 앞치마 및 물에 젖거나 더럽거나 낡았거나 냄새가 나는 수거할 가치가 없는 헌옷 -플라스틱 유광지, 먹지, 코팅지 및 박리지, 화장지(생리대), 기저귀, 인화지 -기름, 국물, 피, 물 등이 묻어있는 비닐봉투, 복합재질의 비닐봉투 (과자포장봉투) 		
기타류(매주 월, 화, 목, 금, 토 수거)			
전등, 건전지, 폐유 및 기타	퇴비용 음식물쓰레기	돼지사료용 음식물쓰레기	
<p>1. 각종 전등(냉음극 형광램프, 센서형광등, 기타 수은램프), 각종 전구, HID등, 건전지, 휴대용충전기, 환경위생용 의약품 폐용기, CD, 수은체온계, 윤활유, 식용유</p> <p>* 잘 담아서 분리배출해야 함.</p> <p>2. 기타류: 폐기여행용가방(2개 이하), 폐기안전모, 폐기 우산, 및 폐기 상패(트로피)</p>	<p>1. 분류원칙: 식용할 수 없는 유기자재: 과일껍질, 식재료 껍데기, 뼈, 과일씨, 꽃, 나뭇잎, 차 찌꺼기, 커피 찌꺼기, 돼지에 먹일 수 없는 시큼한 부패한 식재</p> <p>* 코코넛 껍질, 두리안 껍질은 따로 분리하여 수거차량에 회수</p> <p>* 휴지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p>	<p>분류원칙: 가정에서 재활용 할 수 없는 음식물과 식재료, 익힌 후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것, 생것이든 익은 것이든 모두 가능.</p> <p>예: 육류, 내장, 채소, 과일, 냉동식품 및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부패하지 않은 식재료와 조미료류</p>	
시간 약속 후 수거 (각 구별 환경미화단에 연락)			
대형가구, 가전 및 4대가전(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냉/난방기)			
레인지후드, 스프링매트리스, 침대프레임, 카트, 자전거, 선풍기, 가스난로, 대형정수기, 소파, 책걸상, 찬장,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냉방기, 3개 이상의 폐기 여행용가방			

에코컵 사용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자!

2011년 5월 1일부터 타이베이시내 음료체인점, 편의점체인 및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본인의 텀블러를 지참하고 음료수를 구매하면 할인 또는 포인트적립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타이베이시 환경보호국은 시민들이 밖에서 식음료품을 구매할 때 에코백, 젓가락 또는 텀블러를 지참하여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II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家戶廚餘回收快訊

- (i) 타이베이시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수거하고 있어 분리배출에 많은 협조를 바라고 있다.
- (ii)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비돼지사료)용’과 ‘돼지사료용’으로 나뉘어서 배출해야 한다.
- (iii) 삶아서 익힌 후에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돼지사료용’, 먹을 수 없는 것은 ‘퇴비(비돼지사료)용’ 음식물쓰레기이다.
- (iv)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시간과 장소는 일반쓰레기의 수거시간과 장소와 동일하다.
- (v)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에 음식물이 아닌 기타 일반쓰레기를 혼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NT\$1,200~6,000벌금에 처할 수 있다.
- (vi)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수분을 제거하고 가능한 음식물쓰레기통 등 용기에 담아서 수거차량이 도착하면 ‘돼지사료용 음식물쓰레기’와 ‘퇴비(비돼지사료)용 음식물쓰레기’통에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
- (vii) 비닐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후, 비닐봉투를 쓰레기차나 수거통에 버리면 된다.
- (viii) 음식을 먹을 만큼만 만들면 버려지는 음식도 없고 음

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 (ix) 더 이상 먹지 않는 반찬들은 최대한 일찍 배출한다.
- (x)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겉포장을 제거해야 하며 젓가락, 숟가락, 이쑤시개, 냅킨 등 이물질과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에 혼입해서는 아니 된다.
- (xi) 코코넛 껍데기와 두리안 껍데기는 본국에서 수거한 후 분쇄를 해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에 혼입하지 말고 별도의 봉투에 담아 쓰레기차에 주면 된다.
- (xii)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분리배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02)2720-8889(내선번호: 7291)로 문의하면 된다.

Ⅲ 쓰레기 수거

2003년 12월부터 가정용쓰레기, 재활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 수거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시간을 감안하여 본국은 12개 구에 쓰레기배출지 33개소를 설치하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수거하고 있다. 배출시간은 매일 6:00~23:00이며 자세한 사항은 본국 홈페이지→환경 청결→쓰레기수거동선

(<http://www.dep-in.gov.taipei/epb/iframe/trash.aspx>)에서 확인 가능하다.

각 행정구별 환경미화단 전화번호 및 사무실 주소

환경미화단	주소	전화번호	환경미화단	주소	전화번호
쑹산(松山)구 환경미화단	臺北市民生東 路4段133號4樓	(02)2514-7712	원산(文山)구	臺北市木柵路3 段220號7樓	(02)2936-3050
		(02)2514-7713	환경미화단		(02)2936-3051
신이(信義)구 환경미화단	臺北市信義路5 段15號8樓	(02)2723-4982	난강(南港)구	臺北市南港路1 段360號7樓	(02)2783-4725
		(02)2723-4990	환경미화단		(02)2783-2691
다안(大安)구 환경미화단	臺北市通化街 140巷19號	(02)2737-1303	내이후(內湖) 구	臺北市成功路2 段320巷19號4樓	(02)2791-7730
		(02)2736-4342	환경미화 단		(02)2794-5759

환경미화단	주소	전화번호	환경미화단	주소	전화번호
중산(中山)구 환경미화단	臺北市松江路 367號7樓之2	(02)2503-3447	스린(士林)구	臺北市中正路 439號7樓	(02)2883-0962
		(02)2502-2264	환경미화단		(02)2883-0963
중정(中正)구 환경미화단	臺北市重慶南 路三段6號1-2樓	(02)2332-0725	베이더우(北 投)구 환경미 화단	臺北市石牌路2 段115號3樓	(02)2821-8867
		(02)2332-0726			(02)2822-9604
다통(大同)구 환경미화단	臺北市昌吉街 57號4樓之7	(02)2594-9904	완화(萬華)구 환경미화단	臺北市環河南路 2段102號5樓	(02)2302-2988
		(02)2594-8437			(02)2306-9144
재생품 수거	臺北市內湖區 行忠路178巷1 號	(02)2791-9622			
		(02)2791-9532			
완화(萬華) 재생가구 전시경매장	臺北市環河南 路2段102號1樓	(02)2308-2600	내이후(內湖) 재생가구 전 시경매장	臺北市內湖區行 忠路178巷1號	(02)2796-2062
초대형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 가정용폐기물(1건)은 각 구별 환경미화단과 연락을 취해 수거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된다.					

IV 타이베이시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1. 타이베이시는 2000년 7월부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타이베이시에 거주할 시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버려야하며 분국과 계약 체결을 통해 쓰레기전용봉투 판매 표시가 부착된 판매소에서 구매 후 사용해야 가짜 봉투 사용으로 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 쓰레기 전용봉투 사이즈는 총 7가지이다.

사이즈	장수/묶음	판매가(단위: TWD)
3L 봉투	20장	\$21
5L 봉투	20장	\$36
14L 봉투	20장	\$100
25L 봉투	20장	\$180
33L 봉투	20장	\$237
76L 봉투	10장	\$273
120L 봉투	5장	\$216

3. 쇼핑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고자 쇼핑 및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 전용 봉투를 보급하고 있다. 환경보호 쓰레기봉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7-11(統一), 패밀리마트(全家), Hi-Life(萊爾富), PX Mart(全聯), 라이라이(來

來), Wellcome(頂好), Mercuries(三商家購), 타이탕(台糖), 까르푸, POYA(寶雅), sun-organism(棉花田), Imei food(義美), 다이소(台灣大創), 통지엔(統健), 이완리(億萬里) 및 안용(安永) 등 대형마트, 편의점 및 일반상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품명 규격	용량(리터)	판매(위안/개)	비고
소형봉투	3	1	입체식
중형봉투	6	2	
대형봉투	14	5	

V 공해 및 환경보호 신고전화

공해에 관한 민원이나 제보가 있을 시 타이베이시 콜센터 1999(타지역:02-2720-8889)에 문의하면 된다.

VI 폐기물 처리법 준수

길가에 침/빈랑(檳榔)즙/빈랑(檳榔)찌꺼기 뺐기, 쓰레기/담배꽂초/껍/과일 및 껍질, 씨, 즙, 찌꺼기 버리기 또는 기타 일반폐기물 투기 등 행위는 NT\$1,200~6,0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VII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팁

식(음식): *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자원과 금전 절약하기 * 현지 및 제철 식자재 구매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 개인식기 사용으로 1회용식기 사용 줄이기 * 고기보다 채소 섭취 많이하기	의(의복): * 헌옷은 수거하여 재활용하기 * 천연섬유소재 사용으로 합성섬유소재 사용 줄이기 * 여름철 가볍고 열은 색상의 옷 입기 *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장 착용 시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기
주(주거): * 주택과 건물의 창문을 열어 통풍하기 * 냉방기 온도를 적정온도인 26~28°C로 맞추기 * 텡스텐 조명 대신 절전형 조명 사용하기 *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여 건강과 절전을 한방에 해결하기	행(외출): *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를 통해 탄소저감과 건강 모두 챙기기 * 친구들과 여행 시 합승하여 자동차 사용 줄이기 * 탄소배출이 적은 교통수단 구매하기 * 공회전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 타이베이시 환경보호국 공공시설 이용안내

I 베이더우(北投) 쓰레기소각장 공공시설

시설	이용방법	이용요금	할인대상자
수영장 (SPA, 유 아풀장 포 함)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1회차 05:30~07:30 2회차 08:30~11:30 3회차 13:30~16:30 4회차 18:00~21:00	일반권: NT\$110 할인권: NT\$55 (학생, 4세 이상~12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증빙서류 제시)	1. 타이베이시 네이후(內湖)구, 난강(南港)구, 원산(文山)구, 베이더우(北投)구, 스린(士林)구에 호적을 등록한 구민은 신분증을,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명예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장애인과 보호자 또는 필수동행자 1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3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 시 증빙서류 제시)
헬스장	월요일휴무 매주 화~일 운영 1회차 08:30~12:00 2회차 13:30~17:00 3회차 18:00~21:00	일반권: NT\$20 할인권: NT\$10 (학생, 65세 이상 노인, 증빙서류 제시)	1. 타이베이시 네이후(內湖)구, 난강(南港)구, 원산(文山)구, 베이더우(北投)구, 스린(士林)구에 호적을 등록한 구민은 신분증을,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명예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장애인과 보호자 또는 필수동행자 1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 시 증빙서류 제시)
독서실	월요일휴무 매주 화~일 운영 08:30~21:00	무료	
사교실	월요일휴무 매주 화~일 운영 1회차 08:00~12:00 2회차 13:00~17:00	회차별 청소비용: NT\$200 냉방기 사용료: NT\$150元	무료 이용 대상자 없음

시설	이용방법	이용요금	할인대상자
테니스장	월요일휴무 매주 화~일 운영 1회차 05:30~12:00 2회차 13:30~17:00 3회차 18:00~21:00	주간: 시간당 NT\$150 야간: 시간당 NT\$200	1. 타이베이시 네이후(內湖)구, 난강(南港)구, 원산(文山)구, 베이더우(北投)구, 스린(士林)구에 호적을 등록한 구민은 신분증을,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명예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장애인과 보호자 또는 필수동행자 1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 시 증빙서류 제시)
야외운동 공원배구 장,농구장	월요일휴무 매주 화~일 운영	무료	
지하주차 장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05:00~22:00	시간당 NT\$20	30분 미만 시 무료
굴뚝전망 대	매일09:00~22:00	무료	
옥외자전 거보관소	매일 운영	무료	
탁구장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1회차 08:30~11:30 2회차 14:00~17:00 3회차 18:00~21:00	1. 무료 2. 매회 1시간 등 록 제한	

II 네이후(內湖) 쓰레기소각장 공공시설

네이후(內湖) 쓰레기소각장은 대만 최초의 대형 고효율 쓰레기소각장으로 첨단 기계식 소각기술을 사용하여 타이베이시 가정용 폐기물과 일반 상업용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쓰레기 속 가연성물질을 소각하여 감량화, 안정화 및 재활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네이후(內湖) 쓰레기소각장 전 구역의 녹화율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활용센터를 건립하고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및 레저시설을 개방하여 인근

지역사회에 휴식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온천수영장, 헬스장, 문예교실, 테니스장, 탁구장, 스케이트장, 열람실, 주차장 등이 있으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02)2796-1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설	이용방법	이용요금	할인대상자
수영장(유아풀장, SPA포함)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1회차 05:30~07:20 2회차 08:20~11:15 3회차 13:20~16:15 4회차 17:50~20:40	1. 일반권: NT\$110 2. 할인권: NT\$80 (군경, 학생, 7세 이상~12세 미만 어린이, 증빙서류 제시) 3. 정기점검 또는 기타 사유로 냉수만 공급할 시, 일반권: NT\$60, 할인권: NT\$30 4. 65세 이상 노인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반권의 반값으로 이용 가능	1. 타이베이시 네이후(內湖)구, 난강(南港)구, 원산(文山)구, 베이더우(北投)구, 스린(士林)구에 호적을 등록한 구민은 신분증을,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명예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장애인과 보호자 또는 필수동행자 1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7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 시 증빙서류 제시)
헬스장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1회차 08:30~12:00 2회차 13:30~17:00 3회차 17:50~21:00	일반권: NT\$20 할인권: NT\$10元 (군경, 학생, 65세 이상노인)	타이베이시 네이후(內湖)구, 난강(南港)구, 원산(文山)구, 베이더우(北投)구, 스린(士林)구에 호적을 등록한 구민은 신분증을,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명예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장 150cm 미만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다.
문예교실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1회차 08:00~12:00 2회차 13:00~17:00	1. 회차당 NT\$400 2. 회차 시간 불충족 시에도 1회차로 계산 3. 냉방기사용시 회차당 사용료 NT\$150	타이베이시 네이후(內湖)구, 난강(南港)구, 원산(文山)구, 베이더우(北投)구, 스린(士林)구에 호적을 등록한 구민은 신분

시설	이용방법	이용요금	할인대상자
		추가	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테니스장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1회차 05:20~18:00 2회차 18:00~21:00	05:20~18:00(주간): 시간당 NTS\$150 18:00~21:00(야간): 시간당 NTS\$200	1. 타이베이시 내이후(內湖)구, 난강(南港)구, 원산(文山)구, 베이더우(北投)구, 스린(士林)구에 호적을 등록한 구민은 신분증을,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명예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장애인과 보호자 또는 필수동행자 1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65세 이상 노인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반권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탁구장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1회차 08:30~12:00 2회차 13:30~17:00 3회차 17:50~21:00	1. 무료 2. 대회 1시간만 등록 가능	
스케이트장	매일 05:00~22:00	무료	
열람실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1회차 08:30~12:00 2회차 13:30~17:00	무료	
지하주차장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운영시간: 05:00~22:00	1. 시간당 NTS\$20 2. 소형차에 한하며 주차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한다. 주차시간 30분 경과 후에는 1시간 미만이어도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장애인은 무료주차이며 <타이베이시 주차관리처 유료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우대 조사작업 규정>을 따른다. 4. 월 주차료는 NTS\$1500이다.	

Ⅲ 무자(木柵) 쓰레기소각장 공공시설

시설	이용방법	이용요금	할인대상자
온천수영장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1회차 05:30~07:30 2회차 08:30~11:30 3회차 13:30~16:30 4회차 18:00~21:00	1. 일반권: NT\$110 2. 할인권: NT\$80 (군경, 학생, 7세 이상~12세미만 어린이, 입장 시 증빙서류 제시) 3. 정기점검 또는 기타 사유로 냉수만 공급할 시, 일반권: NT\$60, 할인권: NT\$30 4. 65세 이상 노인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반권의 반값으로 이용 가능	1. 타이베이시 네이후(內湖)구, 난강(南港)구, 원산(文山)구, 베이더우(北投)구, 스린(士林)구에 호적을 등록한 구민은 신분증을,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명예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장애인과 보호자 또는 필수동행자 1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7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 시 증빙서류 제시) 4. 타이베이시 네이후(內湖)구, 난강(南港)구, 원산(文山)구, 베이더우(北投)구, 스린(士林)구에 호적을 등록한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무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영장 아동증'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오전 05:30~12:00 오후 13:00~17:00 저녁 18:00~21:30	무료	
열람실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08:30~21:30	무료	
탁구장	1층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오전 05:30~12:00 오후 13:00~17:00 저녁 18:00~21:30	무료	

시설	이용방법	이용요금	할인대상자
3층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05:30~21:30	무료	
컴퓨터실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08:30~21:30	무료	
문예교실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저녁 19:30~21:30	- 오전/오후 회차당 NT\$400, 냉방기 사 용 시 회차당 사 용료 NT\$150추가 - 저녁 회차의 각종 사용료는반값	타이베이시 네이후 (內湖)구, 난강(南港) 구, 원산(文山)구, 베 이투우(北投)구, 스린 (士林)구에 호적을 등록한 구민은 신분 증을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체육실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05:30~21:30	무료	16세 이하는 입장할 수 없다.
다목적홀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저녁 19:30~21:30	청소비: NT\$500 - 냉방기 사용 시 회 차당 사용료 NT\$300추가 - 시청각장비 사용 시, 회차당 사용료 NT\$500추가 - 저녁 회차의 각종 사용료는 반값	
지하주차장	월요일 휴무 매주 화~일 운영 05:00~22:00	시간당 NT\$20	
옥외자전거 보관소	매일 운영	무료	

IV 산주쿠(山猪窟)수영장 개방시간, 이용금액 및 이용안내

(i)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매표시간	입장시간	마감시간	청소시간	이용요금(단위: TWD/NT\$)	비고
1회차 05:20~07:00	05:30	07:20	07:30	1. 일반권: NT\$110 2. 할인권: NT\$80 (군경 및 학생에 한함, 입장 시 관련 신분증 제시) 3. 기타 사유로 냉수만 공급할 시, 일반권: NT\$60, 할인권: NT\$30 4. 타이베이시 네이후(內湖)구, 난강(南港)구, 원산(文山)구, 베이더우(北投)구, 스린(士林)구에 호적을 등록한 구민은 신분증을(12세 이상 어린이는 아동증, 호구명부 원본 또는 3개월 내의 호적등본 제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명예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의경 및 의무소방관 등은 자원봉사명예카드를 제시하면 반값으로 이용 가능하다.	회차당 200명 한정
2회차 08:20~10:30	08:30	11:15	11:30	5.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장애인과 보호자 또는 필수동행자 1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 6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7. 6세 이상~12세 미만 어린이, 타이베이시에 호적을 등록한 55세 이상~64세 원주민 및 65세 이상 노인은 일반권의 반값으로 이용 가능하다.	
3회차 13:20~15:30	13:30	16:15	16:30	8. 12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능력이 있는 성인 친족 또는 보호자(무료대상자가 아닌 경우 입장권 구입)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4회차 17:50~20:00	18:00	20:40	21:00		

- (ii) 입장권을 구입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4장 까지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에 명시된 일자와 회차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일자와 회차에 사용할 수 없다. 수영장 입장권은 구매 후 환불 또는 일자/회차 변경이 불가능하다.
- (iii)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일이며(신정(1월 1일), 평화기념일(2월 28일), 쌍십절/중화민국 건국기념일(10월 10일)제외),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 (vi) 모든 유효 증빙서류의 사본은 증빙이 불가능하다.
- (v) 타이베이시 네이후(內湖)구, 난강(南港)구, 원산(文山)구, 베이더우(北投)구, 스린(士林)구에 호적을 등록한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무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영장 아동증’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 (vi) 주소: 타이베이시난강(南港)구 지우창가(舊莊街)1단290항32호
전화번호:(02)2654-8933, (02)2654-7412

V 산수이뤄(山水綠) 생태공원

(i) 공원 개요

공원 면적은 약 210,000m²로 오두막집, 관광안내센터, 나무테크, 하천복원구역, 소택지, 어린이놀이터, 정자, 전망대 등이 있다. 특히, 환경교육 오두막집과 관광안내센터는 옛 쓰레기차 세차장과 재활용수거장 건물을 개조한 것이며 전망대와 연결된 나무테크의 무지개색 원기둥은 푸더컹(福德坑) 쓰레기매립장의 전봇대를 사용한 것이다.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접목한 환경교육해설시설에서 온가족이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을 체험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ii) 교통정보

1. 주소: 타이베이시난강(南港)구 난선로(南深路)37호

2. 대중교통: MRT 난강전람관(南港展覽館)역 하차 → 즈난(指南)운수 679번 버스 탑승 → 푸성궁(福聖宮)역(산수이뤄생태공원)에서 하차 → 공원 입구까지 도보로 이동
3. 자가운전: 3번 국도에서 북쪽 방향 → 난선로(南深路) 램프 출구 → IC에서 내린 후 난선로(南深路)에서 약 1.5km 직진 후 공원 도착

VI 푸더컵(福德坑)환경보호복원공원

(i) 공원 개요

푸더컵(福德坑) 환경보호복원공원 면적은 약 370,000m²로 풀썰매장, 원주민문화마을, 태양광장, 산책로, 자전거전용도로, 드론비행구역 등이 있다. 풀썰매장은 부지면적인 약 10,000m²로 타이베이시 유일의 무료 풀썰매장이다. 날씨가 좋은 휴일에 무료로 개방하는 풀썰매장과 드넓은 초원에서 온가족과 함께 휴식을 누릴 수 있다. 타이베이 에너지 힐은 전국 최초의 매립식 태양광 발전소로, 정부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자금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타이베이의 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경 교육, 생태 환경 및 재생 에너지 등을 결합한 다원적 가치의 시범 공원이다.

(ii) 교통정보

1. 주소: 타이베이시원산(文山)구 무자로(木柵路) 5단151호
2. 대중교통: MRT 동우위엔(動物園)역에서 하차 → 소(小)12번 버스 탑승 → ‘푸더컵 환경보호복원공원’역에서 하차 → 공원 입구까지 도보로 이동
3. 자가운전: 3번 국도 완팡(萬芳)IC에서 내려 좌회전 → 무자로(木柵路) 5단에서 약 0.9km 지점에서 43항 골목으로 진입 → 약 1.6km 이동 후 공원 입구 도착

VII 네이후(內湖)복원공원

(i) 공원 개요

네이후(內湖)복원공원은 북쪽으로는 치싱산(七星山), 남쪽으로는 지룽허(基隆河), 동쪽으로는 난후대교(南湖大橋), 서쪽으로는 안메이가(安美街)가 인접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 100,000m²이다. 공원에는 숲과 언덕, 산책로와 소원액자 등이 있으며 40m 고지에 오르면 101빌딩을 비롯해 타이베이 시내 전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지룽허(基隆河)강가를 따라서 약 1.5km의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휴식과 하이킹,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복합 녹지공원이다.

네이후(內湖)복원공원은 공원내 전망언덕과 초원, 인근 탄메이가(潭美街)에 위치한 후루저우(葫蘆洲)운동공원의 온천수영장과 테니스장 등 레저시설, 수변자전거도로와 꽃바다, 역사유적지인 후루둔(葫蘆墩) 현수교 교각 등이 연계되어 다른 수변공원과는 차원이 다른 다목적공원임을 자랑한다.

(ii) 교통정보

1. 주소: 타이베이시네이후(內湖)구 탄메이가(潭美街)587호 맞은편
2. 고속도로: 캉닝(康寧)IC에서 북상 진입로에서 고속도로 내려와 우회전 → 캉닝로(康寧路) 3단에서 직진 (난후(南湖)대교를 타지 않음) → 탄메이가(潭美街) 길목에서 우회전 → 직진 약 900m 후 공원 입구 도착
3. 버스: 240直, 247, 247區, 279, 681번 버스 탑승 → 네이후소각장역(후루저우(葫蘆洲)운동공원)에서 하차 → 공원 입구까지 도보로 이동

VIII 옌후이(延慧)서고

(i) 설립기원

타이베이시 환경보호국은 원천감량과 자원재활용을

홍보하고 서적의 생명연장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2013년 1월 1일 내이후(內湖)재생가구전시장에 엔후이(延慧)서고를 조성하였다.

(ii) 장소 및 운영시간

해당 서고는 타이베이시내이후(內湖)구 상중로(行忠路)178항1호(본국 내이후재생가구전시장 1층)에 위치해 있다. 수령&교환구역과 열람구역으로 나뉘져 있으며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변동 사항이 있으면 공지할 예정이다.

(iii) 수령 및 교환방법

엔후이서고에 있는 서적의 수령과 교환은 학생, 장애인, 중저소득 및 저소득가구, 일반시민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은 유효기간내의 학생증을 소지하면 입장가능하며 장애인과 중저소득 및 저소득가구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카드로 매달 무료로 중고서적 10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일반시민은 건전지 15개를 갖고오면 중고서적 1권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특별이벤트를 통해 중고서적을 수령 및 교환할 수 있다.

(iv) 서적기부방법

1. 타이베이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기부할 서적을 잘 묶어서 쓰레기수거시간에 분국의 수거차량에 직접 주면서 엔후이서고에 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 기부할 서적이 200권 이상일 경우, 거주하는 구의 환경미화단이나 본국에 연락을 취하면 환경보호국에서 방문수거를 진행한다.
2. 타지역 주민이라면 서적을 잘 정리한 다음 타이베이시내이후(內湖)구 상중로(行忠路)178항1호“엔후이서고”로 보내면 된다.

제 11 장 관광전파국

I 타이베이 관광포털

<https://www.travel.taipei>

타이베이는 자연경관과 인문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친절하고 따뜻하며 인정미가 넘친다. 도시의 변화함과 편리함이 있으며 전통과 매력적인 문화도 공존한다. 타이베이관광포털은 모든 사람들이 단시간내에 신속하게 타이베이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채널로 타이베이의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의 전자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베이관광포털은 관광명소, 맛집, 여행코스, 쇼핑, 숙박, 교통 및 도시 문화예술 및 전시활동 등 정보를 번체중국어, 간체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9개 언어로 제공한다. 다양한 콘텐츠를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여 홈페이지 방문자로 하여금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향연에 흠뻑 취하게 한다. 마우스와 키보드만 있으면 다양한 계절과 장소의 타이베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휴대용단말기를 갖고 여행하는 관광객과 사용자를 위하여, 타이베이관광포털은 모바일 버전의 ‘지금 타이베이에서 놀자(現在玩臺北)’ 앱을 개발하여 iOS와 Android 2개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다운로드해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타이베이를 만끽하기를 바란다.

교통부 관광국 24시 무료상담전화: 0800-011-765

II 숙박 정보

타이베이관광포털(<https://www.travel.taipei>)에서 ‘숙박시설/숙박검색’ 메뉴로 들어가면 숙박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숙박시설의 정보를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며 중국어, 영어, 일어 등 3개 언어로 된 검색시스템을 통해 가격대, 위치, 구비시설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고 구글의 거리계

산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숙박시설을 찾을 수 있다.

Ⅲ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인센티브 지원

- (i) 타이베이시 관광전파국은 국제회의, 전시 및 포상관광을 타이베이시에 유치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려(인센티브)작업요점(獎勵作業要點)>을 제정하였다.
- (ii) 신청기간: 매년 두 차례 신청을 받으며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1차 신청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2차 신청기간은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 (iii) 신청방법: 타이베이관광포털(<https://www.travel.taipei>)에서 ‘관광문의’ → ‘컨벤션정보’ → ‘보조와 후원’에서 <장려작업요점(獎勵作業要點)> 및 관련 양식을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접수일로부터 타이베이시관광전파국 홈페이지 (<https://www.tpedoit.gov.taipei>) 최신소식에서 <장려작업요점(獎勵作業要點)> 및 후원 공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Ⅳ 타이베이시 관광안내센터 서비스 항목 및 센터 정보

타이베이시는 현재 11개의 관광안내센터를 운영 중이며, 각 관광안내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관광명소정보, ▲교통/숙박/맛집 정보, ▲해설 가이드정보, ▲관광코스안내, ▲관광안내책자 및 관광지도 무료지급, ▲여행서적 열람, ▲iTaiwan신청, ▲확대경 및 노안안경 대여, ▲휴대폰 고속충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관광안내센터의 운영시간과 위치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타이베이기차역 관광안내센터(타이베이기차역 로비 남서측)

- 운영시간: 매일 08:00~20:00
 - 전화번호: 02-2312-3256
 - 주소: (100)臺北市中正區北平西路3號
2. 송산(松山)공항 관광안내센터(송산(松山)공항 2터미널 입국장)
- 운영시간: 매일 08:00~17:00
 - 전화번호: 02-2546-4741
 - 주소: (105)臺北市松山區敦化北路340之10號
3. MRT 신베이더우(新北投)역 관광안내센터(MRT 신베이더우(新北投)역 출구)
- 운영시간: 매일 10:00~19:00
 - 전화번호: 02-2891-2972
 - 주소: (112)臺北市北投區大業路700號
4. MRT 지엔탄(劍潭)역 관광안내센터(MRT지엔탄(劍潭)역 1번 출구)
- 운영시간: 매일 10:00~19:00
 - 전화번호: 02-2883-0313
 - 주소: (111)臺北市士林區中山北路5段65號
5. MRT시먼(西門)역 관광안내센터(MRT시먼(西門)역 5번 출구 인접)
- 운영시간: 매일 10:00~19:00
 - 전화번호: 02-2375-3096
 - 주소: (100)臺北市中正區寶慶路32-1號B1
6. MRT타이베이101/스마오(世貿, world trade center)역 관광안내센터(MRT타이베이101/스마오(世貿)역 5번 출구)
- 운영시간: 매일 10:00~19:00
 - 전화번호: 02-2758-6593
 - 주소: (110)臺北市信義區信義路5段20號B1
7. 공항철도 A1 타이베이역 관광센터(공항철도 A1 타이베이역 B1층 복도)
- 운영시간: 매일 08:00~20:00
 - 전화번호: 02-2331-3133

- 주소: (104)臺北市大同區鄭州路8號 B1
- 8. MRT룡산스(龍山寺)역 관광안내센터 (MRT룡산스(龍山寺)역 1번 출구 인접)
 - 운영시간: 매일 10:00~19:00
 - 전화번호: 02-2302-5903
 - 주소: (108)臺北市萬華區西園路1段153號B1
- 9. 시먼홍러우(西門紅樓) 관광센터
 - 운영시간: 화~일 11:00-21:30, 금~토 22:00까지 연장(매주 월요일 휴무. 연휴기간시 정상 근무)
 - 전화번호: 02-2388-5255
 - 주소: (108)臺北市萬華區成都路10號 (十字樓 내 1F)
- 10. 케이블카 마오콩(貓空)역 관광센터 (마오콩역 출구)
 - 운영시간: 매월 첫번째 월요일, 화~일 09:00-17:00(매월 셋째 월요일 휴무)
 - 전화번호: 02-2937-8563
 - 주소: (116)臺北市文山區指南路3段38巷35號
- 11. 따다오청(大稻埕)관광센터
 - 운영시간: 매일 09:00 ~ 17:00
 - 전화번호: 02-2559-6802
 - 주소: (103)臺北市大同區迪化街1段44號

V 관광 출판

(i) “TAIPEI”

“TAIPEI”는 영어/일어 계간지로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타이베이 시즌 행사, 관광정보, 레포트 엔터테인먼트, 음식 생활, 역사문화 및 토속 등을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TAIPEI”는 타이베이MRT 각 역, 타이베이시관광안내센터, 중정기념당(中正紀念堂), 국부기념관(國父紀念館)및 청핀(誠品)서점 각 지점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ii) 타이베이시 지도 리플렛과 지역별 관광 가이드

타이베이를 여행한다면 “Undiscovered Taipei MAP” 리플렛부터 살펴보자. 타이베이시의 여행정보, 맛집, 계절 특색행사, 교통정보와 안내센터 등 실용적인 정보 외에 타이베이시 관광지도가 첨부되어 있어 타이베이를 여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타이베이를 더욱 깊게 알고 싶다면 “Undiscovered Taipei 西門町 X 艋舺”, “Undiscovered Taipei 大稻埕 X 大龍峒”, “Undiscovered Taipei 北投”, “Undiscovered Taipei 信義” 등 안내책자를 추천한다. 타이베이시 관광명소, 축제, 역사유적, 맛집 등 정보를 소개하며 관광지도도 첨부되어 있어 타이베이의 특별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출판물들은 타오위안국제공항, 타이베이시 각 관광안내센터 및 각 현·시 관광안내센터 등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VI 온천 정보

타이베이는 크지 않은 면적에 불구하고 신베이터우(新北投), 싱이로(行義路), 양밍산 중산루(陽明山 中山樓), 마차오(馬槽) 등 무려 4지역의 온천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2019년 기준 타이베이시내에는 총52개의 온천여관, 온천탕 및 온천식당이 온천표장을 획득하고 영업중이다. 휴식이 필요할 때에는 자연, 인문, 온천탕 등 특색있는 이 온천구역을 방문하여 자연풍경과 함께 온천과 미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신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온천업 등기표

VII Taipei Fun Pass 카드

카드 한 장으로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지룽시의 관광명소들을 관광할 수 있다. 최대의 장점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고, 줄을 서서 표를 사는 시간도 아낄 수 있다. “Taipei Fun Pass 카드”는 대만을 관광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Taipei Fun Pass 카드 중 “무제한여행버전”은 [관광지+교통] 개념의 유효기간 카드이다. 교통 서비스 외에, 관광명소 16곳의 입장권을 포함하고 있어, 최대 약 60%의 여행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교통전용버전”은 교통 서비스를 전문 제공하며 타이베이MRT,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 버스 및 ‘台灣好行’ 5개 노선을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여행객들이 관광명소에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또한, “클래식 여행지 패스(충전기능)”을 선택하면 타이베이 101 및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입장권이 포함되며, “명소 마음껏 패스(충전기능)”는 20곳의 다양한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하고 있다. 카드 구매시 증명하는 메뉴얼에는 수백개의 제휴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여행객들이 도시에서의 쇼핑을

즐길 수 있다.

“Taipei Fun Pass 카드”는 여행코스도 안내하며, 인상깊은 체험활동을 통해 여행객들이 북부(타이베이, 신베이, 지룽)의 진정한 생활면모를 탐방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며, 반나절 혹은 하루의 짧은 시간 동안에도 체류식 여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funpass.travel.taipei/查詢](https://funpass.travel.taipei/), 문의전화: 03-591-0052

Ⅷ 타이베이 탐색관(臺北探索館) 관람안내

타이베이 탐색관(臺北探索館, Discovery Center of Taipei)은 전시, 교육 및 관광레저 등을 통해 과학기술교육, 역사교육, 예술교육, 여행관광 및 시정성과 등을 소개하는 곳이다.

전시장은 4개층으로 이루어졌으며 1층 ‘타이베이 인상 전시장’은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타이베이의 다양한 풍경을 소개한다. 2층 ‘특별전시장’에서는 도시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3층 ‘도시탐색 전시장’에서는 새단장을 마친 ‘빠른 도시에서 즐기는 슬로우 여행’ 전시 외에도 타이베이의 거리풍경, 타이베이 서부지역의 발전현황, 문화예술의 도시, 에코도시 등 다양한 모습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4층의 ‘시공간 대화 전시장’에서는 타이베이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교차하여 전시한다. 특히 ‘Discovery Theater(發現劇場)’는 대만에서 두 번째로 360도 스크린이 설치된 극장으로 도시를 주제로한 영상을 정기상영 중이다. 타이베이의 어제와 오늘을 알고 싶다면 꼭 한번 타이베이 탐색관에 가보자.

위치 및 연락처

臺北市信義區市府路1號 (타이베이시정부에서 런아이로(仁愛路) 방향 서쪽 출입구 우측에 위치)

타이베이시 콜센터: 1999 (타지역: 02-2720-8889) 내선: 8630
팩스: 02-2723-2793

운영시간

매주 화~일 09:00~17:00, 무료관람

휴무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오디오가이드 서비스

중국어, 영어, 일어, 객가어, 민남어 등의 오디오가이드를 대여해 준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탐색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대여할 수 있다.

단체가이드 서비스

시간: 화~일 09:00~17:00

가이드 예약대상: 30인 이상 신청 가능 (초등학교 이상 단체, 기관 및 개인이 조직한 단체 등)

전시해설 예약

30인 이상 신청 가능 (초등학교 이상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 조직한 단체 등)

전시해설 예약 시 주의사항

1. 관람예정 7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당일 예약상황에 따라 예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 예약 당일 관람이 어려울 경우, 5일 전에 예약취소 전화를 해야한다.
3. 불가항력의 재난상황(태풍, 지진 등)발생 시, 타이베이시 행정명령이 반포 실시되면 당일 일정은 모두 취소되며 다시 예약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4. 단체관람(전시해설)에는 ‘Discovery Theater’ 영상관람도 포함된다.

예약방법

1. 전화예약: 타이베이시 콜센터1999 (타지역:02-2720-8889)
내선번호: 8630

2. 팩스예약: 02-2723-2793 (단체명, 인원수 및 관람일자와 시간 상세기재)

IX 타이베이 라디오방송국 소개

타이베이라디오방송국은 타이베이시관광전파국 산하의 공영 라디오방송국으로 문화와 예술적 분위기가 농후한 중산북로(中山北路) 삼단에 위치해 있으며 꽃박람회공원과 타이베이시립미술관에 인접해 있다.

타이베이라디오방송국의 전신은 1961년 7월 31일에 설립된 텐싱(天行)라디오방송국이며 민방(民防)라디오방송국, 타이베이시 시정(市政)라디오방송국, 타이베이라디오방송국 등 3개 시절을 거치면서 대타이베이(大臺北)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타이베이라디오방송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공영방송국이며, ‘도시의 정보센터’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타이베이라디오방송국은 FM 93.1과 AM1134 두 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FM 93.1도시정보채널: ‘타이베이 목소리가 들려’라는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시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소외계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안전 수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방송국은 BBC와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부터 7시, 저녁 10시부터 11시에 국제뉴스를 동시방송하며,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는 짝수 정시마다 6분짜리 BBC 뉴스가 방송된다.

AM 1134 ‘HO HI YAN’원주민전문채널: 본 채널은 대만 최초의 도시 원주민을 위한 채널로 원주민의 풍습과 문화, 언어를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새로 이주한 원주민들이 도시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원주민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타이베이라디오방송국은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FM과 AM채널을 통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및 베트남 등 4개 언어의 프로그램도 방송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타이베이시 재난지휘센터에 즉각 기자를 보내 재난 관련 뉴스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타이베이시 ‘재난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화번호: 프로그램과: 02-2595-1233#10~24

엔지니어링과: 02-2595-1233#30~34

FM Call-in: 02-2599-2266

AM Call-in: 02-2595-2119

온라인 방송시청: <https://www.radio.gov.taipei/>

스마트폰 앱: 아이타이베이(愛台北)

페이스북: 타이베이라디오방송국(臺北廣播電臺)

유튜브: 타이베이방송국931

X 타이베이시 2층 관광버스

타이베이시 2층 관광버스가 빨강노선과 파랑노선이 있으며 빨강노선은 타이베이101, 화산(華山)1914문화창조산업단지 등을 경유하며, 파랑노선은 스린(士林)관저, 고궁박물관 등을 경유한다. 중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 해설서비스도 제공한다.

티켓 종류와 요금(단위: TWD)	
4시간권	300
주간권	500
24시간권	600
48시간권	1,000

※자세한 사항은 타이베이시 2층 관광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www.taipeisightseeing.com.tw/>

문의전화: +886-2-8791-6557 #30

운영시간: 09:00~22:00 (운영시간 외에 이용을 원할 경우 e-mail로 연락)

이메일: info@taipeisightseeing.com.tw

제 12 장 교통국

I 공공운수처(公共運輸(대중교통)處)

0800 콜택시 시스템

설립목적: 택시 탑승객의 안전과 편의 보장

무료 콜택시 전화: 0800-055-850

휴대전화로 걸때: 55850 (유료)

전화비 무료 서비스 지역: 타이베이시, 신베이시(新北市),
지룽시(基隆市)

0800스마트 콜택시 시스템 프로세스

(i) 시내전화로 걸때: 0800-055-850 (무료)

휴대전화로 걸때: 55850 (유료)

(ii) 전화 연결 후 안내멘트 시작: “0800스마트 콜택시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전화는 시내전화로 걸 경우에만 수신자부담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는 3번, 경로 콜택시 서비스는 0번, 대리운전 서비스는 4번, 여성운전자 콜택시 서비스는 5번, 중국어 서비스는 1번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For English services please press 2.”

(iii) 0번을 누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로 콜택시회사를 연결해주며 연결이 된 후 경로 콜택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된다.

(iv) 1번을 누르면 다음의 안내멘트가 나온다. “택시회사 코드번호 안내는 1번, 시스템 자동연결은 2번, 요금조회는 3번,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본 전화는 음성연결서비스만 제공하며 콜택시 이용에 문제가 있을 시, 해당 택시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택시이용에 관한 고객불만이 있을 시, 타이베이시 공공운수처 콜센터02-2759-26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번을 누르면 택시회사 코드번호의 안내가 시작된다.
자신이 원하는 택시회사의 코드를 바로 눌러도 되고 안내를 다 듣고난 후 눌러도 된다.
 2. 2번을 누르면 해당 택시회사로 연결된다.
- (v) 3번을 누르면 시스템이 장애인 콜택시회사로 자동 연결해준다. 연결이 되면 장애인 콜택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된다.
 - (vi) 4번을 누르면 다음의 안내멘트가 나온다. “택시회사 코드번호 안내는 1번, 시스템 자동연결은 2번,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본 전화는 음성연결서비스만 제공하며 콜택시 이용에 문제가 있을 시, 해당 택시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택시이용에 관한 고객불만이 있을 시, 타이베이시 공공운수처 콜센터 02-2759-26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ii) 5번을 누르면 택시회사 코드번호 안내가 시작된다. 원하는 코드번호를 누르면 택시회사와 연결이 되고 여성운전자를 원한다고 말하면 된다.
 - (viii) 택시회사와 전화연결이 되면 바로 해당 회사에 콜택시를 부르면 된다.
 - (ix) 본 시스템은 24시간 녹음을 통해 콜택시 예약 전 과정이 녹음되며 녹음파일은 1달간 보관된다.
 - (x) 만약 배차가 안될 경우 별표(*)를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택시회사 코드번호(두자리 숫자를 눌러야 함)

코드번호	회사명	코드번호	회사명
01	푸안(婦安)	12	판야(泛亞)
02	황관(皇冠)택시	13	빈리(賓樂)
03	쯔잉(志英)	15	귀화(國華)
04	장성(彰勝)	16	요우량(優良)
05	다아이(大愛)	18	대만택시(臺灣大車隊)
06	베이쑹(北松)	19	성후이(聖惠)
07	타이베이 웨이싱(衛星)	20	성진(聖欽)
08	푸셰(婦協)	21	성웅(聖雄)
09	원장(運將)	22	다후후이(大都會)
10	란텐스(藍天使)	23	쇼우두웨이싱(首都衛星)
11	다핑웨이싱(大豐衛星)택시 타이베이지사	24	다칭(大慶)택시

II 타이베이시 주차관리공정처(臺北市停車管理工程處)

타이베이시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조회서비스	주소	타이베이시 송더로(松德路)300호5F
	전화번호	타이베이시 콜센터:1999 타지역:02-2720-8889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타이베이시 주차요금안내 홈페이지	주소	臺北市松德路300號5樓
	홈페이지	http://parkingfee.pma.gov.taipei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III 타이베이시 교통관제공정처(臺北市交通管制工程處)

교통관제시설 24시간 콜센터	주소	타이베이시 송더로(松德路)300호7F
	전화번호	타이베이시 콜센터: 1999 타지역: 02-2720-8889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IV 타이베이시 교통사고재결소(臺北市交通事件 裁決所)

(i) 서비스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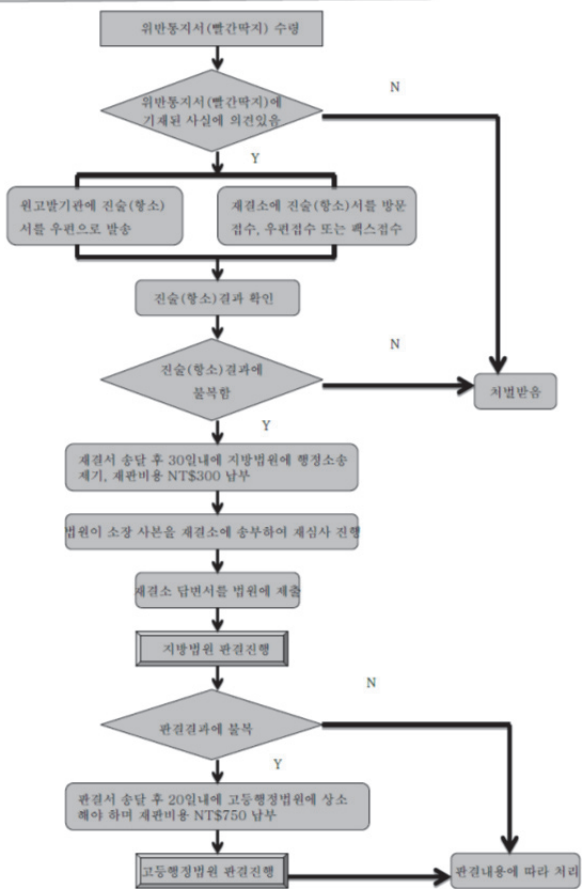
1. 대표전화:(02)2365-8270
2. 팩스번호:(02)8369-2386
3. 업무시간:

월~금(법정공휴일 및 토, 일요일 휴무) 8:30~17:30

(ii) 위치 및 교통정보

1. 주소: 臺北市中正區羅斯福路4段92號7~8樓
(수이위안(水源)빌딩 북동측 입구에서 진출입)
2. 교통정보: 대중교통 이용 권장
 - (1) 전철(MRT): MRT송산신덴(松山新店)라인 공관(公館)역 하차 → 1번 출구에서 우회전 후 직진
 - (2) 버스:
0남(南), 1, 109, 207, 208, 208구(區), 208직(直), 236구(區), 251, 251구(區), 252, 253, 254, 254구(區), 278, 278구(區), 280, 280직(直), 284, 311, 311구(區), 505, 52, 530, 606, 643, 644, 648, 660, 668, 671, 672, 672구(區), 688, 673, 675, 676, 907, 종(棕)11, 종(棕)12, 종(棕)22, 녹(綠)11, 남(藍)28, 푸싱간선(復興幹線), 송장신성간선(松江新生), 뤼스푸로간선(羅斯福路幹線), 징메이(景美)←→룽중(靑)(榮總(快))
 - (3) 고속버스
타이러고속(泰樂客運): 타이베이←→지룽(基隆) (1550)
야렌고속(亞聯客運): 타이베이←→신주(新竹) (1728)
3. 주차장 안내 (주차장 위치는 본 재결소 위치도 참조)
 - (1) 공관(公館)주차장: 퉁저우로(汀州路) 3단230항15호
 - (2) 대만대 제2학생활동센터 주차장: 뤼스푸로(羅斯福路) 4단85호 옆
 - (3) 타이베이시 수돗물단지 정원 주차장: 타이베이시 스위안가(思源街)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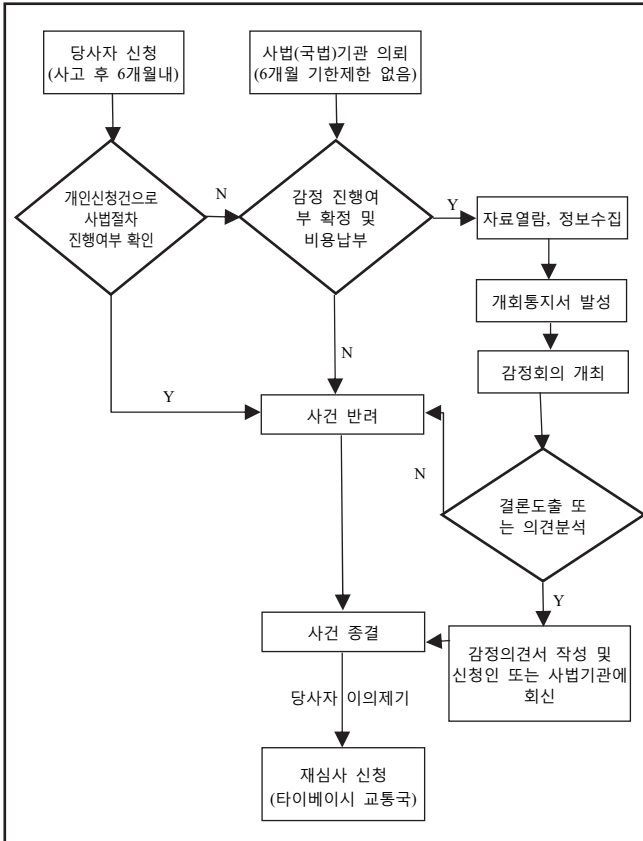
교통법규위반사건 진술(항소)업무 흐름도



주1: 재결소는 시민의 진술(항소)서를 접수받은 후 1주일 내에 고발기관에 위법사실 확인을 요청한다. 고발기관의 조사결과를 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주2: 판결 확정 후,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교통사고 감정 절차



절차 설명:

1. 본 재결소가 수리하는 사고 감정건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사법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가 사고발생 후 6개월 내에 본 재결소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고, 둘째는 사법(국법)기관에서 본 재결소에 감정을 의뢰한 건인데 이는 6개월의 신청기한 제한이 없다.
2. 이상 두건 모두 NT\$3,000의 행정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본 재결소는 감정 신청이 접수가 되면 타이베이시 경찰측에 조사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감정회의시간을 확정 후 회의통지서를 발송한다. 감정을 심의한 후 최종

적으로 감정의견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3. 당사자가 본 재결소의 감정의견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타이베이시 교통국에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V 유바이크(YouBike)공공자전거

(i) 회원인증절차

유바이크(YouBike) 이용을 원할 경우, 휴대폰과 Easy Card(悠遊卡), ipass(一卡通)만 있으면 아래의 3곳에서 신청을 통해 유바이크 회원이 될 수 있다!

1. 키오스크(Kiosk) 무인단말기
2. YouBike홈페이지:www.YouBike.com.tw
3. 스마트폰 YouBike App

회원이라면 Easy Card, ipass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으며 비회원이라면 신용카드를 통해 키오스크에서 대여할 수 있다. 유바이크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타이베이시 콜센터1999또는 유바이크 고객센터 담당자(service@youbike.com.tw)에게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ii) 유바이크 안내

1. 문의전화: 타이베이시 콜센터1999
2. 유바이크 서비스센터(운영시간: 매일 10:00~14:00, 15:00~20:00)
 - (1) 시정부(市政府) 전철(MRT)역 서비스센터(3번 출구 밖, 지상에 위치)
 - (2) 충효신생(忠孝新生) 전철(MRT)역 서비스센터(5번 출구 방향, 개찰구 통과, B1에 위치)
 - (3) 검남로(劍南路) 전철(MRT)역 서비스센터(2번 출구 방향, 개찰구 통과, 2F에 위치)
3. 고객센터 이메일: service-taipei@youbike.com.tw

(iii) 유바이크 신규운영규칙

1. 연속대여 제한: 자전거 반납 후 15분내에 동일 지점(반납소)에서 대여할 수 없다. 단, 자전거 대여 후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여

후 5분내에 동일 지점에서 반납 후 다시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누진요금: 30분까지 NT\$5, 4시간까지 30분당 NT\$10 부과(주: 2018년 4월 16일부터 유바이크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을 소지한 회원이 타이베이시에서 자전거를 대여할시, 30분까지는 무료, 30분 이후 대여비용은 기존과 동일), 4시간 초과~8시간 이내의 경우 30분당 NT\$20 부과, 8시간 초과 시 30분당 NT\$40 부과
3. 유바이크 보험: 타이베이시 자전거회원은 홈페이지, APP 또는 키오스크(Kiosk) 무인단말기 등을 통해, 보험화면창내 개인정보 입력후, 바로 공공자전거 제3자 보험 및 상해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 자전거 이용 전 브레이크와 타이어압, 라이트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장이 났다면 사용하지 말고 자전거 안장을 거꾸로 돌린 다음 다른 차량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VI 관련 업무 부처

교통부 도로총국 타이베이시구감리소(臺北市區監理所)

외국국제운전면허증 사증발급 및 교환발급

- (i) 교통부 도로총국 주요국가 운전면허 상호주의 협약국가 상황 일람표는 사이트 참고 (사이트: <https://www.thb.gov.tw/page?node=408d4b33-d248-46ed-8c2b-9066595af0f4>)

- (ii) 외국 국제운전면허 허가증:

1. 구비서류

- (1) 이하 신분증명서류 1부 (원본)
대만 국적자: 신분증 원본
외국인: 거류증 혹은 여권 원본
- (2) 상호주의 협약국가가 정식으로 발급한 외국 국제운전면허 원본 (미국 국제운전면허는 미국 정부가 허가한 AAA, AATA 버전만 인정된다. 이외에 『미국 각 주별 운전면허』는 상호주의 협약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 (3) 상호주의 협약국에서 정식 발부한 외국 현지 운전 면허 원본
- (4) 최근 2년내에 촬영한 2.8×3.5cm짜리 흰색배경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모자착용 금지), 합성사진은 사용불가

2. 신청 설명

- (1) 수수료: 150원
- (2) 신청시 소요시간: 1시간
- (3) 접수처: 담당 데스크에서 처리
- (4) 신청방법: 본인신청, 대리신청 (대리인이 처리할 경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필히 소지해야 한다.)

3. 주의사항

- (1) 국제운전면허증도 일종의 운전면허 허가증이기 때문에 도로교통 안전법규 제 55조 규정에 따라, 상호주의 협약국이 정식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대만 내 30일 단기체류하는 자는 일반 운전면허허가증을 획득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한다면 국내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도로 교통기관에서 허가증 획득수속을 받아야 한다.
 - (2) 국제운전면허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나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체,거류증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우선 만료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 경과 시 운전을 할 수 없다.
 - (3)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벌금 발생시, 본 교통국이나 각 교통사건 판결기관(裁決所)에서 처리해야 한다.
 - (4) 미국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레소토 왕국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허가증 발급 시, 미국 또는 레소토 현지 운전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
- (iii) 외국면허증 대만면허증으로 교환발급

필요서류:

1. 이하 신분 증명 서류 원본 (택일):
 - (1) 중화민국 국적으로 대만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대만국적자는 국민신분증 혹은 군인 신분증을 첨부한다.
 - (2) 대만에 호적이 없는 자, 외국인, 중국인, 홍콩 및 마카오 주민은 6개월이상의 체, 거류 허가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평등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입국한 다음날부터 교환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제시하거나 이민서의 외국인 거류증명서 혹은 입출국 일자 증명서를 제시한다. 중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 유효기간내의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검증서,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중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중국공증처 증명 및 대만해협교류 기금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는 대만 재외공관, 대표부, 사무처, 기타 외교부가 허가한 기구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3. 영문 운전면허증이 아닌 경우, 중문으로 번역 후 대만 재외공관, 대표부, 사무처 또는 대만 공증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4. 여권 원본 및 복사본
5. 최근 2년내에 촬영한 2.8×3.5cm짜리 흰색배경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모자착용 금지), 합성사진은 사용불가
6.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등록서 혹은 전동자동차 면허 등록서 1부, 공립병원 혹은 위생기관, 도로감리기관의 지정병원, 검사설비 및 의료자격을 가진 의료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도로감리기관 혹은 지정진료소(사이트 참조 : <https://reurl.cc/bRbYy6>)에서 받은 단체 체력 검사 및 체력테스트 합격서 (자동차 및 250cc이상 대형

바이크의 외국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변경발급 받으려면 신체검사 및 체력 테스트는 필수. 250cc 미만의 보통 오토바이는 운전자 체력검사 필요없음), (체력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

주의사항:

1. 중국 운전면허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거류증이 있는 사람은 스린(士林)감리소에서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 대만 운전면허증을 변경발급 받게 된다.
2. 일본 운전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 재단법인 일본 타이완 교류협회를 통해 일본 운전면허증의 중문 번역본을 준비해야 한다.
3.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이 있는 경우, 판결소(裁決所) 1층에 위치한 판결소 배치 데스크에서 벌금을 완불하면 대만 운전면허증으로 변경발급된다.
4. 250cc이상 대형 오토바이 운전자가 변경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대형 오토바이 운전자 변경발급』항목 설명(<https://reurl.cc/Z7dVzp>)을 참고
5. 대만 운전면허 (외국 운전면허로 변경발급받은 경우는 제외)가 정지 혹은 취소될 경우, 변경발급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면허 정지, 취소기간이 만료된 후, 외국 운전면허를 다시 획득(획득 일자 증명서도 첨부)한 후 변경발급 가능하다. 외국 운전면허로 대만 운전면허를 변경발급 받은 경우, 면허정지, 취소를 받으면 이후 다시 대만 운전면허로 변경할 수 없다.

신청 설명:

1. 신청비: NT\$200
2. 처리 소요시간: 신청 후 바로 처리
3. 접수방식: 담당 데스크에서 접수
4. 신청방식: 본인신청, 대리인신청 (대리인이 처리할 경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필히 소지해야 한다.)

(iv)연락처:

1. 타이베이시구감리소(臺北市區監理所) 운전자 관리과:
 - (1) 전화: (02)2763-0155分機201-203
 - (2) 팩스: (02) 2766-8690
 - (3) 주소: 105210 臺北市松山區八德路4段21號
2. 타이베이시구 감리소 스린 감리소 제3고(臺北市區監理所士林監理站第三股) :
 - (1) 전화: (02) 2763-0155分機726、727
 - (2) 팩스: (02) 2831-4278
 - (3) 주소: 111063臺北市士林區承德路5段80號
3. 타이베이시구 감리소 지룽감리소 제2고(臺北市區監理所基隆監理站第二股) :
 - (1) 전화: (02)2451-5311分機207
 - (2) 팩스: (02)2452-4714
 - (3) 주소: 206216基隆市七堵區實踐路296號

제 13 장 문화국

I 문화관광

(i) 유적지투어는 총 18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적지 해설지점을 타이베이시 12개 행정구의 유적지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와 교육적인 기능을 살려서 유적지 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참가대상: 역사유적지에 관심있는 외국인
 2. 참가인원: 제한없음
 3. 사용언어: 영어 또는 일본어
 4. 신청방법: 투어 1주일 전까지 타이베이시립문헌관에 팩스((02)2311-5770)로 신청서 송부
또는 <https://service.gov.taipei/>에서 신청
담당자: Ms. 증(曾小姐), 전화번호: (02)2311-5355 (내선 26)
 5. 투어시간: 09:00~12:00 13:30~16:30
- ※신청자는 참가인원으로부터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적발 시 투어는 취소된다.
- ※본 투어는 무료로 진행되며 그 어떤 비용도 받지 않는다.
-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ii) 영어 가이드 서비스

아래의 문화예술관에서는 영어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타이베이시립미술관/Taipei Fine Arts Museum
[http://www.tfam.museum/\(02\)2595-7656 # 323](http://www.tfam.museum/(02)2595-7656#323)
2. 타이베이 중산당(中山堂)관리소/Taipei Zhongshan Hall
[http://www.zsh.gov.taipei/\(02\)2381-3137 # 9](http://www.zsh.gov.taipei/(02)2381-3137#9)
3. 타이베이228기념관/Taipei 228 Memorial Museum
[http://228memorialmuseum.gov.taipei/\(02\)2389-7228 # 23](http://228memorialmuseum.gov.taipei/(02)2389-7228#23)

4. 용안문예관(永安藝文館)(공연36실)/Performing Arts School 36 (Yong An Art Center)
[http://pas36.tw/\(02\)2939-3088](http://pas36.tw/(02)2939-3088)
5. 썬팅루다관(紫藤廬茶館)/Wistaria Tea House
[http://www.wistariateahouse.com/\(02\)2363-7375](http://www.wistariateahouse.com/(02)2363-7375)
6. 기슈안(紀州庵)문학삼림/Kishu An Forest of Literature
[http://kishuan.org.tw/\(02\)2368-7577](http://kishuan.org.tw/(02)2368-7577)
7. 즈산(芝山)문화생태녹원/Zhishan Cultural and Ecological Garden
[http://zcegarden-en.webgo.com.tw/z31.php\(02\)8866-6258](http://zcegarden-en.webgo.com.tw/z31.php(02)8866-6258)
8. 초산행관(草山行館)/Grass Mountain Chateau
[http://www.grassmountainchateau.com.tw/\(02\)2862-2404](http://www.grassmountainchateau.com.tw/(02)2862-2404)
9. 시장관저 문예살롱/The Mayor's Residence Art Salon
[http://www.mayorsalon.tw \(02\)2396-8198](http://www.mayorsalon.tw (02)2396-8198)
10. 송산(松山)문화창조단지/Songshan Cultural and Creative Park
[http://www.songshanculturalpark.org \(02\)2765-1388](http://www.songshanculturalpark.org (02)2765-1388)
11. 타이베이현대예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Taipei
[http://www.mocataipei.org.tw/\(02\)2552-3721](http://www.mocataipei.org.tw/(02)2552-3721)
12. 타이베이 국제예술촌, 보장암(寶藏巖) 국제예술촌 /Taipei Artist Village,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http://www.artistvillage.org/>
타이베이 국제예술촌 (02)3393-7377 / 보장암국제예술촌 (02)2364-5313
13. 서문홍루(西門紅樓)/The Red House, Ximen
[http://www.redhouse.org.tw/\(02\)2311-9380](http://www.redhouse.org.tw/(02)2311-9380)
14. 임어당(林語堂) 생가/The Lin Yutang House
[http://www.linyutang.org.tw/\(02\)2861-3003](http://www.linyutang.org.tw/(02)2861-3003)
15. 스린(士林)관저 본관/The Shilin Main Presidential Residence
[http://www.culture.gov.taipei/frontsite/shilin/index.jsp/\(02\)2883-6340](http://www.culture.gov.taipei/frontsite/shilin/index.jsp/(02)2883-6340)
16. 이국정(李國鼎) 생가/Kwoh-ting Li's Residence
[http://online.ktli.org.tw/\(02\)2356-4398](http://online.ktli.org.tw/(02)2356-4398)
17. 채서월(蔡瑞月)무용연구소/Tsai Jui-yueh Dance Research Institute
[http://www.dance.org.tw\(02\)2560-5724](http://www.dance.org.tw(02)2560-5724)
18. 손운선(孫運璿) 과학기술·인문기념관/Sun Yun-suan Memorial Museum
[http://sysmm.org/\(02\)2311-2940](http://sysmm.org/(02)2311-2940)

19. 신방춘 찻집 新芳春茶行/Sin Hong Choon
<http://www.facebook.com/1119304481426235> / (02)2550-4141
20. 타이베이디지털예술센터/Digital Art Center, Taipei
[http://dac.taipei/\(02\)2834-5066](http://dac.taipei/(02)2834-5066)
21. 보피랴오 역사거리 (剝皮寮歷史街區 / Bopiliao Historic Block)
<https://www.bopiliao.taipei/en> ; (02) 2302-3199

(iii) 박물관 관람정보

베이터우(北投) 온천박물관은 대만 최초의 대중목욕탕으로 1913년 일제시기에 지어졌다. 1998년 유적지 건축물 복원 활성화 사업을 통해 ‘베이터우 온천박물관’으로 재탄생하였고 3급 유적지(현재 시지정 유적지)로 지정되었다. 박물관은 2개층으로 이루어졌으며 1층에서는 온천의 역사, 온천욕장의 변천사와 진귀한 베이터우석(石)을 만나볼 수 있다. 2층의 위치한 발코니와 다다미방에서는 베이터우의 멋진 풍경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고, ‘대만어 할리우드’에서는 1950~60년대 베이터우에서 촬영한 대만의 고전영화까지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은 대만의 다채로운 온천문화를 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베이터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기를 바란다.

운영시간: 매주 화~일 9:00~17: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홈페이지: <http://hotspringmuseum.taipei>

표문화지원

(i) 거리예술가

매년 정기적으로 접수를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인터넷 신청이 통과가 되면 공연장소 관리기관에 공연신청을 하고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공연항목은 크게 공연예술, 시각예술, 창의공예 등으로 나뉜다.

(ii) 영화촬영지원

타이베이시를 친절한 영화촬영도시로 조성하고 국내외

많은 촬영팀들이 이곳에서 영화제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타이베이시 영화위원회’를 설립하고 영화촬영지원 업무를 전담으로 맡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장소섭외 지원, 제작 우대혜택 및 보조금 제공, 도시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영상의 홍보지원 등이 있다.

1. 사이트: <https://www.filmcommission.taipei/>
2. 연락처: 886-2-2709-3880
3. 팩스: 886-2-2709-2339
4. 이메일: service@taipeifilmcommission.org

(iii) 문화 포스터광고 부착 지원

타이베이시 문화국은 타이베이시의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시내 6개 MRT역(스정푸역(市政府站), 국부기념관역(國父紀念館站), 중샤오둔화역(忠孝敦化站), 중샤오푸싱역(忠孝復興站), 룡산스역(龍山寺站), 시먼역(西門站))의 공공공간에 문화예술활동 포스터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정보 전달과 공공공간의 환경미화를 실현하는 등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홍보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타이베이시 문화국 문화자원과(전화번호: 1999내선 3665)로 문의하면 된다.

Ⅲ “컬처 익스프레스(Culture Express)”

“컬처 익스프레스(文化快遞, Culture Express)”는 타이베이시 문화국이 2000년부터 발간한 문화예술 간행물로 타이베이시민들에게 당월 문화예술행사, 예술평론 및 전문가칼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컬처 익스프레스”는 공연, 음악, 전시, 영화, 강좌, 어린이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료공연도 소개하고 있다. 더 다채롭고 유익한 문화예술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중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버전의 “Culture Express Map” 리플렛을 제작하 타이베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타이베이시의 문화예술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제 14 장 소방국

I 신고전화 119

신고전화	이용설명
(i) 전화신고:119	화재, 응급구조 및 재난구조 신고전화
(ii) 팩스신고:(02)2758-7865	청각장애인 재난신고 팩스
(iii) 문자신고:0932-299-702, 0963-330-119	청각장애인 재난신고 문자메세지

II 구조증명 발급 신청

(i)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대리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ii) 구비서류:

1. 본인신청: 신분증 앞뒷면 사본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리신청: 당사자(부상자 및 환자)의 위임장 및 당사자(부상자 및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앞뒷면 사본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iii) 주의사항:

1. 신청서 다운로드: 타이베이시 온라인 민원시스템 <https://www.e-services.taipei.gov.tw/>
2. 7년 내 119에 전화를 걸어 긴급호송 및 구조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본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비용: 무료

III 화재증명 발급 신청

(i) 신청방법: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방문, 대리신청, 인터넷 신청(전과정 프로그램화는 아님) 등 방식으로 신청

(ii) 구비서류:

1. 건축물화재증명서 신청: 신청인이 건물소유권대장 사

본 또는 등본(임대차계약서 등), 신분증 (혹은 여권), 인감 등을 지참하고 신청한다.

2. 차량화재증명서 신청: 신청인이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신규 발급한 자동차면허등록증, 신분증(혹은 여권) 등을 지참하고 신청한다.
3. 만약 신청인 신분이 회사라면 회사 직인도 있어야 한다.
4. 화재관계자 본인 또는 회사 대리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iii) 주의사항:

1. 신청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소방국 홈페이지 <http://www.119.gov.taipei/> 또는 타이베이시온라인 민원시스템 <http://www.e-services.taipei.gov.tw>
2. 2006년 7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화재사건은 타이베이시 소방국 화재조사과에서 신청해야 한다. 2006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화재사건은 타이베이시 각 소방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소방법>시행세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화재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화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내용에는 화재 발생시간과 장소만 기재된다.
4. 신청비용: 무료

IV 화재조사자료 발급 신청

(i)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신청, 방문신청, 대리신청, 인터넷 신청(전과정 프로그램화는 아님)을 통해 타이베이시 소방국 화재조사과 (타이베이시내이후(內湖)구 청공로(成功路)2단376호9F)에 신청한다.

(ii) 구비서류:

1. 화재조사자료신청서
2. 건물소유권대장 사본 또는 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신규 발급한 자동차면허등록증, 신분증, 인감 등

3. 신청인 신분이 회사일 경우 회사 직인 지참
4. 화재관계자본인 또는 회사 대리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첨부

(iii) 주의사항:

1. 신청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소방국 홈페이지 <http://www.119.gov.taipei/> 또는 타이베이시 온라인 민원 시스템 <https://www.e-services.taipei.gov.tw>
2. 신청시기: 타이베이시 소방국의 화재원인조사감정서를 관할 구 경찰 분국(경찰서)에 송부한 후부터 신청 가능 (원칙은 화재발생 후 30일)
3. 문의: 전화번호: (02)2729-7668 (내선 8114) 또는 (02)2796-3869
4. 신청비용: 무료

V ‘소방풍수사(지도사)’ 방문 신청

(i) 신청방법: 신청서를 우편,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신청

(ii) 구비서류: 신청서

(iii) 주의사항:

1. 신청서 다운로드: 소방국 홈페이지 <http://www.119.gov.taipei/> 또는 타이베이시 온라인 민원 시스템 <http://www.e-services.taipei.gov.tw>
2. 전화번호: (02)2729-7668 (내선 6121)
3. 팩스번호: (02)8780-2386
4. 신청비용: 무료

(iv) 방문서비스 항목:

1. 방재인식
2. 비상탈출
3. 전기안전
4. 가스안전
5. 홍수대비안전

VI 방재과학교육관 관람

(i) 주소: 타이베이시 네이후(內湖)구 청공로(成功路)2단 376호

(ii) 관람시간: 매일 9:00~12:00(마지막 입장시간11:00), 14:00~17:00(마지막 입장시간16:00), 매주 월요일 및 음력설 전날~음력설 다음날은 휴무이다. 만약 돌발상황으로 인해 휴관시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박물관 관람은 매1시간마다 순서대로 참관하며, 만약 마지막 입장시간 초과시, 정오 12시전, 오후 5시전에는 관람을 마쳐야 한다.

(iii) 관람예약:

1. 전화, 팩스, 우편 또는 홈페이지 (<http://fsm.119.gov.taipei/index.asp>) 등을 통해서 신청 (신청인원 14명 이하는 전화예약)
2. 관람 3일 전까지 신청
3. 단체예약 신청은 만 15명 이상~250명 이하임
4. 신청한 시간이 중복될 경우 우선 예약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5. 예약전화: (02)2791-9786, 2791-9780
6. 팩스번호: (02)2791-9546

VII 방재공원 정보

1999년 ‘9.21대지진’ 발생 이후, 타이베이시는 일본정부의 방재정책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방재대책 마련 외에 방재공원 건립을 계획하였다. 방재공원이란 타이베이시의 모든 행정구에 공간과 응급구조 도로가 개방된 대규모 대피장소 1곳을 지정하여 임시피난처로 활용하는 곳이다. 평소에는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고,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때에는 대피와 재난지휘 거점지역으로의 역할을 하여 타이베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타이베이시 12개 방재공원 정보는 다음과 같다.

순번	공원명	행정구	위치
1	청년(青年)공원	완화(萬華)	水源路199號
2	228평화공원 (二二八和平公園)	중정(中正)	凱達格蘭大道3號
3	다안삼림(大安森林) 공원	다안(大安)	新生南路以東、信義路3段以南
4	위취안(玉泉)공원	다통(大同)	西寧北路28號
5	룡성(榮星)화원공원	중산(中山)	民權東路3段1號
6	민취안(民權)공원	송산(松山)	民權東路4段, 新中街交叉口(民權國小旁)
7	다후(大湖)공원	네이후(內湖)	成功路5段31號旁
8	송덕(松德)공원	신이(信義)	松德路180巷興雅國中東側
9	난강(南港)공원	난강(南港)	東新街170-1號
10	징화(景華)공원	원산(文山)	景興路與景華街交叉口
11	스린(士林)관저공원	스린(士林)	福林路60號
12	푸싱(復興)공원	베이터우(北投)	中和街200號

Ⅷ 방재 지도

(i) 타이베이시의 모든 리(里)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인 피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방재지도에는 대피소, 경찰서, 소방서 및 의료기관 등 필수정보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재난통보요원과 긴급전화 등 관련 정보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방재지도만 보면 내집 주변의 대피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재난 발생 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고 재난경보가 울리면 안전한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ii) 타이베이시 방재정보 홈페이지 긴급대피 정보 링크:
<https://www.eoc.gov.taipei/Refuge/Evacuation>

긴급대피정보지도 링크	
행정구	홈페이지
원산(文山)구	https://wsdo.gov.taipei/News_Content.aspx?n=5CE3D7B70507FB38&s=A75EF1BA108B5556
완화(萬華)구	https://whdo.gov.taipei/News_Content.aspx?n=3016AF27FEE43282&sms=299A4C13E7D72D89&s=DFB8D06FC981EE4C

긴급대피정보지도 링크	
행정구	홈페이지
중정(中正)구	https://zzdo.gov.taipei/cp.aspx?n=0DE5F70690B4A156&s=7F52E41274E23612
신이(信義)구	https://xydo.gov.taipei/News_Content.aspx?n=C5542D5598BEDD02&sms=74A22A50AC3283EF&s=41089AFE560DB2D6
베이터우(北投)구	https://btodo.gov.taipei/News_Content.aspx?n=B4DBE8254528B23C&sms=F02C01E8561BEACB&s=1E95B578BB6F4AF2
스린(士林)구	https://slodo.gov.taipei/News_Content.aspx?n=490BF9A695820C1D&sms=F44BE2DA20BFDD9E&s=B34B1F4A6E935A98
난강(南港)구	https://ngdo.gov.taipei/News_Content.aspx?n=01A06CD43C065B18&sms=B12988E047217290&s=7AA0134961D5B2ED
내이후(內湖)구	https://nhdo.gov.taipei/News.aspx?n=AC67BAB12791BC66&sms=24DD3B749529A366
중산(中山)구	https://zsdo.gov.taipei/cp.aspx?n=507DE5444462B0B3
다통(大同)구	https://dtdo.gov.taipei/cp.aspx?n=A49535822FEC0A4D
다안(大安)구	https://dado.gov.taipei/News.aspx?n=29A41EAE30EDBDA5&sms=66C9A1F7BE857A7E
쑹산(松山)구	https://ssdo.gov.taipei/News_Content.aspx?n=48A0A8BA1E719FF2&sms=50B23E5C03F3888E&s=A39E23386FABC0B

IX 병원 밖 심정지(OHCA)응급처치

(i) 주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불러도 반응이 없다면 즉각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또한, 병원 밖 심정지(OHCA, Out of Hospital Cardiac Arrest)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과 같이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한다.

(ii) 심폐소생술(CPR):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사용하기 4 단계 요령

(자동제세동기 또는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흉부압박 실시)

깨우고(의식확인):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은 후 반응이 있는지 확인한다.

알리고(구조요청): 큰소리로 알리고 119에 신고하여 구조요청을 한다. (119대원 지시를 따르거나 온라인 CPR 지도를 받는다)만약 현장 인근에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가 있다면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누르고(흉부압박): 세게 누르고, 빠르게 누르고, 가슴이 올라와야 하고, 쉬지 않고 계속하기

1. 흉부압박위치: 양쪽 젖꼭지 사이의 중앙 가슴
2. 흉부압박속도: 100~120회/분 (1초당 2회), 압박깊이: 5~6cm

사용하기(전기충격): 빨리 자동제세동기(AED)를 확보한다.

1. 전원을 키고 몸에 패드를 부착한다.
2. 기기가 지시하는 대로 심장충격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환자를 만지거나 이동해서는 안 된다.)
3. 119 구조대원이 도착할때까지 음성지시에 따라 버튼을 누르거나(아무도 환자를 만지지 않았는지 확인)계속 CPR를 한다.

X 재난 음성사서함 1991번

내정부 소방서는 재해대응안전확인 서비스를 설치하여, 인터넷 및 시내전화와 휴대폰으로 무사함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해 발생시 통신사(중화전신, 대만따거따, 위엔찬, 대만즈싱, 아태전신) 음성사서함에 음성을 남기거나, 페이스북 안부 확인, 구글 사람찾기 및 1991 안전확인 및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이 제일 처음으로 당신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내정부 소방서 1991 안부확인 플랫폼 홈페이지: <https://www.1991.tw>에서 확인할 수 있다.

(i) 재난 음성사서함 1991번 개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재난지역의 통신망이 고장나거나 다른 가족의 안부확인을 위해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긴급전화마저 연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에 일본의 171 음성사서함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1991번 재난 음성사서함을 구축하였다. 시내전화, 휴대전화, 공중전화 등 전화기에서 1991를 누르고 음성안내에 따라 ‘약속 전화

번호'를 누르면 음성메세지를 남길 수 있다. 상대방도 1991를 누르고 '약속 전화번호'를 누르면 음성메세지를 들을 수 있다.

'약속 전화번호'란 서로 사전에 약속해놓은 전화번호로 기억하기 쉽도록 집전화(지역번호 포함)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약속 전화번호가 시내전화 02-2344-XXXX라면 022344XXXX를 누르면 되고, 휴대전화 0901-216-XXX라면 0901216XXX를 누르면 된다.

전국 각지(도서지역 포함)에서 1991를 누르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나 해외에서는 1991를 눌러도 들을 수 없다.

1991번은 무인시스템으로 안부확인을 위해 메시지를 남기는 것만 가능하며 119 또는 110 응급구조 기능은 없다. 따라서 긴급구조가 필요할 경우 바로 119나 110에 전화를 걸어서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아직 인터넷전화로 1991번에 전화를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

(ii) 1991안부확인 게시판

홈페이지: <https://www.1991.tw>

현재 모바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음성메세지를 남기는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악용의 우려가 있어 음성메세지 다운로드 기능도 제공되지 않는다.

XI 시민방재수첩<타이베이 방재 바로 Go!>

「타이베이 방재 바로 GO」는 타이베이시의 최초 만화 방재 수첩입니다. 지진, 태풍, 화재, 기타 재난, 구급, 지식 등 6 개 단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손으로 그린 만화 이미지와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를 사용하여 방재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i) 중국어 홈페이지 :

<https://www.eoc.gov.taipei/DisasterManual/mobile/index.html#p=III>

(ii) 영어 홈페이지 :

https://www.eoc.gov.taipei/En_DisasterManual/mobile/index.html#p=%E9%A6%96%E9%A0%81

<부록>타이베이시 각 국처 홈페이지 주소

기관명	홈페이지	QR코드
타이베이시정 부	http://www.taipei.gov.tw	
경찰국	http://police.gov.taipei/	
노동국	http://bola.gov.taipei/	
사회국	http://www.dosw.gov.taipei/	
위생국	http://health.gov.taipei/	
교육국	http://www.doe.gov.taipei/	
민생정책국(民 政局)	http://ca.gov.taipei/	

기관명	홈페이지	QR코드
산업발전국	http://www.doed.gov.taipei/	
상업처	http://www.tcooc.gov.taipei/	
토지행정(地政) 국	http://land.gov.taipei/	
세금징수처(稅捐稽徵處)	http://www.tpctax.gov.taipei/	
환경보호국	http://www.dep.gov.taipei/	
관광전파국	http://www.tpedoit.gov.taipei/	
교통국	http://www.dot.gov.taipei/	

기관명	홈페이지	QR코드
문화국	http://www.culture.gov.taipei/	
소방국	http://www.119.gov.taipei/	

도서명: 타이베이시 외국인안내수첩 (중문본)

편 집: 타이베이시 경찰국

출판기관: 타이베이시

주 소: 타이베이시 신이(信義)구 스푸로(市府路) 1호

홈페이지: <http://www.taipei.gov.tw>

전화번호: (02)2720-8889

출판년월: 2020년12월 (出版年月2020年12月)

판 차: 4판 (版本 : 4版)

인 쇄: Yuanhua 기술 인쇄 유한 회사

전화번호: (02)2381-0705

정가: NT\$66 위안

GPN: 1010902503

ISBN: 978-986-5464-38-7 (平裝)

저작권자는본 도서의 법에 의거한 모든 저작권을 갖는다.

본도서의 전부 또는 부분 내용을 사용하려면 저작재산

관리기관의 동의와 서면방식의 권리부여를 받아야 한다.



ISBN 978-986-5464-38-7



9 789865 464387

GPN : 1010902503

定價 : 66 위안

지구를 사랑하십시오. 이 책은
재활용 종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